

최종보고서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2011. 7

농 립 수 산 식 품 부
수산정책관 수산개발과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7월

주관연구기관 : 부경대학교

연구책임자 : 이상고

공동연구자 : 차철표

공동연구자 : 김동훈

연구보조원 : 이창수

연구보조원 : 신진경

< 제 목 차 례 >

[요약]	1
제1장 서론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추진전략과 방법	2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4
제2장 우리나라 어선원 수급 실태	5
제1절 연근해 어업의 어선원 수급 실태	5
1. 연안어업의 어선척수 및 어선원 현황	5
2. 근해어업의 어선척수 및 어선원 현황	7
3. 양식 및 어선어업자, 가공 및 유통업자의 수급 현황	10
제2절 원양어업의 어선원 수급 실태	13
1. 원양어업의 어선척수 및 어선원 현황	13
2. 해외취업 어선원 수급 현황	16
제3절 외국인 어선원 고용 현황	16
1. 외국인 어선원 고용 현황	16
2. 외국인 어선원 고용 필요성 및 관리 방안	19
제3장 어선원 양성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실태	25
제1절 어선원 및 어업자 교육·훈련 실태	25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훈련	25
2. 수산계 대학 어업관련 학과 및 교육과정	28
3. 수산계 고등학교 및 해기인력 교육·훈련 현황	30
4. 양식 및 어선어업자 교육·훈련 실태	30
제3절 외국인력 어선원 양성 교육·훈련 실태	35
1.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교육	35
2. 우리나라 어업분야 교육사업 및 복지교육원 운영	39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3. 외국의 연안국 어선원 양성 교육사업 현황	42
제4장 어선원법 제정 등 업무 이관 방안	47
제1절 어선원법 제정 타당성	47
1. 외국인 어선원 관련 법제도 현황	47
2. 외국인 어선원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52
제2절 업무 이관 방안	54
1. 어선원 업무 이관(고용 관련법 이원화에서 일원화)	54
2. 어선원 관리 방안	57
제5장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방안	63
제1절 국제어업교육원 설립과 법적 근거	63
1. 국제어업교육원의 설립 형태	63
2. 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률의 검토	66
제2절 국제어업교육원의 목적과 사업 및 조직	79
1. 설립의 목적	79
2. 사업의 종류	79
3. 조직	79
4. 소요 인원	81
제3절 국제어업교육원 적정입지 및 필요시설 검토	82
1. 적정입지 검토	82
2. 필요시설	98
제6장 국제어업교육원 운영 방안	101
제1절 기본방향 및 목표	101
1. 운영의 기본원칙과 방향	101
2. 추진전략과 목표	107
제2절 추진체계 및 운영방법	109
1. 기본 추진체계	109
2. 운영방법	109

제3절 중점 추진사업	111
1. 외국인력 어선원 교육사업	111
2. 내국인 해기사 양성교육 사업	115
3. 연안국 어업협력·연수사업	122
4. 국제어업 전문인력 육성사업	125
5. 국제어업협상·정보관리·지원연구부 운영	128
6. 외국인 어선원 관리 및 복지사업	132
7. 어업인 후계자, 신지식인 등 수산전문인력 교육	133
제4절 예산추계 및 확보방안	135
1. 비용추계 요약	135
2.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37
3. 연차별 소요예산(총괄)	138
참고문헌	147

< 표차례 >

<표 2-1> 연안어업 업종별·톤수별 척수(2010년) 5

<표 2-2> 연안어선 톤급에 의한 어선원 승선 소요인원(2010년) 6

<표 2-3> 근해어업 업종별·톤수별 척수(2010년) 7

<표 2-4> 20톤 미만 근해어업 업종별 어선원 승선 소요인원 8

<표 2-5>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원 취업 현황 9

<표 2-6> 어업종류별 어업종사가구원, 어업경영주 수 변화 동향 11

<표 2-7> 최근의 어선 수 변화 동향 11

<표 2-8> 최근의 양식어업권 변화 동향 12

<표 2-9> 연도별·국적별 외국인 어선원 고용현황(2010. 12. 31 기준) 13

<표 2-10> 조업형태별 국적 원양어선 현황 14

<표 2-11> 국적 원양어선 및 어선원 현황 15

<표 2-12> 해외취업 선박척수 및 어선원 현황 16

<표 2-13> 업종별·국적별 외국인 어선원 고용 현황 17

<표 2-14> 연도별 선원법 적용 대상 외국인 어선원수 17

<표 2-15> 수협중앙회, 외국인 어선원 고용 및 교육 현황 18

<표 2-16> 연도별 내국인 어선원 취업자수(선원법 적용 대상) 20

<표 2-17> 수산계 교육기관 승선학과 승선율 20

<표 2-18> 원양 및 연근해 어선원 연령별 현황 21

<표 3-1> 수산계 대학의 해기 면허취득율 및 승선율(최근 4년간) 29

<표 3-2> 수산계 고등학교 학급편제 및 해기관련학과 현황 30

<표 3-3> 수산·해양 관련 대학교의 개설 학과 32

<표 3-4> 사회기관에 의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33

<표 3-5> 외국인 선원제 교육일정 및 교육프로그램 37

<표 3-6> 고용허가제 교육일정 및 교육프로그램 38

<표 3-7> OFCF 해외연수생 초청 연수과정의 구성 및 연수기간 42

<표 3-8> 일본수산(주) 능력개발센터의 연수내용 44

<표 4-1>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9

<표 4-2> 외국인 선원의 고용 제한 50

<표 4-3>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51
<표 4-4> 어선원 관련 주요 정책별 추진 근거	56
<표 4-5> 20톤 미만 어선 승선 어선원에 대한 정부 정책과 추진 방안 ..	58
<표 4-6> 20톤 미만 어선 승선 어선원에 대한 복지정책과 추진 방안	61
<표 5-1> 국제어업교육원 소요 인원	82
<표 5-2> 판단요소별 건립후보지 평가 결과	98
<표 5-3> 국제어업교육원의 규모	100
<표 6-1> 외국인 부원선원 직무교육과정(안)	113
<표 6-2> ODA의 형태별 분류	122
<표 6-3> KOICA를 통한 ODA 지원 규모	123
<표 6-4> 연도별 소요 비용 현황	136
<표 6-5> 단계별 실시 운영방안	137
<표 6-6> 단계별 인원확보 계획(안)	138

< 그림차례 >

[그림 1-1]	연구목적	1
[그림 1-2]	연구목표	2
[그림 1-3]	연구방법	3
[그림 3-1]	양식 및 어선어업자 교육·훈련 체계	31
[그림 3-2]	외국인 선원 고용 절차 (총톤수 20톤 이상 어선)	36
[그림 4-1]	외국인 선원의 고용 체계	48
[그림 5-1]	국제어업교육원 조직도	81
[그림 5-2]	부산시가 추천한 후보지(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경	86
[그림 5-3]	부산시가 추천한 후보지(수산과학연구소) 전경	87
[그림 5-4]	전남도가 추천한 후보지(녹동 신항 배후지) 전경	89
[그림 5-5]	전남도가 추천한 후보지(여수국동 다기능어항) 전경	92
[그림 5-5]	전북도가 추천한 후보지 전경	94
[그림 5-6]	제주도가 추천한 후보지(구좌읍) 전경	95
[그림 5-7]	제주도가 추천한 후보지(성산읍) 전경	96
[그림 5-8]	국제어업교육원의 업무 영역	99
[그림 6-1]	국제어업교육원 사업운영 기본원칙	104
[그림 6-2]	국제어업교육원 사업운영 3대 기본방향	106
[그림 6-3]	국제어업교육원 사업운영 추진전략	107
[그림 6-4]	국제어업교육원 사업운영 추진목표	108
[그림 6-5]	국제어업교육원 사업운영 추진체계	109
[그림 6-6]	국제어업교육원 전문기관의 독립조직 운영체계	110
[그림 6-7]	국제어업교육원의 내부통합 외부 협력기관 운영체계	110
[그림 6-8]	국제어업교육원과 협력기관의 공조적 운영체계	111

【 요약 문 】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원양 및 연근해어업의 이직율 상승과 3D업종 기피 현상으로 해기사 및 부원을 포함한 어선원의 심각한 구인난에 봉착하고 있음
- 특히 어선원 수급난에 따라 외국인 어선원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 어선원 수급에 대한 기존 교육 및 훈련 관련 기관들의 소극적 대응과 정부지원책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그래서 국내외 어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는 외국인 어선원 수급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국내외 어업의 안정적 조업어장 확보를 위한 국제어업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이에 따라 동남아, 아프리카, 남태평양 도서국과의 기술연수 및 연안 개도국과의 어업협력 등을 위한 체계적인 구심체가 미흡한 상태이며,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 수산인력개발원, 해양수산연수원, 부경대, 해양수산개발원등의 산반적인 어업교류 및 협력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한 시점임
- 이 같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외 어업의 어선원 양성·교육훈련과 연안국과의 국제어업교류·협력 활성화 위한 책임있는 국제어업교류 전담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담기구를 설치 운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선원 양성·교육훈련 및 국제어업교류·협력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연근해 및 원양어선의 어선원 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어선원 수급체계화와 전문기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제어업교육원 설립방안과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제2장 우리나라 어선원 수급 실태

1. 연근해 어업의 어선원 수급 실태

가. 연안어업의 어선척수 및 어선원 수급 실태

□ 연안어업의 어선척수 현황

- 수산정보포탈(www.fips.go.kr)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2월 말 기준 연안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척수는 총 47,882척임.
- 이중 동력선 중 1톤~5톤 미만의 연안어업 어선척수가 30,524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1톤 미만의 척수도 11,801척을 차지하고 무동력선은 592척임.
- 또한 업종별로는 연안복합 어선이 가장 많은 25,239척이고, 그 다음 연안 유자망 13,418척, 연안통발 4,849척의 순임.

□ 연안어업의 어선원 현황

-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은 어선 톤급, 출어 일수 등에 따라 유동성이 많아 정확한 승선인원을 산출하는 통계는 없음.
- 이에 과거 산출 근거 및 현장 조사 결과, 2010년 12월 말 동력선 기준 연안어업 어선척수 47,290척 중 약 93%가 4인 미만이 승선하고, 5인 이상은 전체 7%에 불과하며, 1톤이하 동력선과 무동력선 경우는 대부분 2인 이하 가족형으로 운영됨.
- 이러한 승선인원을 기초로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은 총 104,751명이며, 평균적으로 척당 약 2.2명의 어선원이 승선하는 것으로 추정됨.

나. 근해어업의 어선척수 및 어선원 현황

□ 근해어업의 어선척수 현황

- 근해어선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대만 및 필리핀 북단에서 일본 근처까지 어업을 하는 소형어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척수는 총 2,875척임.
- 이중 20톤~100톤 미만의 어선척수가 가장 많은 1,772척이며, 20톤 미만은

- 884척, 100톤~200톤 미만은 184척, 200톤 이상은 35척임.
- 조업 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근해어업 중 근해채낚기 어선이 476척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근해유자망 415척, 기선권현망 408척 순임.
- 근해어업의 어선원 현황
- 선원법 적용 제외 대상(20톤 미만)인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통계는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있지 않으며, 2010년 12월 말 기준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은 4,802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척당 평균 승선 인원은 약 5.4명임.
 - 또한 선원법 적용 대상(20톤 이상)인 연근해어선에 종사하는 취업 어선원수는 총 15,939명으로 이 중 해기사는 4,682명, 부원은 12,991명이 승선하고 있음.

2. 원양어업의 어선원 수급 실태

가. 원양어업의 어선척수 및 어선원 현황

- 국적 원양어업의 어선척수 현황
- 국적원양어선은 1984년 529척에서 1990년 810척(422,144톤)으로 증가하여 정점에 이른 후 매년 감소하여 2010년 12월 말 기준 총 312척임.
- 국적 원양 어선원 수급 현황
- 2010년 12월 말 기준 국적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수는 총 1,892명으로 그 중 해기사는 1,363명, 부원은 529명임.
 - 원양어선에는 3, 4, 5급 해기사가 주로 승선하고 있으며, 국적 원양어선의 경우 만성적인 공급부족으로 우리나라 선원은 선원정원수의 약 절반 이하로 승선하고 나머지는 외국인 어선원으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임.
 - 국적 외항어선에 종사하는 해기사의 공급은 수산계 교육기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졸업자는 승선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대부분이 일반 상선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높음

나. 해외 취업 원양어선척수 및 어선원 현황

- 해외취업 어선척수 및 어선원 수급 현황

- 2010년 12월 말 기준 해외취업 선박척수는 90척, 어선원은 226명임.
- 해외취업 선박척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어선원의 인력취업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3. 외국인 어선원 고용 현황 및 관리방안

가. 외국인 어선원 고용 현황

- 20톤 이상 어선의 외국인 어선원 고용현황(한국선원통계연보)
 - 2010년 12월 말 기준 선원법의 적용 대상인 20톤급 이상의 어선에 종사하는 외국인 어선원은 원양어선 4,006명, 연근해어선 5,156명임.
 - 최근 8년(2003~2010년)간 외국인 어선원수를 살펴보면, 외국인 어선원은 2003년 5,461명, 2007년 6,573명, 2010년 9,16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톤 미만 어선에 종사하는 외국인 어선원 고용현황(수협중앙회 주관)
 - 고용허가제(20톤 미만)에 의한 외국인 어선원 고용 현황을 보면, 2008년 525명, 2009년 363명, 2010년 486명임.
 - 동 기간 외국인 선원제(20톤 이상)로 고용된 외국인 어선원은 2008년 2,233명, 2009년 2,187명, 2010년 2,766명임.

나. 외국인 어선원 고용 필요성 및 관리 방안

- 외국인 어선원 고용 필요성
 - 3D 업종 기피로 인한 어선원 구인난 심각
 - 수산계 교육기관 승선학과 졸업생 승선을 저조
 - 어선원의 노령화로 인한 안전조업의 유해요인 증가
- 외국인 어선원 관리 방안
 - 외국인 어선원 수급관리 일원화를 위한 기구 신설
 - 어선원에 대한 직업알선 및 경험자 선발 제도 마련
 - 어선원 대상의 전문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어선원 관리 및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연계 시스템 마련

제3장 어선원 양성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실태

1. 우리나라 어선원 양성 교육훈련 실태

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훈련 운영

설립 배경과 조직

- 1998년 1월 1일 한국어업기술훈련소는 상선선원 재교육기관이던 한국해기연수원과 통합하여 특수법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교육수요자가 많은 상선 중심의 선원재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어선원 교육훈련 주요 내용

- 어선 해기사 양성 및 자격취득 교육
 - 5, 6급 원양어선(오션폴리텍 과정) 양성교육(어업_기관)
 - 교류교육(어선)의 5개 과정
- 직무교육 및 요청교육 등
 - 원양선 직무교육(어업)의 3개 과정
 - 수산계 고교 현장실습훈련 가공유통과정의 3개 과정 등이 있음.

나. 수산계 대학 어업관련 학과 및 교육과정

수산계 대학 해기관련 학과 및 교육과정

- 기존의 해기관련 학과인 어업·어로학과, 기관학과가 해양생산관리학과, 해양경찰학과, 기관시스템공학과, 동력기계시스템공학과 등으로 학과 명칭이 변경됨.

해기관련 학과 졸업생의 해기인력 수급 실태

- 수산계 대학 졸업자 취업은 해기관련 학과들을 제외하면 대개 50% 이하로 공급이 수요를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2006-2009년) 4년간 수산계 대학 해기관련 학과의 취업율은 85%를 상회하고 있으나 실제 승선율은 19.0%에 불과한 실정임.

다. 수산계 고등학교 및 해기인력·교육훈련 현황

□ 수산계 고등학교 및 해기관련 학과 현황

- 전국의 수산계 고등학교는 순수 수산고를 포함하여 총 8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2006-2009년) 4년간 수산계 고교 승선학과 졸업생(388명)중 면허취득 40명, 승선은 16명으로 실제 승선율은 4.0%로 상당히 저조한 편임.

2. 외국인력 어선원 양성 교육훈련 실태

가. 수협중앙회 교육훈련 운영

□ 수협중앙회 업무 개관

- 1996년 수협중앙회가 연수추천단체로 지정된 이후 산업인력관리공단을 통해 이루어졌던 외국인 근로자 산업연수생 제도가 2006년 말 폐지되어, 2007년 6월 1일부터 어업·수산분야의 외국인력 관리업무는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 외국인인력지원단에서 담당하고 있음.
- 동 기관에서 담당하는 외국인선원제에 의한 외국인 어선원 8,926명(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도입하여 2010년 12월 말 기준 총 5,156명의 외국인 어선원이 근무하고 있음
- 또한 동 기간(2007.6.1.~2010.12.31)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3,652명을 도입하여 1,732명(베트남,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스리랑카)에 대하여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외국인 어선원 교육업무

-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의거 한국선원과 혼승하고자 하는 외국인선원은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외 선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적응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직무적응교육은 입국 전에 자국 교육기관에서 3일 이상 받아야 하고, 입국 후에는 국내 선원교육기관에서 2박 3일 이내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외국인 어선원의 직무적응교육 장소는 수협중앙회 천안연수원과 건설기술교육원(인천)을 이용하고 있으며, 교육장사진은 수협 외국인인력지원단 소

속 11명 중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내부 직원임

나. 우리나라 어업분야 교육사업 및 복지교육원 운영

□ 어업분야 ODA 자금에 의한 연안국 교육사업

- ODA 자금에 의한 연안국 교육사업

- 현재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수산분야 연안국 교육사업에는 「아프리카 수산기술·정책과정」, 「연안수산양식과정」, 「수산물가공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과정」, 「알제리 수산정책 수립역량 강화과정」 등이 대표적임.
- 이들 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사업으로서 초청 및 교육비 전액을 ODA 자금으로 하며, 교육기간은 60일에서 짧게는 14일로 이루어짐.

- ODA 자금에 의한 연안국 교육사업 내용

- 2010년 수산분야 교육사업은 연수생 초청사업과 전문가 파견사업이 있음.
- 연수생 초청사업은 아프리카 수산기술자 양성 및 수산정책과정, 연안 수산양식과정, 수산물가공 및 수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과정, 알제리 수산정책 수립 역량 강화과정 등이 시행되고 있음.
- 전문가 파견사업은 우리나라 전문가를 개발도상국에 파견하여 기술지도, 연구, 강의, 자문, 조사 및 프로젝트 실시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전문지식을 전수하는 사업임.

□ 감천항 외국인선원 복지교육원 운영

- 외국인선원 복지교육원은 부산 감천항에 위치해 있으며,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원양선원이 출항시까지 2~3일간의 체류 기간 중 시청각 교육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다. 외국의 연안국 어선원 양성 교육사업 현황

□ 일본의 외국인 어선인력 양성교육 현황

- OFCF 해외연수생 초청 연수과정

- OFCF의 연수과정은 3개의 양성과정으로 나누어지고, 3개의 양성과정은 연수목적에 따라 8개 과정으로 구분하여 관계국으로부터의 연수요청에 대응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어선원 양성사업은 일본측면에서는 참치연승어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인도네시아측면에서는 어업자의 자질 및 소득의 향상, 취업기회의 제공 등을 정책의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일본 원양 참치연승어업에서는 비용경감대책으로서 98%의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인 선원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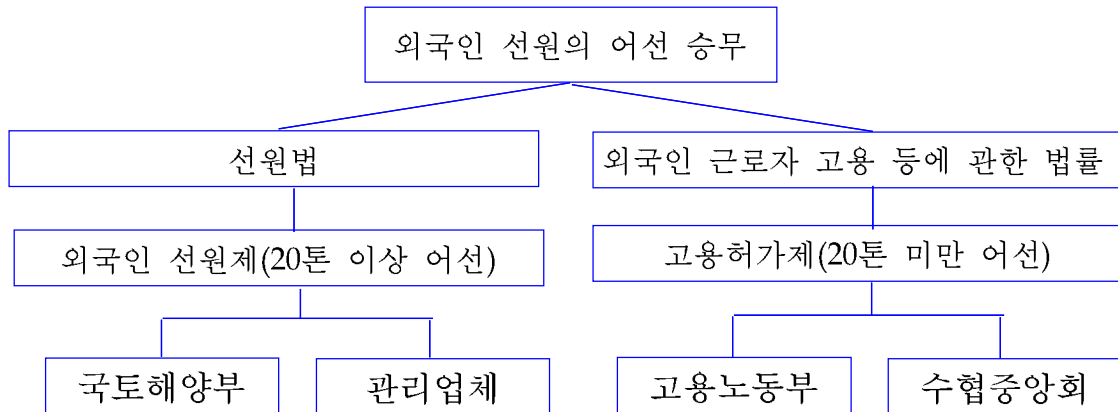
4장 어선원법 제정 등 업무 이관 및 양성방안

1. 어선원법 제정 타당성 검토

가. 외국인 어선원 관련 법제도 현황

- 외국인 어선원 관련 법제도의 개요
 - 우리나라의 외국인 어선원 관련 법제도는 선박의 총톤수 20톤을 기준으로 「선원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구분됨
 - 20톤 이상의 외국인 선원제와 20톤 미만의 고용허가제로 이원화
 - 각각의 제도는 관리주체와 관리기관을 달리 지정 운영하고 있음
 - 20톤 미만의 소규모 어선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선원의 고용이 더욱 보편적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관리를 담당하는 수협의 현실적 사정으로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함
- 외국인 어선원 관련 법제도의 특징
 - 「선원법」에 의한 외국인 선원제는 1992년부터 시행되어오다, 2003년 외항상선에 외국인 해기사 고용에 대한 노사 합의 후 정착됨
 - 실제로 이 제도는 어선의 선원에 대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상선의 선원에 관한 것으로 어선으로 확대 적용에 한계가 있음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허가제는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함
-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그림 1> 외국인 선원의 고용 체계

나. 외국인 어선원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 고용관련법의 이원화
 - 20톤을 기준으로 외국인 어선원 고용에 관한 법률은 20톤 이상의 「선원법」과 그 미만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있음
 - 수산업 내는 물론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종사하는 선박의 규모에 따라 다른 법을 적용받는 문제점 상존
 - 일원화를 통한 업무조정이 필요하나, 영세 선주에 대한 의무 부담 및 감독기관의 법적용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함
- 어선원의 적기 공급이 어렵고 이탈이 많음
 - 현재 외국인 선원고용신청에서 입국까지 고용절차는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고용주가 원하는 시기에 어선원을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선발방식이 한국어 시험 40점 이상 평균 60점으로 단순하여 노동 강도가 낮은 다른 직종으로 이탈하는 사례 증가
- 사후관리 시스템 미비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 20톤 이상 어선의 경우 국토해양부에 지정된 선원관리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전·사후 관리가 가능
-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어선원을 구인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만 관리를 하지 않아 사후관리 체계 부재
- 선주 보호 장치 미비
- 고용한 외국인 어선원이 이탈하거나 도주할 경우 선주의 입장에서는 조업이 불가능해지며, 이에 따른 손실을 선주가 책임져야 함
- 어선어업은 조업 시 각 어선원의 역할이 확연히 구분이 되어 있어 필요 어선원이 모두 승선해야 조업활동이 가능
- 또한 고용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탈이더라도 1년간 이탈 인원에 대한 신규고용이 제한되고 있어 고용주의 보호기능이 미약
- 참여도 저조 및 회원조합의 업무기피
- 현재 고용허가제도는 33개 조합의 업무를 수협중앙회에서 대행해 주고 있으나 업무대행에 따른 경제성이 없음
- 따라서 실제 업무대행조합은 10여 개 내외에 불가

2. 업무 이관 및 양성 방안

가. 어선원 업무 이관(고용 관련법 이원화에서 일원화)

- 어선원 관련 제도의 일원화
- 어선원 고용 관련 제도의 이원화로 동 업종에 종사하는 어선원 간 위화감 조성되고 있으며, 특히 20톤 미만 어선에 종사하는 선원은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 따라서 적어도 외국인 어선원만이라도 20톤 이상과 20톤 미만의 적용 대상 규정을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 하여 선원관리업체가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어선원 인력배정 확대 및 경험자 중심 선발 제도 마련
- 어선원 구인난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연안어업 선주들은 외국인 어선원의

- 고용 또는 고용확대를 희망하고 있음
- 어선원의 업무는 타 업종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고, 원활한 공동작업 및 개인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어선원의 선발은 처음부터 어선원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함
- 외국인 어선원 고용연계 시스템 마련
 - 연안어업에서 외국인 어선원을 고용하는 선주들은 경영악화로 인해 조업 일수를 줄인다든지 또는 금어기, 어한기 등에는 어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 외국인 고용자의 고용안정이 저해되는 문제점 발생
 - 따라서 외국인 어선원들이 업종별로 휴어 시에 타 업종으로 연계해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연계 시스템 구축 필요
- 어선원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개선
 - 법체계의 일원화 또는 법률의 적용 대상 확대개정, 주무장관의 병렬화 필요

나. 어선원 양성 방안

- 어선원 수급 및 교육정책
 - 20톤 미만 어선원에 대해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선원 수급정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집행 필요
 - 연안어선·어업에 대한 직업알선 체제 구축, 연안어선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의 재교육 체제 구축, 어선원 수급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어선원 자격증 및 인력관리 통계 DB화, 전업대책마련 등
 - 20톤 이상 어선원의 경우 선원법을 토대로 비교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어선원 복지정책
 - 어선원 복지는 근거법인 선원법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20톤 미만 어선원에 대한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에 한계가 있어왔음
 - 따라서 20톤 미만 어선원에 대해서도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선원 복지지역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어선원 유가족을 위한 장학사업, 어선원 고용안정보험 또는 실업급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5장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방안

1. 국제어업교육원 설립과 법적 근거

가. 국제어업교육원의 설립 형태

공단

- 공단은 경제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전액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기업을 말하며, 공단은 정부의 전액출자에 의하여 설립되며, 전액출자라는 점에서는 공사(公社)와 같음

공사

- 공사는 자본금 전액을 국가가 출자하고, 이사회 또는 경영위원회 등의 경영 관리기관을 두고 있으나 일반법인의 총회에 해당되는 기관은 없음

공공기업체

- 공공기업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고 경영하는 공공을 위한 기업체를 말하며, 공법상(公法上) 법인 및 특수법인으로 독립되어 있음

공기업

-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이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을 말하며, 출자와 관리·지배에 의하여 공공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특별한 조직방식에 의해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지닌 국가경영사업체를 의미함

국제어업교육원의 설립 형태

- 교육원은 재정경제상, 경영관리 및 운용상의 이유에 따라 어선원의 양성과 국제어업교류 등의 공익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립되는 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함
- 국제어업교육원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서는 해기사 양성과 국제어업교류라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 및 지방 공공단체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해야 함

나. 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률의 검토

- 「농림수산물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
 -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 규칙에 의하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 자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함
 -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함
- 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법제의 정비
 - 선원 재교육기관으로서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정부 출현 사단법인으로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을 가지고 있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 수산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국제어업교육원의 목적과 사업 및 조직

가. 설립의 목적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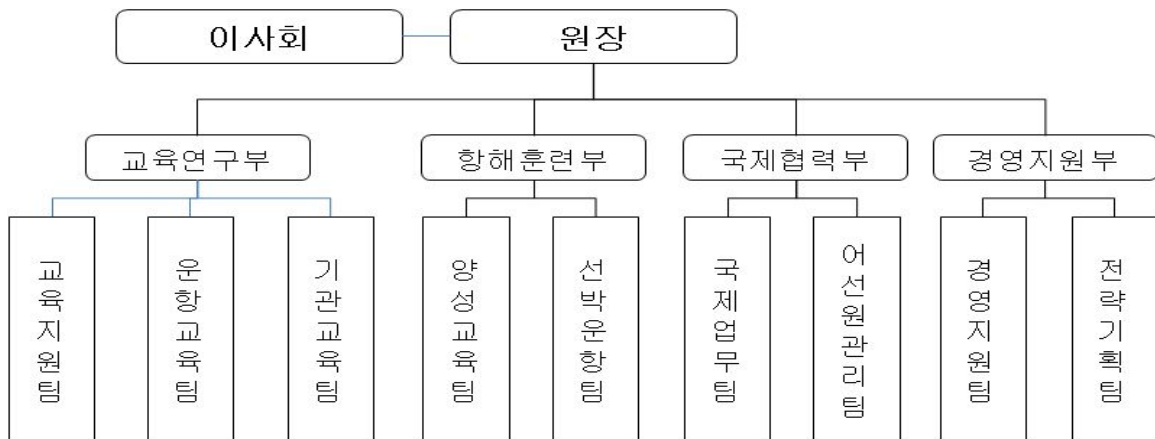
- 국제어업교육원은 내국인 및 외국인의 국내 종사 수산인력의 교육·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은 물론, 국제어업교류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나. 사업의 종류

- 국제어업교육원은 국내어선원 수급 안정과 국제어업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함

다. 조직

- 국제어업교육원은 이사회와 원장 및 교육연구부, 항해훈련부, 국제협력부, 경영지원부 등 4개의 부로 구성할 수 있음



[그림 2] 국제어업교육원 조직도

라. 소요 인원

-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초기의 인원은 법인 조직별로 최소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육훈련부의 경우에는 주로 해기사 양성과 관련한 교육계획의 수립, 해기사 양성을 위한 갑판 및 기관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각 팀별로 최소한 교수요원 2인, 교육준비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지원, 각종 실습

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직원을 각 팀별로 2명씩 배치함

3. 국제어업교육원 적정입지 및 필요시설 검토

가. 적정입지 검토

국제어업교육원 입지 조건

1) 법적 요건

-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어선원 양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은 STCW-F 협약에서 요구하는 최소요구 해기지식을 교육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
- STCW 협약을 위시한 STCW-F협약에 의한 해기품질은 해기사로서의 기본 지식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조우할 수 있는 상황 등을 신속하고 숙련된 기술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음

2) 물리적요건

- 국제어업교육원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리를 잘 모르는 외국인 어선원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무엇보다도 교통 접근성이 양호해야 하며, 해양(어항 등)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지리적 인지도와 관련시설의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교육·행정 등의 지원이 용이하여야 함

후보지 실태조사

1) 부산시

조사항목	조사 내용
1. 소유자	국(농림수산식품부)
2. 소재지	부산광역시 서구 압남동 620-2번지일원(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내)
3. 면적(m ²)	64,000
4. 지목	대
5. 공시지가(원/m ²)	192,000
6. 매입예정가격	2,880백만원
7. 매입가격산출근거	15,000m ² × 192,000원 = 2,880,000,000원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조사항목	조사 내용
1. 소유자	국(교육과학기술부)(부경대학교)
2.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295번지(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내)
3. 면적(m ²)	67,320
4. 지목	대
5. 공시지가(원/m ²)	360,000
6. 매입예정가격	5,400백만원
7. 매입가격산출근거	15,000m ² × 360,000원 = 5,400,000,000원

2) 전라남도

조사항목	녹동신항 배후부지
1. 소유자 (추천기관)	농림수산식품부 (고흥군)
2. 소재지	고흥군 도양읍 봉암 3909
3. 면적(m ²)	157,223
4. 지 목	잡종지
5. 공시지가(원/m ²)	11,600원
6. 매입예정가격(백만원)	국유지
7. 매입가격산출근거	

조사항목	북항 수산시설배후부지
1. 소유자 (추천기관)	국토해양부 (목포시)
2. 소재지	목포시 북항 수산시설배후부지내 유보지
3. 면적(m ²)	18,000
4. 지 목	미등재(2010년 매립완료)
5. 공시지가(원/m ²)	
6. 매입예정가격(백만원)	무상(공공목적사용)
7. 매입가격산출근거	

조사항목	신안군 청사
1. 소유자 (추천기관)	신안군(목포시)
2. 소재지	목포시 북교동 178-1 외 2
3. 면적(m ²)	4,072.5
4. 지 목	대지
5. 공시지가(원/m ²)	757,056원(건물포함)
6. 매입예정가격(백만원)	3,700백만원(건물포함)
7. 매입가격산출근거	공시지가의 120%

조사항목	국동 다기능어항
1. 소유자 (추천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여수시)
2. 소재지	여수시 국동 91-1 외 5
3. 면적(m ²)	16,886
4. 지 목	대지
5. 공시지가(원/m ²)	115,000원
6. 매입예정가격(백만원)	무상(공공목적사용)
7. 매입가격산출근거	

3) 전라북도

조사항목	군산지방해양항만청 부지
1. 소유자 (추천기관)	국토해양부 (군산시)
2.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121번지
3. 면적(m ²)	18,079m ²
4. 지 목	잡종지
5. 공시지가(원/m ²)	90,900원
6. 매입예정가격(백만원)	무상(공공목적사용)
7. 매입가격산출근거	미정

4) 제주도

조사항목	조사내용
1. 소유자	국(기획재정부)
2.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51-2
3. 면 적(m ²)	7,889m ² (2,386평)
4. 지 목	임야
5. 공시지가(원/m ²)	22,700원/m ²
6. 매입예정가격(백만원)	710백만원
7. 매입가격산출근거	90,000원/m ² × 7,889m ² = 710,010,000원

조사항목	조사내용
1. 소유자	국(기획재정부)
2.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흥리57-1
3. 면 적(m ²)	23,775m ² (7,191평)
4. 지 목	임야
5. 공시지가(원/m ²)	8,700원/m ²
6. 매입예정가격(백만원)	413
7. 매입가격산출근거	8,700원/m ² × 23,775m ² × 2배 = 413백만원

□ 평가기준

- 국제어업교육원의 적지 선정은 국유지 무상 사용, 지역발전 가능성, 해양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 접근성, 민원문제, 건립비용, 부지여건, 교육생 접근 편의성, 교육지원 용이성, 인근기관과의 협조, 교통 접근성 등 10개 항목을 평가 요소로 함
- 국제어업교육원의 유치를 희망하는 지장자치단체가 제출한 서류에 근거
- 각 후보지에 대하여 판단요소별 상대비교 형식을 취하며, 요소별로 1등부터 1점차의 점수를 부여
- 평가절차
 - 평가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 : 1인, 연구팀 : 1인, 관련단체 2인, 전문가 : 3인 등 7명
 - 평가기준의 타당성과 유효성 협의를 위하여 연구진이 제시한 평가 항목과 각 항목별 점수화의 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및 항목별 점수의 배점에 대한 기준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별로 점수화
- 적지 결정
 - 각 후보지별로 점수를 환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을 적지로 선정

나. 필요시설

- 국제어업교육원의 필요 시설
 - 국제어업교육원의 업무 영역에 따라 건물 및 내부시설은 크게 선박 시뮬레이터실 및 관련 시설, 갑판 및 기관 실습실, 강의실, 교수 및 교관실, 행정사무실, 휴게실 등이 필요하며, 건물의 기본 요소인 화장실, 계단 및 복도가 필요함
 - 국내어선 해기사 양성과정은 적어도 6월의 이론교육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들 교육생의 숙박시설인 기숙사가 필요하며, 국제어업교류 중 외국인 연수생교육과 외국인 선원교육 또한 숙박시설이 준비되어야 함
 - 그리고 해기사 양성과정은 1년의 승선실습 중 적어도 6월 이상은 교육기관에서 승선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에 필요한 실습선이 요구되며, 고교생 종합실습 역시 실습장비를 갖춘 실습선이 요구됨
- 국제어업교육원의 시설규모
 - 대지면적: 15,000㎡(4,540평)
 - 연면적: 5,000㎡(1,510평평)
 - 교육장 건축 바닥 면적: 1,663㎡(504평)

- 실습동 바닥면적 : 677㎡(200평)
- 기숙사 면적: 2,660㎡(806평)
- 주차 면적(계획 주차대수 60대) : 720㎡(218평)
- 조경면적 : 8,636㎡(2,617평)
- 진입로 등 기타 면적 : 643㎡(195평)
- 복합어로실습선
- 어선원 승선실습(고교생 조합승선실습, 일반인 및 외국인선원 승선실습)

톤수	기관마력	속력	항행구역	선원교원	실습생	길이	선형
750톤	3,800	15노트	원양	30	70	70m	복합

- 해기사 양성관련 교육시설
- 1) 종합실습관, 2) 소화훈련장, 3) 해상안전훈련장, 4) 내연단련훈련장
- 5) 항해관

제6장 국제어업교육원 운영방안

1. 기본방향 및 목표

가. 기본원칙

- ① 어선원 수급차원에서 교육원 운영
- ② 어선원 사후관리체계의 운영
- ③ 외국 어선원 고용 선주와 어업인의 기본교육
- ④ 외국인 어선원 확보 위한 해외양성교육원 운영
- ⑤ 외국인 어선원 복지지원체계 확립

나. 기본방향

국제어업교육원의 사업운영의 3대 기본방향은

- ① 어선원, 해기사 및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의 내실화
- ② 연안개도국과의 어업교류 및 연구의 활성화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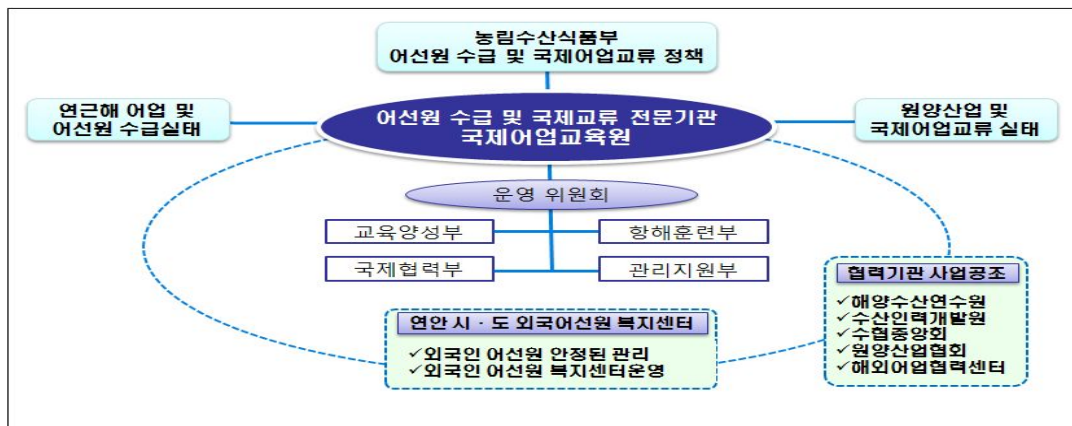
③ 외국인 어선원의 사후관리와 복지지원의 체계화임

다. 운영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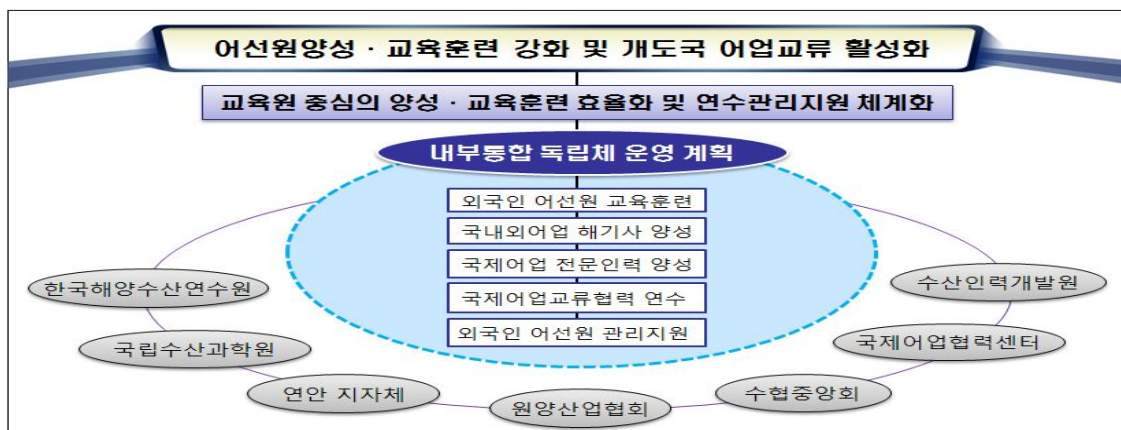
- ① 어선원 양성체제의 구축을 통한 연안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 ②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어선원 확보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
- ③ 해외 수산자원 확보와 원양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기반을 조성

2. 추진체계 및 운영방법

가. 국제어업교육원 추진체계



나. 국제어업교육원 운영체계: 독립조직체로 운영



3. 중점 추진산업

가. 외국인 어선원 교육훈련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어업발전 3대 생산요소(어장, 어선, 어선원) 중 어선원 수급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
- 어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외국인 어선원 작업능력 한계 노출과 안전사고, 비효율적 조업, 등에 대응한 재교육, 고용주 실무교육 등의 미비점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 필요
- 외국인 어선원 노동조건, 복지지원과 이탈상태 등을 고려한 체계적 사후 현장 중심의 고용관리가 필요

□ 사업목표

- 국내외 어업의 어선원 문제 해결 위한 전담기관 중심의 체계적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 전담기관 중심으로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수급체계의 안정화 도모
- 외국인 어선원 재교육, 고용 선주의 실무교육과 함께 사후 현장 관리를 도모

□ 추진방식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취업교육 전담기관으로 지정(기존 수협중앙회 건설기술교육원 장소 임차 교육)
- 수협중앙회의 취업교육기관 업무 이관 통하여 외국인 어선원 취업교육 전담기관으로 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외국인 어선원 연간 3천 3백명 교육훈련(연근해 2천 3백명, 원양 1천명)
- 외국인 어선원 교육 내실화, 교육훈련 2박 3일 20시간에서 4박 5일 35시간으로 확대하여 한국문화이해, 고용허가제 등 관계법령 교육 16시간과 업종별 기초 기능 전문 어업기술 시청각 교육 4시간, 승선교육 15시간으로 조정

나. 내국인 해기사 양성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국내외 어업 5급 해기사 수급문제 심각한 수준과 기존 기관의 소극적인 해기사 양성에 대한 제도적 대응
- 기존 대학, 고등학교의 해기사 면허취득 및 승선저조에 대한 해기사 교육 훈련의 공급방식 전환 필요
- 국내외 어업의 외국인 어선원 급증에 대비, 제도적 사후관리 중심 내국인 해기사 수급구조 재편 필요

□ 사업목표

- 국내외 어업 해기사 수급구조의 해소와 양성 시스템의 재구축을 통한 장기적 안정화 구조 확립
- 어선원 이직을 증가로 해기사 및 부원 부족 현상에 대한 해기사 수급구조 재편의 해결책 마련

□ 추진방식

- 기존 연수, 교육 및 훈련 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활용방안에 대한 선행적 검토
- 각 대학 및 수산계 고교의 해기사 양성 및 국내외 수급체계에 연계한 실태 검토 작업 진행
- 기존 해기사 양성 시스템에 대한 수급구조적 재편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수요중심 공급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일반인(전문대, 대졸) 간부 대상으로 4·5급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증 취득을 하는 5개월 과정으로 연인원 140명 정도를 유지함
- 수산계 고등학교 종합승선실습 5급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증 취득하는 3개월 과정으로 연인원 140명 정도를 유지함

다. 국제어업 전문인력 교육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어업저버 및 수산자원조사원에 대한 수요증가 불구하고 현행 어저버 교

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미흡

- 지역수산물관리기구 참여 활성화 및 협상 실익 위한 과학정보 수집 및 분석 전문가 육성
- 국제협약 및 국제어업 과학조사, 어종식별, 활동지침 등 다양하고 복잡한 국제어업 전문가 양성
- 국제수산분야 협상력 강화 위한 의제분석 및 동향 파악의 국제수산 연구 분석 및 전문체계 구축

□ 사업목표

- 국제오폐저버의 체계적 육성 통한 국제어업의 과학적 기여 및 오폐저버 수급 체계 안정화에 기여
- 국제수산교섭 전문인력 육성지원으로 수산관련 각종 국제회의에 실리적 협상 기반 마련

□ 추진방식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자체교육하고 있는 오폐저버 및 수산자원조사원 교육 프로그램 활용 방안 검토
-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지원팀 구성을 위하여 과학정보(수산과학원), 학술정보(수산관련 대학), 산업정보(원양산업협회 및 수협중앙회), 정책정보(KMI) 등과의 국제교섭전문가 육성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 사업내용

- 국제오폐저버 및 수산자원조사원 연간 140명 교육 및 지원
- 각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와 FAO, OECD, UN, WTO 등에 소수의 협상 전문인력 공급
- 원양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해외합작사 지원, 신어장 개발, 양식어업해외투자 지원

라. 연안국 어업협력 및 연수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동남아. 아프리카. 남태평양 개도국(PNA 8개국) 등에 대한 수산정책 및 양식, 어업기술 수요 증가
- KOIKA 의 지원으로 소수 인원 산발적 교육 및 연수 실시에 대한 국가 실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 리적 효과 기대하기 어려움
- 국가 ODA(공적개발원조)의 일부로서의 수산분야 KOIKA 연구 및 교육지원사업의 체계화 필요
- 외국인 어선원 교육훈련 및 해기사 양성과 개도국 연수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필요
- 사업목표
 - 동남아, 아프리카, 남태평양 개도국 등과의 국제어업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 어업협력사업 및 해외어업개발사업 활성화 통한 원양산업의 안정적 해외어장확보체제 구축
- 추진방식
 - 부경대학교, 수산인력개발원 등의 수산관련 협력연수지원 사업의 검토 및 통합 방안 마련
 - 국가 ODA 사업 KOIKA 수산분야의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가능 협력연수지원 사업 개발 및 확대 이행
- 사업내용
 - 연안국 대상 어업, 양식, 가공, 유통, 어장관리 및 정책에 대한 교육연수 (1-6개월, 연간 100명 정도)
 - 특정 국가의 특화된 맞춤형 수산전문가, 공무원 또는 수산인 단체 기술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 아프리카, 남태평양 개도국, 아시아 등 지역수산문제에 대한 통합적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 수산 분야별(양식, 유통, 가공) 특화된 교류협력연수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수산인력 네트워크 구축

마. 외국인 어선원 관리 및 복지지원 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다른 산업에 비해 외국인 어선원 이탈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어업 현실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 필요
 - 어업의 노동강도가 높고 생활여건이 열악하며, 교육이 미흡하여 사업장 무단 이탈문제의 심각성 고조

- 외국인 어선원을 위한 복지 및 후생제도 미비
- 외국인 어선원 고용 선주에 대한 선주 교육과 사후관리에 연계한 협조체계 미비
- 사업목표
 - 조업노동 강도 조절과 생활여건 개선 및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외국인 어선원 이탈을 제고
 - 외국인 어선원의 효율적 고용관리복지센터 운영 등으로 실효적인 외국인 어선원 수급제도 확립
- 추진방식
 - 외국인 어선원 고용 선주에 대한 외국 어선원 운용 실무교육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 체계구축
 - 기존 원양어선원 복지센터와 연안 시도 운영 복지관 병행하여 외국인 어선원 복지지원체계 구축
- 사업내용
 - 고용 완료된 외국인 어선원 사후관리 및 이탈방지 시스템 구축
 - 휴어기 이용한 주기적인 재교육을 통한 노동의 유연성 및 업계간 효율적인 어선원 확보 체제
 - 외국인 어선원을 고용한 선주의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용
 - 단순 노동자에서 숙련된 어로작업자로의 전환을 위한 외국인 어선원 지원 체계 강구
 - 외국인 어선원의 안정된 선원생활과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한 생활복지센터 운영(시도 지자체 공조)

바. 어업인 후계자. 신지식인 등 수산전문인력 교육

- 교육의 근거와 필요성
 - 「농어업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문어업인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업인후계자육성제도를 실시
 - 수산업은 최근 1차 산업에서 복합 산업으로 이전되고 관련 직종이 새로이 생성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인력 양성 필요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 수산분야 첨단 과학기술 교육 및 현장 중심 교육 실시

- 직무능력, 노동시장의 상황과 수요에 적합하도록 직업능력수준(Skill Level), 직업능력형태(Skill Type)에 따라 산업, 직업이동성, 노동시장 구조 등에 맞는 수산교육을 추진
- 수산교육은 교육 내용의 다양화 및 내실화, 이론 교육보다는 실험·실습교육 중시, 현장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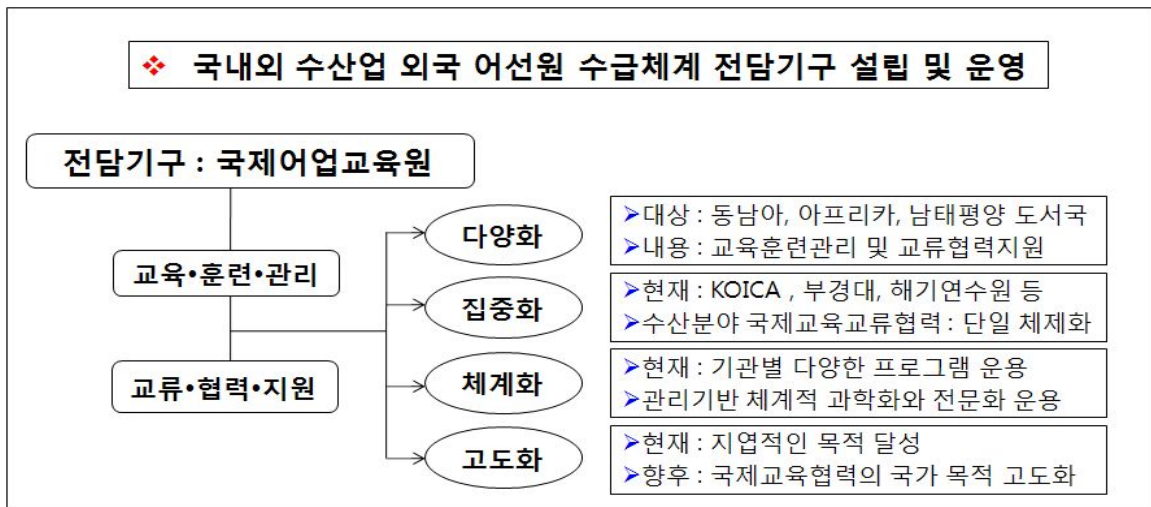
□ 다양한 분야의 교육 실시

- 수산업에의 종사를 장려하고 귀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과 귀어자들에게 주어지는 지원 등은 수산업에의 전망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님
- 수산분야의 교육은 수산공무원이나 어촌지도공무원, 귀어희망자, 수산유통 종사자, 교사, 학생, 수산단체 직원, 수산물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거의 전무함
- 따라서 귀농과 귀어자는 물론, 현재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1차 산업의 마인드를 3차 산업으로, 또한 동일한 수산물을 고부가가치 수산물로 전환시키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따라서 국제어업교육원은 이와 같은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함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최근 원양 및 연근해어업의 이직율 상승과 3D업종 기피 현상으로 해기사 및 부원을 포함한 어선원의 심각한 구인난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어선원 수급난에 따라 외국인 어선원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흡한 기술수준과 언어 문화 장벽 등으로 작업 능률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점차 증가 추세인 외국인 어선원 수급에 대한 기존 교육 및 훈련 관련 기관들의 소극적 대응과 정부지원책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국내외 어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는 외국인 어선원 수급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1-1] 연구목적

외국인 어선원 수급체계의 개선과 함께 국내외 어업의 안정적 조업권 유지를 위한 국제어업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동남아, 아프리카, 남태평양 도서국과의 기술연수 및 연안 개도국과의 어업협력 등을 위한 체계적인 구심체가 미흡한 상태이며,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 수산인력개발원, 해양수산연수원, 부경대, 해양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수산개발원등의 산발적인 어업교류 및 협력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같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외 어업의 어선원 양성·교육훈련과 연안국과의 국제어업교류·협력 활성화 위한 책임있는 국제어업교류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담기구를 설치 운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선원 양성·교육훈련 및 국제어업교류·협력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담기구 중심의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국제어업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해외어업자원 및 어장의 안정적 확보와 우리나라 해외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 목표

- ❖ 국내 수산업의 외국 어선원 수급문제 실태 파악
- ❖ 수급구조의 체계화와 전문기구 설치 타당성 검토
- ❖ 기존 실태 및 실효성 고려한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방안
- ❖ 국내 수산업 발전 위한 국제어업교육원 운영 방안

[그림 1-2] 연구목표

2. 연구 추진전략과 방법

가. 연구 추진전략

추진 1단계는 국제어업질서와 패러다임 변화(자원감소, 자원자국화, 모니터링 강화, 연안국 협력강화, 조업국간 경쟁 가열화 등)에 연계한 국제어업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추세 분석을 한다.

추진 2단계는 외국인 어선원 교육·훈련, 연안국 공무원 및 기술자 연수 등 다양한 유형의 국제어업교류·협력 사업의 분류 분석과 우리나라의 산발적인 국제어업교류·협력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의 해당 기관별 사업별로 분석한다.

추진 3단계에서는 국내외 어업의 어선원 교육·훈련 및 수급체계 관련 민간 단체 및 연구기관, 교육기관과 중앙 및 지자체 행정담당부서와의 데이터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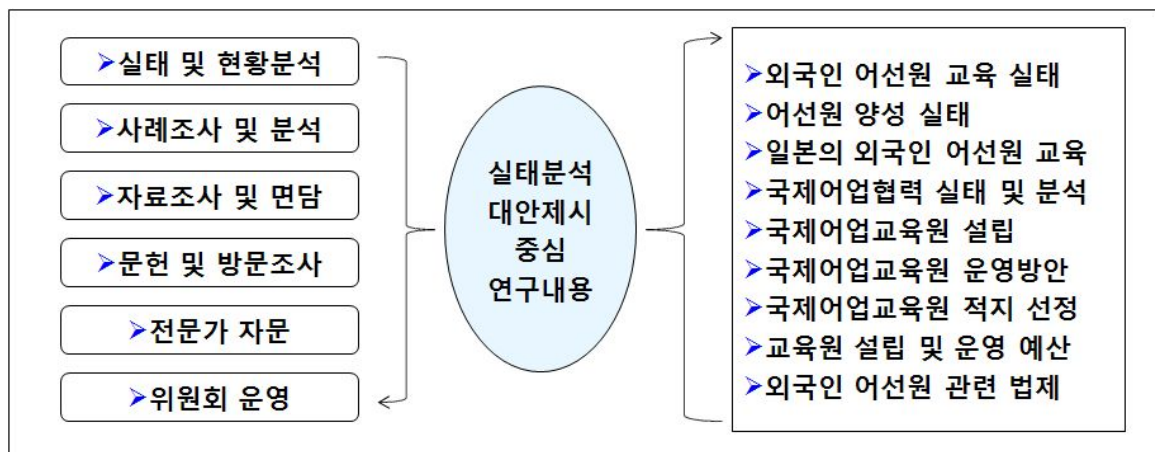
관련자료를 토대로 국제어업교육원 설립의 타당성 분석과 제도적 설립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국제어업교류·협력 관련 자문단 구성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국제어업교육원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약식 투입비용 편익에 따른 기대효과를 간략히 분석 정리한다.

나.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일반 연구와 동일하게 먼저 다음과 같이 실태 및 현황 분석을 한다.

- 국제어업교류 실태 및 현황 자료 조사 및 문헌 수집
- 국제어업교류·협력 관련 해외 사례조사
- 국제어업교류·협력에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검토



[그림 1-3] 연구방법

연근해 및 원양업계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항목별 의견 수렴 및 자문 내용을 정리 분석한다.

-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국제어업교육원 운영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자문
- 기존 관련 기관 및 어선원 수급 법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자문

현황분석과 다양한 의견 및 자문 내용을 토대로 국제어업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최적적인 방안을 첫째, 타당성 분석, 둘째 설립방안 제시, 마지막

으로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 국제어업교육원 설립의 타당성 검토
- 국제어업교육원 합리적 설립 방안 제시
- 국제어업교육원 실효적인 운영 방안 마련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기대효과는 첫째, 어선원 교육으로 심각한 어선원 난 해소이다. 어선원 해기사양성·교육훈련 확대로 심각한 어선원 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어선원 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어로기술자 양성을 촉진한다.

둘째, 국제어업교류 확대로 안정적인 해외어장확보이다. 동남아, 아프리카, 중서부태평양 등 개도국에 대한 각종 수산기술 장·단기 교육 및 연수를 통하여 중장기 해외자원확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양식장, 어항 등 수산시설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셋째, 원양 및 연근해어선에 청년 일자리 창출의 활성화와 국제유통서버 및 수산자원조사원 교육 및 프로그램운영으로 정확한 수산자원조사 및 모니터링, 수산자원보호에 기여하게 된다.

나. 활용방안

활용방안으로는 첫째, 국내외 어업 어선원 수급난 완화를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가능케 하며, 둘째, 연안 개도국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통한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 그리고 체계적인 국제어업교류 및 협력체계를 통한 해외어업의 안정적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제2장 우리나라 어선원 수급 실태

제1절 연근해 어업의 어선원 수급 실태

1. 연안어업의 어선척수 및 어선원 현황

가. 연안어업의 어선척수 현황

수산정보포탈(www.fips.go.kr)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2월 31일 기준 연안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척수는 <표 2-1>과 같다.

<표 2-1> 연안어업 업종별 · 톤수별 척수(2010년)

(단위 : 척)

업종	톤수	동력선					합 계	
		무동력선	1톤미만	1~5톤미만	5~10톤미만	5~10톤미만		20톤이상
연안유자망	149		2,809	8,869	1,497	121	35	13,418
연안안강망	0		3	79	264	0	1	347
연안선망	6		8	74	117	1	0	206
연안통발	18		783	3,652	396	0	0	4,849
연안들망	1		17	131	124	0	0	273
연안조망	0		12	134	162	0	0	308
연안선인망	0		1	3	2	0	0	6
연안복합	290		7,458	15,384	2,105	0	0	25,239
구획(정치성)	41		419	1,285	13	0	0	1,758
구획(이동성)	38		977	174	802	1	0	1,015
정치망어업	49		27	111	128	116	32	463
합계	592		11,801	30,524	4,809	121	35	47,882

자료 : 수산정보포탈(www.fips.go.kr), 2011. 5.

<표 2-1> 연안어업 업종별 · 톤수별 척수를 살펴보면, 연안어업의 총 어선척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수는 47,882척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력선 중 1톤~5톤 미만의 연안어업 어선 척수가 30,524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1톤 미만의 척수도 11,801척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동력선은 592척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업종별로는 연안복합 어선이 가장 많은 25,239척이고, 그 다음으로는 연안유자망 13,418척, 연안통발 4,849척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 연안어업의 어선원 현황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은 어선 톤급, 출어 일수 등에 따라 유동성이 많아 정확한 승선인원을 산출하는 데 많은 제약요인이 있다. 이에 과거 산출 근거 및 어업인 현장 조사에 의거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0년 12월 말 동력선 기준 연안어업 업종별·톤수별 척수 47,290척 중에서 약 93%가 어선원 4인 미만이 승선하고 있으며, 5인 이상 어선원이 승선하는 어선척수는 전체의 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톤 이하의 동력선과 무동력선의 경우에는 대부분 2인 이하 가족형 중심으로 승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선원 승선인원을 기초로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을 산출하면 총 104,751명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연안어업에는 척당 약 2.2명의 어선원이 승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연안어선 톤급에 의한 어선원 승선 소요인원(2010년)

구 분	어선 척수	평균 승선인원	승선 소요인원
무동력선	592	1~2인(1.5인) ¹⁾	888
5톤 미만 동력선	42,325	1~2인(2인)	84,650
5톤 이상 동력선(93%)	4,617	4인 이하(4인)	18,468
5톤 이상 동력선(7%)	149	5인 이상(5인)	745
합 계	47,882	2.2인	104,751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 자료 및 현장 조사에 근거하여 연구자 산출

1) 무동력선 및 5톤 미만 동력선의 경우 현장조사 결과 1인 조업 또는 2인 부부조업이 대부분이므로 어선원수를 1.5명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음.

2. 근해어업의 어선척수 및 어선원 현황

가. 근해어업의 어선척수 현황

근해어선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대만 및 필리핀 북단에서 일본 근처까지 어업을 하는 소형어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척수는 2,875척으로 집계되었으며, 2010년 12월 31일 기준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척수 현황은 <표 2-3>과 같다.

<표 2-3> 근해어업 업종별·톤수별 척수(2010년)

(단위 : 척)

업종	톤수				
	20톤 미만	20~100톤 미만	100~200톤 미만	200톤 이상	합 계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0	43	1	0	44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0	25	51	0	76
동해구기선저인망	0	0	43	0	43
중형기선저인망(외끌이)	0	0	42	0	42
중형기선저인망(쌍끌이)	0	15	0	0	15
대형트롤	0	1	52	0	53
동해구트롤	0	0	39	0	39
대형선망	2	54	62	35	153
소형선망	71	6	0	0	77
근해채낚기	104	365	7	0	476
기선권현망	51	352	5	0	408
근해유자망	189	226	0	0	415
근해안강망	34	191	4	0	229
근해봉수망	3	0	0	0	3
잡 수 기	228	0	0	0	228
근해통발	40	134	2	0	176
근해형망	74	1	0	0	75
근해연승	88	235	0	0	323
합 계	884	1,772	184	35	2,875

자료 : 수산정보포탈(www.fips.go.kr), 2011. 5.

2010년 12월 31일 기준 근해어업의 총 어선척수는 2,875척이며, 20톤~100톤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미만의 어선척수가 가장 많은 1,772척을 차지하고 있으며, 20톤 미만 어선척수가 884척, 100톤~200톤 미만의 어선척수는 184척, 200톤 이상 어선척수가 35척으로 집계되었다.

업종(조업 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근해어업 중 근해채낚기 어선이 476척으로 가장 척수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 근해유자망 415척, 기선권현망 408척, 근해안강망, 잠수기 어선이 각각 229척, 228척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톤 미만 어선은 884척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잠수기 228척, 근해유자망 189척, 근해채낚기 104척, 근해연승 88척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기선권현망의 51척은 어탐선 등으로 나타났다.

나. 근해어업의 어선원 현황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선박 중 선원법 적용 제외 대상인 20톤 이하에 종사하는 어선원의 통계는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있지 않아 <표 2-4> 근해어업 업종별 어선원 승선 소요인원 선정 기준에 의거 산정해 보았으며, 근해어선 중 선원법의 대상인 20톤 이상의 선박은 한국선원복지센터의 2010년 한국선원통계연보에 집계된 어선원 취업현황 통계를 인용하였다.

<표 2-4> 20톤 미만 근해어업 업종별 어선원 승선 소요인원

업종	톤수	척수	척당 평균 승선인원수	전체 승선인원수
20톤 미만 근해어업	대형선망	2	7	14
	소형선망	71	7	497
	근해채낚기	104	5	520
	기선권현망	51	3	153
	근해유자망	189	7	1,323
	근해안강망	34	8	272
	근해봉수망	3	5	15
	잠수기	228	4	912
	근해통발	40	9	360
	근해형망	74	4	296
	근해연승	88	5	440

제2장 우리나라 어선원 수급 실태

	소 계	884	5.4	4,802
	합 계			4,802

자료 : 근해어업 업종별 어선원 승선 소요인원 선정 기준에 의거 연구자 산출

상기 <표 2-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0년 12월 31일 기준 20톤 미만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은 4,802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척당 평균 승선 인원은 약 5.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원법의 대상인 20톤 이상의 연근해어선에 종사하는 취업 승선인원은 <표 2-5>와 같다. 2010년 12월 말 기준 어선원수는 15,939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해기사는 4,682명, 부원은 12,991명이 승선하고 있다.

<표 2-5>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원 취업 현황

구 분	합 계(명)	승 선 인 원 (명)			
		해기사		부 원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	15,939	선 장	2,033	갑판부	9,171
		항해사	348	기관부	425
		기관장	2,001	조리부	1,661
		기관사	241	기 타	-
		통신장	59	기 타	-
합 계	15,939	4,682		12,991	

자료 : 국토해양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원통계연보』, 2011. 4

<표 2-5>를 보면,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의 해기사수 총 4,682명 중 선장은 2,033명, 기관장 2,001명 및 항해사·기관사·통신사는 648명이고, 부원수 총 12,991명 중 갑판부가 9,171명으로 가장 많고 조리부 1,661명, 기관부 425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한국선원통계연보(2010년)」에 집계된 20톤 이상의 연근해 어선원 취업현황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연근해 어선의 해기사는 대부분 학력이 낮고 고령으로 타산업으로의 전직이 어렵고 어려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승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근해어선의 해기사들은 5~6급의 낮은 면장을 소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선·기관장 직책을 가지고 있어 직급이 낮고 보수가 적은 원양어선으로 이직하는 예도 거의 없고 육상이직 요인

도 거의 없으며 따라서 이직률이 매우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근해어선원은 육상취업기회가 적고 임금수준도 낮은 저학력의 인력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각 어항 및 그 주변의 농어민이 주 공급원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교육수준의 향상과 육상 취업기회의 확대, 탈농어촌 현상의 발생으로 전통적 어선원 공급원 자체가 급속히 고갈되어 가는 추세이다.

또한 어자원 고갈로 보합제하에서의 선원수입 증가가 기대하기 어렵고, 선주의 영세성으로 정액월급제의 도입도 기대하기 힘들고, 고용의 안정성 결여(최장 1년)로 기존 선원의 이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양식 및 어선어업자, 가공 및 유통업자의 수급 현황

우리나라 수산업의 어업인구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어업기술의 발달과 어로장비의 현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어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어선세력의 경우 어업인구 변화와는 달리 19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렇지만 어선세력 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 어업자원의 감소 및 경영난 등으로 점차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정부의 감척사업과 더불어 그 수는 더욱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어업인구는 1970년에 62만여 명, 1980년에는 41만여 명, 1990년에 29만 여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09년 현재 18만여 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어선 수 역시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2009년 현재 총 7만 7,000여 척 수준이다.

한편 어선어업자의 수 역시 이러한 추세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어선어업 경영주의 수를 살펴보면 1999년 42만여 명에 달했으나 2009년에는 3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며, 어업종사 가구원의 수 역시 6만 7,000여 명 수준에서 4만 7,000여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최근 5년 동안의 어선어업 경영주의 감소폭은 2005년 대비 23.5%였다. 이는 다음의 표에 나타나 있는 어선 수의 감소와 비교해 보면 하나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어선 수 역시 200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 대비 어선 수 감소폭은 14.4%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어선어업

제2장 우리나라 어선원 수급 실태

경영주의 감소폭보다 작은 것으로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표 2-6> 어업종류별 어업종사가구원, 어업경영주 수 변화 동향

(단위 : 명, %)

구분	합 계		어선어업		양식어업		기타	
	어업종사가구원	어업경영주	어업종사가구원	어업경영주	어업종사가구원	어업경영주	어업종사가구원	어업경영주
1999년	170,590	97,754	68,956	42,442	64,114	31,597	37,520	23,715
2000년	139,837	81,571	64,993	41,527	45,450	22,225	29,394	17,819
2001년	136,869	77,717	57,718	33,880	50,795	25,118	28,356	18,719
2002년	127,694	73,124	60,498	36,852	43,916	21,602	23,280	14,670
2003년	125,023	72,760	60,348	36,951	43,272	21,873	21,403	13,936
2004년	122,384	72,513	60,699	37,572	40,609	20,645	21,076	14,296
2005년	130,589	79,942	58,257	39,218	41,631	21,606	30,701	19,118
2006년	128,048	77,001	56,743	35,606	45,524	24,033	25,781	17,362
2007년	122,916	73,934	54,510	34,139	44,951	23,486	23,455	16,309
2008년	118,879	71,046	51,038	31,803	42,858	22,225	24,983	17,018
2009년	115,532	69,379	47,421	29,989	43,428	22,703	24,683	16,687
05년 대비	-11.5	-13.2	-18.6	-23.5	4.3	5.1	-19.6	-12.7

주 : 기타는 나잠, 맨손어업 및 기타의 합
자료 : 통계청

<표 2-7> 최근의 어선 수 변화 동향

(단위 : 척, %)

시도	합계	1톤 미만	1~5톤	5~20톤	20~50톤	50~100톤	100톤 이상
2005년	90,735	30,962	47,253	9,146	1,461	1,024	889
2006년	86,113	29,753	44,892	8,152	1,434	1,012	870
2007년	85,627	28,839	45,790	7,728	1,413	991	866
2008년	80,766	27,118	43,484	7,139	1,322	900	803
2009년	77,713	25,855	42,371	6,676	1,246	800	765
2005년 대비	-14.4	-16.5	-10.3	-27.0	-14.7	-21.9	-13.9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 각 연도

다음으로 양식어업인의 변화를 살펴보면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현재의 양식어업경영자 수와 양식어업종사 가구원의 수는 1999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의 추이를 살펴보면 어선어업의 추세와 전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혀 다른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2005년에 비해 양식업종사 가구원 수는 4.3%, 양식어업경영자 수는 5.1%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양식 산업의 성장에 의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데, 최근 양식 어업권(면허)의 증감 동향에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양식 어업권은 2007년 이후 면허 건수와 면적이 어류양식을 제외하고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8> 최근의 양식어업권 변화 동향

(단위 : 건 ha)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합계	9,352	132,416	9,555	136,088	9,709	139,870
해조류	1,762	67,503	1,903	70,436	1,954	72,501
패류	4,974	41,148	5,014	41,617	5,087	42,270
어류 등	1,181	4,733	1,177	4,753	1,161	4,711
복합양식	1,143	13,499	1,163	13,523	1,196	13,780
협동양식	292	5,533	298	5,759	311	6,60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요컨대 어선어업의 경우 어선어업경영주와 종사가구원 수의 감소가 어선의 감소폭보다 크게 나타나며, 수산 인력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양식어업 역시 최근의 양식업 성장세와 맞물려 수산 인력을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산인력 구인난은 자칫 경영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개별 경영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20톤 이상 어선에 고용된 외국인 어선원 수의 변화 동향으로 2010년 현재 총 외국인 어선원 수는 1만 7,500여 명 수준으로 2003년에 비해 1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원양어업의 경우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0년에 다시 증가하여 4006명의 외국인 어선원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근해어업의 경우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2003년 연근해어업에서 고용된 외국인 어선원 수는 991명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현재 5,156명으로 무려 50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제2장 우리나라 어선원 수급 실태

이들 외국인 어선원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4,457명, 4,248명으로 전체의 25.4%, 24.2%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필리핀이 20.8%, 미얀마 18.3%, 베트남 10.8% 순이었다. 특히 미얀마나 필리핀의 경우 최근 들어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9> 연도별·국적별 외국인 어선원 고용현황(2010. 12. 31 기준)

(단위 : 명)

구분	업종		국적							
	원양	연근해	계	중 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기타
2003	4,470	991	7,313	2,843	2,153	1,242	357	646		72
2004	4,194	1,056	7,390	2,888	2,146	1,154	492	662		48
2005	3,756	1,602	7,960	3,029	2,267	956	727	925		56
2006	3,719	1,932	8,889	3,140	2,434	1,004	1,253	1,025	11	22
2007	3,696	2,877	9,916	3,565	2,889	1,105	995	1,327	6	29
2008	3,586	3,379	12,777	3,436	3,673	1,240	2,176	2,228	2	22
2009	3,435	4,141	13,789	3,615	3,958	1,588	2,399	2,197		32
2010	4,006	5,156	17,558	4,457	4,248	1,907	3,221	3,653		72

자료 : 국토해양부·한국선원고용센터, 「한국선원통계연보」, 2011.

제2절 원양어업의 어선원 수급 실태

1. 원양어업의 어선척수 및 어선원 현황

가. 국적 원양어업의 어선척수 현황

원양어업이 1950년대 말부터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국적원양어선 선원수는 급증 추세를 보여 1970년대 후반에 최고치에 달하였으나, 200해리 경제수역선포가 일반화되고 유가의 상승이 겹침에 따라 1980년대 후반에는 새로운 어장 및 어종 개발들로 점차 침체국면을 벗어났으며 취업 선원수도 다소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어업환경이 다시 변화하고 있다. 즉, 유엔 해양법협약의 발효 및 세계적인 지구환경보전 그리고 연안국들의 어자원 보호를 위한 정책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이 매우 강력해지고 있다. 또한 1993년부터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의 주요연안국이 유자망 어선(주로 오징어잡이)을 규제함으로써 국적외항어선은 일시에 100여척이 매선 및 폐선되었다.

국적원양어선은 1984년 529척에서 1990년 810척(422,144톤)으로 증가하여 정점에 이른 후 매년 감소하여 <표 2-10>에서 보여 지듯이 2010년 12월 말 기준 총 312척에 이르고 있다.

<표 2-10> 조업형태별 국적 원양어선 현황

조업형태 \ 톤수	200톤 미만	200~500톤 미만	500~1,600톤 미만	1,600톤 이상	합계(척)
선 망(Purse Sciner)	1	0	26	3	30
저인망(Drag Netter)	0	0	0	0	0
트 롤(Trawler)	13	51	10	7	81
연 승(Long Liner)	1	152	2	0	155
유자망(Drift Netter)	0	0	0	0	0
채낚기(Zigger)	0	23	7	0	30
봉수망(Lift Netter)	0	15	1	0	16
안강망(Angler Netter)	0	0	0	0	0
통발(Fish Trapper)	0	0	0	0	0
기 타(Others)	0	0	7	0	0
수산물운반선	0	0	5	0	0
합 계	15	241	46	10	312

자료 : 국토해양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원통계연보』, 2010년

나. 국적 원양 어선원 수급 현황

2010년 12월 말 기준 국적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수는 총 1,892명으로 그 중 해기사는 1,363명, 부원은 529명으로 나타났다.

원양어선에는 3, 4, 5급 해기사가 주로 승선하고 있으며, 근무여건 및 작업강

제2장 우리나라 어선원 수급 실태

도가 상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한 상태에 있으며, 국적 원양어선 선원수는 1992년 18,920명에서 1996년 6,988명, 2006년 2,339명, 2010년 현재에는 1,892명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척당 선원 정원수는 해기사의 경우 4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원의 경우 1.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국적 원양어선의 경우 만성적인 공급부족으로 우리나라 선원은 선원정원수의 약 절반 정도이하로 승선하고 나머지는 외국인 어선원으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표 2-11> 국적 원양어선 및 어선원 현황

연 도	선박척수	선박량 (천GT)	승선 인원수(명)			평균 승선 인원수(명)	
			소 계	해기사	부 원	해기사	부 원
2006	345	179	2,339	1,546	793	4.9	2.3
2007	338	177	2,145	1,443	702	4.3	2.1
2008	326	174	1,897	1,341	556	4.1	1.7
2009	328	176	1,928	1,379	549	4.2	1.7
2010	312	178	1,892	1,363	529	4.4	1.7

자료 : 국토해양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원통계연보』, 각년도

국적 원양 어선척수는 국내외적인 어업환경의 변화와 선박노령화 등으로 인하여 6~8%씩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수도 감소하였다. <표 2-11> 국적 원양어선 및 어선원 현황을 살펴보면, 선박척수대비 승선원수 중 평균 승선원수가 평균 승선 인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원양어선의 경우 연안국 외국인 어선원의 승선으로 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국적 외항어선에 종사하는 해기사의 공급은 수산계 교육기관과 어업훈련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이 중 어업훈련소의 입학자는 처음부터 승선회망자가 지망하기 때문에 수료 후 전원이 승선하나, 수산계 교육기관 졸업자는 승선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또한 수산계 교육기관 출신의 해기사들이 일반 상선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높은 상태이며 이에 따라 외항어선 해기사의 이직률이 높은 상태이다.

2. 해외취업 어선원 수급 현황

<표 2-12>은 2010년 해외취업 선박척수 및 어선원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 12월 말 기준 해외취업 선박척수는 90척, 어선원은 22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2년 5,081명에서 1996년 1,827명, 2006년 265명으로 급기야 2010년에는 226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해외취업 선박척수는 물론 어선원의 인력취업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2> 해외취업 선박척수 및 어선원 현황

연 도	선박척수	승선 인원수(명)			평균 승선 인원수(명)	
		소 계	해기사	부 원	해기사	부 원
2006	139	265	143	122	1.0	0.9
2007	136	242	136	106	1.0	0.8
2008	125	208	113	95	0.9	0.8
2009	87	233	135	98	1.6	1.1
2010	90	226	127	99	1.4	1.1

자료 : 국토해양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원통계연보』, 각년도

제3절 외국인 어선원 고용 현황

1. 외국인 어선원 고용 현황

가. 20톤 이상 어선의 외국인 어선원 고용현황

2010년 12월 말 기준 선원법의 적용 대상인 20톤급 이상의 어선에 종사하는 외국인 어선원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표 2-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양어선에 4,006명, 연근해어선에 5,156명이 승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국적의 어선원이 가장 많은 3,713명이 승선하

제2장 우리나라 어선원 수급 실태

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및 필리핀 국적 순으로 어선원이 많이 승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업종별·국적별 외국인 어선원 고용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국 적 별								
	계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키르키즈스탄	기 타
원양어선	4,006	490	2,004	1,005	0	452	0	0	55
연근해어선	5,156	3,223	1,050	883	0	0	0	0	0
합 계	9,162	3,713	3,054	1,888	0	452	0	0	55

자료 : 국토해양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원통계연보』, 2010년

또한 <표 2-14>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선원법 적용 대상 외국인 어선원 수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8년간 선원법 적용 대상 외국인 어선원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어선원은 2003년 5,461명, 2007년 6,573명, 2010년 9,16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을 기준으로 하면 최근까지 약 168%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4> 연도별 선원법 적용 대상 외국인 어선원수

(단위 : 명)

연도	구분	관 리 현 황		
	계	원양어선	연근해어선	
2003	5,461	4,470	991	
2004	5,250	4,194	1,056	
2005	5,358	3,756	1,602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2006	5,651	3,719	1,932
2007	6,573	3,696	2,877
2008	6,965	3,586	3,379
2009	7,576	3,435	4,141
2010	9,162	4,006	5,156

자료 : 국토해양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원통계연보』, 2010년

나. 20톤 미만 어선에 종사하는 외국인 어선원 고용현황

외국인 어선원을 국내 어선에 고용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외국인 선원제와 고용허가제로 구분되는 데, 선원법에 근거를 두고, 20톤 이상 어선에 대하여 외국인 어선원을 수급하는 외국인선원제 형태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어선원을 어선에 수급하는 고용허가제 형태가 있다.

20톤 미만 어선에 종사하는 외국인 어선원의 고용허가제는 수산업체에서 필요한 외국인력을 요청하는 경우 수협중앙회가 이를 접수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를 득한 후 수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을 수료한 후 어선에 취업하는 형태로서, 2007년 이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였으나, 2007년 7월부터 수협중앙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표 2-15>는 고용허가제도에 의해 국내 어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의 고용 및 교육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톤 미만 국내 어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어선원 고용 실태를 보면, 2008년 525명, 2009년 363명, 2010년 48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동 기간 동안 외국인 선원제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어선원은 2008년 2,233명, 2009년 2,187명, 2010년 2,766명으로 나타났다.

<표 2-15> 수협중앙회, 외국인 어선원 고용 및 교육 현황

(단위 : 명, 회)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외국인선원제*	교육(고용)인원	2,233	2,187	2,766

제2장 우리나라 어선원 수급 실태

	교육회차	35	49	46
고용허가제**	교육(고용)인원	525	363	486
	교육회차	28	16	20

자료 : 수협중앙회, 2011. 5

주 * : 외국인선원제 대상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임

주 ** :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는 고용노동부와 외국인력 채용 MOU를 체결한 15 개국가(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동티모르 등)임

2. 외국인 어선원 고용 필요성 및 관리 방안

가. 외국인 어선원 고용 필요성

(1) 3D²⁾ 업종 기피로 인한 어선원 구인난 심각

최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수산업의 위축은 수요측면에서 어선원의 고용 불안정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공급측면에서도 국내 및 외국인 어선원 가용 인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의 연구보고서(KMI, 어선원 고용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2008))에 의하면 20톤 이상의 어선원 취업자수는 최근 15년간 연평균 5.6%씩 감소하였으며, 2015년 16만 명, 2020년 14만 명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선행 연구 결과 및 이 연구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 20톤 미만 어선 선주들의 74.3%가 어선원이 부족하다고 답해 어선원 수급의 원활화를 위한 정책이 매우 긴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6>에서 나타난 내국인 어선원 감소율만큼 외국인 어선원의 고용 필요성은 수산업의 장기 발전과 수산 식량 자원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외국인 어선원의 고용 증진에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2) 기존의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일의 3D 업종에 원거리(Distant) 라는 특성이 있는 원양어선 및 외항 선원직을 일컫어 4D업종으로 표현되기도 함.

<표 2-16> 연도별 내국인 어선원 취업자수(선원법 적용 대상)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어선원 취업자수 (명)	합 계	19,421	18,647	18,272	18,286	18,057
	해기사	6,021	5,802	5,802	5,885	6,171
	부 원	12,400	12,845	12,470	12,401	11,885

자료 : 국토해양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원통계연보』, 각년도

(2) 수산계 교육기관 승선학과 졸업생 승선율 저조

수산계 8개 고등학교 및 6개 대학의 졸업인원, 승선인원은 <표 2-17> 과 같다. 수산계 교육기관 졸업생의 승선율을 살펴 보면, 수산계 고등학교의 승선학과(항해·기관) 졸업생의 승선율은 4.0%로 상당히 저조한 편이며, 수산계 대학교 역시 19.0 %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7> 수산계 교육기관 승선학과 승선율

	고교		대학		해양수산연수원	
	인원(명)	%	인원(명)	%	인원(명)	%
졸업	388	100	368	100	17	100
면허취득	40	10.3	187	50.8	17	100
승선	16	4.1	70	19.0	12	70.5

(3) 어선원의 노령화로 인한 안전조업의 유해요인 증가

2010년 12월 31일 기준 원양 및 연근해 어선원 연령별 현황은 <표 2-18> 과 같다. 이를 분석해 보면, 30세 이하의 청년층은 282명인데 반해 50세 이상의 장·노년층은 9,252명으로 전체 인원 17,831명 중 청년층은 1.6%, 장·노년층은 51.9%를 차지하고 있다.

어선에는 50세 이상의 장·노년층이 과반수 이상을 승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톤 이하의 연안 어선을 포함하면 약 75% 이상이 50세 이상의

제2장 우리나라 어선원 수급 실태

장·노년층이 승선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승선 인원의 노령화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해양사고에도 유해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4년간 해양사고 사망·실종 223명중 운항과실이 73.1%를 차지하고 있어 젊은 인력의 유인과 안전한 조업 환경을 위해 외국인 어선원의 승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표 2-18> 원양 및 연근해 어선원 연령별 현황

연령별	원양 어선			연근해 어선		
	소계(명)	해기사(명)	부원(명)	소계(명)	해기사(명)	부원(명)
합계	1,892	1,363	529	15,939	4,682	11,257
25세 미만	50	49	1	36	0	36
25 ~30세	39	34	5	157	1	156
30 ~40세	205	166	39	1,854	272	1,582
40 ~50세	836	562	274	5,492	1,190	4,212
50 ~60세	643	468	175	7,367	2,597	4,770
60세 이상	119	84	35	1,123	622	501

자료 : 국토해양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원통계연보』, 2011. 4.

나. 외국인 어선원 관리 방안

(1) 외국인 어선원 수급관리 일원화를 위한 기구 신설

외국인 어선원의 구인형태를 법적 근거로 나누어 보면, 현재 20톤 이상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20톤 미만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20톤 미만의 외국인 어선원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들이 적용이 되지만, 20톤 이상의 외국인 어선원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선원법 적용을 받는다.

이로 인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어선원들 간에도 종사하는 톤수에 따라서 다른 법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 어선원 중 선원법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어선원은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선원관리업체에서 애로사항을 상당부분 해결해 주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어선원은 선주들이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해서만은 20톤 이상과 20톤 미만의 적용 대상 규정을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 하여 선원관리업체가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0톤 미만 어선원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연근해 어선원·어업에 대한 직업알선 업무, 어선원·어업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재교육, 어선원 수급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정책 수립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에 어선원 수급정책 기구의 신설이 요망된다.

(2) 어선원에 대한 직업알선 및 경험자 선발 제도 마련

현재 선원의 구인·구직 역할은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이들의 구인·구직은 상선 및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20톤 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에 대한 직업알선 체제는 전무하다 하겠다.

선원법상 총톤수 20톤 미만의 연안어업에 종사하고 싶은 자의 구인·구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곳이 없어 부족한 어선원은 불법알선업자에 의해 유혹당한 피해자, 출감자, 유랑생활자 등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이는 자연히 선내 사고율을 높이며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연안어업 선주의 80% 이상이 외국인 어선원을 고용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선원의 업무는 타 업종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고, 원활한 공동작업 및 개인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경력이 없는 외국인 어선원이 고용된다 하더라도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력배정 및 선발회사부터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수한 법인을 설립하여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3) 어선원 대상의 전문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선박직원법상 해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또는 일정기간 승무경력을 갖춘 일반 선원이 해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 주로 사설 학원을 이용하며, 합격 후에는 해기사로의 직무수행을 위한 훈련기관의 지정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선원법이나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승무하는 자의 보수교육 내지 재교육의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업 육성과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어업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적 이미지 제고 및 안전사고를 줄이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어선원 관리 및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연계 시스템 마련

연근해 소형어선에 승선 근무하는 어선원을 관리하는 기구(조직)가 없어 정확한 어선원 수급 통계가 없다. 이는 연근해 소형어선에 근무하는 어선원에 대한 정보화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통계를 DB화하여 인력관리를 보다 실효성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어선원 정보에 대한 DB화는 연근해 어선원 중에는 선금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어선의 조업형태 및 특성으로 인해 연안어업에서 외국인 어선원을 고용하는 선주들은 정부정책이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금어기 또는 어한기에는 어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을 연간 장기적으로 조업을 시킬 경우 경영적자에 시달리게 되고, 장기적으로 조업을 시키지 못할 경우 외국인 고용자의 고용안정이 되고, 장기적으로 조업을 시키지 못할 경우 외국인 고용자의 고용안정이 저해되므로 외국인 어선원들이 업종별로 휴어 시에 타 업종으로 연계해서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연계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어선원 양성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실태

제1절 어선원 및 어업자 교육·훈련 실태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훈련

가. 설립 배경과 조직

1961년 한국정부와 UNDP 사이에 「한국원양어업기술훈련사업」에 관한 협정 체결 및 1964년 UNDP와 한국정부 간에 훈련소 설립운동을 위한 「한국원양어업기술훈련사업 운영계획서」에 서명함으로써 UNDP에서는 기술 및 장비가 제공되고, 정부에서는 인적 용역, 토지, 건물 및 운영비를 부담하여, 1965년 원양어업기술훈련소를 부산에 설립함으로써 한국정부와 FAO에 의한 공동운영체제를 통하여 원양어선에 필요한 어선종 1등(현재의 4급) 항해사 및 기관사를 양성, 배출하게 되었다.

1969년에는 저개발국의 낙후된 어업생산력 향상을 위해 수산분야 외국인 연수 교육과정을 개설하였고, 영세어민의 자질 향상과 연근해어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연근해어업기술훈련소를 신설하여 병립 운영하게 되었다. 1972년에는 가다랭이 어업기술과정을 추가 개설하였다. 그리고 1973년에는 원양어업기술훈련소와 연근해어업기술훈련소를 통합하여 한국어업기술훈련소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1976년에는 가다랭이 이료 개발사업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서 원양 및 연근해어업에 종사할 실무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어선해기사를 단기에 양성·배출하여 우리나라를 선진 수산국으로 도약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본 협정사업이 궁극적으로는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영구적 교육훈련기관으로 존속시킨다는 협정 조건에 따라 특수법인 한국어업기술훈련소가 1978년에 새로이 출범하였다.

1979년에 선원 양성을 위한 선원교육과정을 개설하였고, 1985년 원양 및 연근해교육과정을 통합한 해기사과정을 개설 운영하게 되었으며, 1986년 어선안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전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1989년 면허갱신 교육과정, 1990년 응시자격취득 교육과정, 1990년 어선원 소양교육과정, 1991년 선박직원법 개정에 의한 연안선 직무교육과정, 1993년 면허취득 교육과정, 1994년 원양선 직무교육과정, 1995년 IMO/STCW 협약 준수를 위한 레이더 관측 및 자동충돌예방 교육과정을 각각 개설하였다.

1998년 1월 1일자로 한국어업기술훈련소는 당시 상선선원 재교육기관이던 한국해기연수원과 통합하여 특수법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명실 공히 종합 선원교육훈련기관으로 탄생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동 기관의 선원교육은 교육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선 중심의 선원재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 어선원 교육·훈련 내용

(1) 어선 해기사 양성 및 자격취득 교육

기존의 원양과정 및 연근해과정을 통합하여 1985년에 어선 해기사과정을 신설한 것이었다. 교육참가 자격요건은 승무경력 3년 이상 되는 자를 대상으로 훈련생을 선발하여 교육하던 것을 승무경력 1년 6개월 이상인 자로 하였으며, 교육기간은 18개월(육상 12개월, 해상 6개월)이었다. 1986년부터는 승무경력을 1년으로 완화하고 부족한 승무경력은 훈련소에서 위탁 승선실습을 통하여 보충하였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6개월(육상 4개월, 해상 2개월)의 교육기간을 통하여 원양 및 연근해어선에 필요한 3급 또는 4급 해기사를 양성·배출하는 교육과정은 어업, 선박운항 및 기관운용에 대한 전문과목을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게 하였다.

1991년부터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를 선발하여 어선 초급해기사로 진출시킴에 따라 우수인력의 해기사 진출 및 경력선원들의 간부선원화를 통해 1995년 말까지 4,022명의 우수한 어선해기사를 배출함으로써 원양 및 연근해 어업계에 심화되고 있는 해기사 인력난 해소는 물론 선원직업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 직무교육 및 요청교육

선박운항에 지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고급 간부선원들의 직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과정으로 원양어선의 선장, 기관장, 1등항해사, 1등기관사, 통신장을 대상으로 하는 원양선 직무교육 등이 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의 어업환경 및 어선장비의 자동화 추세에 부합되는 전문기술을 실무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어선의 안전운항 및 생산성 향상, 각종 연안국 규제사항, 수산정책에 대한 학습을 통해 국가간의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항해사 자격을 취득하고 최초로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박운항의 필수적 장비인 레이더의 효과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레이더의 원리와 구성, 플로팅, 레이더 항해 등의 과목으로 실무능력을 배양시키고 있다.

최근에 다수의 어선에 탑재되어 있는 자동충돌예방 장치의 효과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ARPA 레이더 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선장, 항해사를 대상으로 이 장치의 원리와 기능, 작동, 오차 등의 내용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안전 및 법정교육

선원법 제10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선박직원(30톤 미만은 제외) 및 원양어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에게 선박의 구조 및 설비, 구명설비, 구명통신, 생존기술, 소화이론 등을 강의함으로써, 선박의 조난시 생존과 통상 항해시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4) 승선 실습교육

(가) 어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어업과)

- 교육과목 : 공지 내용 없음
- 교육시간 : 3월 / 504시간
- 교육주기 : 요청시(연 1회)

(나) 어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기관과)

- 교육과목 : 공지 내용 없음
- 교육시간 : 3월일 / 504시간
- 교육주기 : 요청시(연 1회)

(5) 외국인 교육

국적 원양어선 및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어선원의 승선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인 해기사의 승무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해기사면접시험의 합격 또는 해사법규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수산계 대학 어업관련 학과 및 교육과정

가. 수산계 대학 어업관련 학과 및 교육과정

수산계 대학 학사과정은 기존의 해기관련학과인 어업·어로학과, 기관학과가 해양생산관리학과, 해양경찰학과, 기관시스템공학과, 동력기계시스템공학과 등으로 학과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는 산업 사회와 경제 환경의 변화에 기인하였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교과 과정이 기존의 해기관련 과목 중심에서 육상의 취업 자리 중심으로 개편되어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기존의 어업·어로학과는 해양경찰직이나 항로표지직 등의 공무원과 육상의 취업처로 전환한 지 오래되었고, 기관학과는 기관사 등 해기사 면허 취득보다는 기계 및 전기관련 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으로 교육 방향이 변하고 있다.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과과정이 다양하게 개설되어야 하나 교수인력의 부족으로 교과과정이 제직하고 있는 교수 중심으로 편성되며, 해기관련 학과의 학사과정 기본 골격을 바꾸면서 까지 해기관련 학과를 계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대학이 지향하는 기본 유형과 형식에 맞추어 전공과목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에 교육 및 수산관련 정부 담당자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수산계 대학의 해기관련 학과도 선박 승선을 원하는 소수 정예요원 중심으로 재편하여 해기 전승의 이념을 되살려야 할 것이다.

나. 해기관련 학과 졸업생의 해기인력 수급 실태

수산계 대학 졸업자 취업은 해기관련 학과들을 제외하면 대개 50% 이하를 밀돌고 있다. 즉 공급이 수요를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부 수준에서의 인력공급은 더 이상 필요 없고 다만 수요에 맞추어 학과간에 다소간의 수급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는 최근(2006-2009년) 4년간 수산계 대학 해기관련 학과의 해기 면허 취득 및 승선율을 보여주고 있다. 해기관련 학과의 취업율은 85%를 상회하고 있으나 실제 승선율과는 괴리감이 있다.

<표 3-1> 수산계 대학의 해기 면허취득율 및 승선율(최근 4년간)

(단위 : 명, %)

학 과	년 도	수산계 대학(2006-2009년)				
		졸업자	면허취득	면허취득율	승선인원	승선율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과		368	187	50.8	70	19.0
해양경찰학과						
기관시스템(공)학과						
동력기계시스템(공)학과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상기 <표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산계 6개 대학의 졸업생 수는 368명 중 해기사 면허 취득은 187명으로 면허 취득율은 과반수(50.8%)를 상회하고 있으나 실제 승선율은 19.0%에 불과한 실정이다.

3. 수산계 고등학교 및 해기인력 교육·훈련 현황

우리나라 수산업은 수산 식량의 안정적 공급, 소득 및 고용 기회 제공, 해양 환경 보전,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 국가 해양력 증대 등의 과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견 수산기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수산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의 수산계 고등학교는 순수 수산고를 포함하여 총 8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급편제 및 해기관련 학과 현황 등은 <표 3-2>과 같다.

<표 3-2> 수산계 고등학교 학급편제 및 해기관련학과 현황

구 분 학 교	학급편제	해기관련학과	소재지
인천해양과학고	5개학과 30학급	정보해양과, 동력기계과	인천
경남해양과학고	2개학과 6학급	자영해양생산과, 해양기술과	경남 남해
완도수산고	2개학과(6과정) 18학급	자영해양생산과(운항, 기관)	전남 완도
포항해양과학고	6개학과(과정) 32학급	해양정보과, 동력기계과	경북 포항
충남해양과학고	4개학과 12학급	해양생산과, 동력기계과	충남 대천
구룡포종합고	3개학과 8학급	해양생산과, 동력기계과	경북 포항
울릉고등학교	3개학과 9학급	해양생산과	경북 울릉
성산고등학교	3개학과 16학급	해양생산과, 전자통신과	제주 성산

자료 : 각 고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2011.5)

4. 양식 및 어선어업자 교육·훈련 실태

수산업의 양식 및 어선어업자 교육 및 훈련은 수산분야의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정규 교육과정에서 수산분야를 전공한 경우와 사회교육기관의 수산업분야 교육과정을 거친 경우로 구분된다. 다시 정규교육과정은 고등학교와 대학으로 나뉘어 현재 수산인력의

제3장 어선원 양성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실태

양성은 크게 수산·해운계 대학,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그리고 사회교육기관에 의한 인력 양성의 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1] 양식 및 어선어업자 교육·훈련 체계

우선 수산해운계 대학은 강릉대, 경상대, 군산대, 부경대, 전남대, 제주대, 농수산대 등 7개로, 농수산대를 제외하고 모두 4년제 대학교이다. 이들 대학에서는 매년 1,500명 정도가 입학하고 있으며, 수산·해양 관련 학과 또는 전공 수는 각 대학교의 사정에 따라 5~10개이다. 단 한국농수산대학의 경우 수산양식학과 1개학과에 30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학교의 수산·해양 관련 졸업자가 동일 계열로 취업하는 경우는 3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³⁾.

3) 강릉대학교의 경우 수산·해양 관련 학과의 졸업생 취업현황을 보면, 2004년에 104명이 졸업하였으나, 수산관련분야 취업자는 7명이었으며, 2005년에는 102명이 졸업하였으나, 수산관련분야 취업자는 14명, 2006년에는 120명이 졸업하여 수산관련분야 취업자는 21명, 2007년에는 91명이 졸업하여 25명이 수산관련분야 취업하였음

<표 3-3> 수산·해양 관련 대학교의 개설 학과

구분	전공 또는 학과	입학생 수
강릉대학교	해양식량공학전공, 해양자원육성전공, 해양생물공학전공, 해양분자생명공학전공 등	139~164명
부경대학교	식품공학전공, 영양학전공, 생물공학전공, 해양생산학전공, 해양경찰학전공, 수해양산업교육과, 수산생명의학과, 해양산업경영학부 등	388명~416명
군산대학교	해양생명개발전공, 해양생물공학전공, 해양생명과학전공, 해양생산학전공, 동력기계시스템공학전공, 식품생명공학전공, 해양시스템공학전공, 해양학과, 수산생명의학과 등	260~323명
전남대학교	수산·해양 관련 10개 학과	270명~300명
경상대학교	수산·해양 관련 5개 학과	100~200명
제주대학교	수산·해양 관련 10개 학과	256~284명
한국농수산대학	수산양식학과	30명

수산·해운계 고등학교는 전국에 총 12개로 매년 약 1,600명이 입학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는 공조냉동과, 기관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레포트학과, 수산양식과, 식품가공과, 자연수산과, 전자통신과, 항해과, 해양기술과, 해양산업과, 해양생산과, 해양정보과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수산·해운계 고등학교의 졸업생은 크게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고 있는데, 진학하는 경우 동일계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의 경우도 해마다 차이는 있으나 동일계열로 취업하는 비율이 대학교 졸업생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사회기관에 의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수산인력개발원, 수산사무소, 수협 등 다양한 기관에 의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사회기관에 의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수산인력개발원	전업어가어선어업, 전업어가어류양식, 전업어가패류양식, 전업어가해조류양식, 산업기능요원과정. 수산업경영인간부연찬
수산사무소	어업인 후계자교육, 신지식인 교육, 경영기술 연차교육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문교육(창의역량, 녹색 성장, 수산정책, 어업자원, 수산식품, 어촌, 관광), 외국어, 정보화, 사이버교육, 국제교육, 어업인교육, 소비자·시민교육
수협연수원	교육내용에 의한 분류보다는 교육대상자에 의한 교육의 수준과 내용을 정하여 교육
수산최고경영자과정	경상대학교 수산최고경영자과정, 제주대학교의 최고해양수산업경영과정
한국수산벤처대학	수산경영자의 마음가짐과 사업 브랜드, 유통 등 수산 전반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교육

이들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수산인력개발원이 실시하는 어업인 후계자 교육은 전업어가어선어업, 전업어가어류양식, 전업어가패류양식, 전업어가해조류양식, 산업기능요원과정, 수산업경영인간부연찬 등이 있다. 이의 대상은 신규 전업어가, 산업기능요원, 어업인후계자 간부 등 다양하다. 그러나 수산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어업인 교육은 신규 진입자의 교육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어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 또는 신기술 전수교육의 성격이 강하다.

다음으로는 수산사무소로 크게 어업인 후계자교육, 신지식인 교육, 경영기술 연차교육으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다. 어업인후계자 교육은 각 수산사무소가 운영하고 있고, 교육내용은 피교육생의 주업종과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각 수산사무소가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내용은 기술교육보다는 어업인 후계자로서의 필요한 일반교육에 치우치고 있어 어업인들의 교육이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신지식인 교육은 1999년부터 수산분야 신지식인은 수산양식, 유통·가공, 어선어업으로 구분하여 선발하였으나, 수산사무소가 실시한 신지식인 교육에는 주로 공통적인 사항과 지역의 수산여건에 맞는 발전방안과 시책교육이 많아 다소 한계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기술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연차교육의 내용은 주로 기술교육, 수산시책, 질병대책, 지역특성에 맞는 양식 기술, 현장견학, 신지식어업인 성공사례 등 전문 강연, 국제농수축산물전시회 관람, COEX 아쿠아리움 관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해양수산연수원은 가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발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총 7개 분야 76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수산인력과 관련해서는 면허취득교육, 면허재취득교육, 어선교류교육, 해기사 양성교육 등이 이루어진다.

넷째 수협연수원에서는 최고경영자, 전문경영인, 어촌계장 등 대부분 조합 임직원 및 어업자단체의 지도직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시하는 교육은 교육내용에 의한 분류보다는 교육대상자에 의한 교육의 수준과 내용을 정하여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분야 신규로 진입을 희망하거나 또는 신규로 진입한 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인력 양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그리고 대학의 수산최고경영자과정은 경상대와 제주대, 강릉대, 전남대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경상대의 수산최고경영자과정은 1995년 3월에 경상남도 와 경상대학교간의 위(수)탁교육협약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모집인원은 양식어업 및 내수면어업 20명, 어업관리 10명, 수산가공 10명 등이다. 제주대 수산최고경영자과정에서의 개설반은 해녀반과 해양생산경영반으로 해녀반은 해녀의 연령층이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해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노후대책의 강구, 해조류 및 패류의 웰빙상품화, 해녀생활의 이론과 실무적 지식, 자질 능력 등을 교육하고 있고 해양생산경영반은 해양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어선어업인, 양식어업인과 어촌 지도자, 수협과 수산물 유통·가공에 종사하는 수산인과 해운항만과 해양개발에 종사하는 해양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과정의 교육내용은 제주의 도정과 해양수산정책, 해양수산업 경영관리와 마케팅 기법, 제주 해양수산업의 발전 대책, 국내외선진 해양수산 기술, 잠수병에 대한 치료법과 건강관리 등 가장 중요한 관심주제를 선정하여 외부의 저명인사 초청 특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수산벤처대학에 의한 직업교육으로 수산벤처에 관심이 있거나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거주지 또는 학력 제한없이 전국의 수산인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수산경영자의 마음가짐과 사업 브

랜드, 유통 등 수산 전반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교육한다. 교육과정은 1년으로 월 1회 1박 2일간 연 12회 24일간이며, 교육비는 전액 정부지원(국비 75%, 도비 및 군비 25%)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3절 외국인력 어선원 양성 교육·훈련 실태

1.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교육

가. 업무 개관

1996년 (구)수산청으로부터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연수추천단체로 지정된 이후 연근해 어업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총 8,304명의 외국인 근로자 산업연수생을 도입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산업연수생 제도는 2007년 이전까지는 일률적으로 건설·중기·어업 등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을 통해 송입 및 교육 관련 업무가 진행되었으나, 동 제도가 2006년 말 폐지되고, 2007년부터 정부의 외국인력 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다.

이에 따라 선원법 적용을 받는 20톤 이상 어선은 외국인선원제도가, 20톤 미만 어선 및 양식어업은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어 2007년 6월 1일부터 어업·수산분야의 외국 인력 관리업무는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 외국인인력지원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에서는 외국인선원제에 의한 외국인 어선원 8,926명(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도입하여 2010년 12월 기준 20톤 이상 어선에 총 5,156명의 외국인 어선원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동 기관은 2007년 4~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20톤 미만 및 양식어업에 대한 고용허가제에 의한 민간업무 대행기관 및 민간취업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2007년 6월 1일부터 2010년 12월까지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3,652명을 도입하여 1,732명(베트남,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스리랑카)에 대하여 취업교육을 실시하였다.

2010년에는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를 어업현장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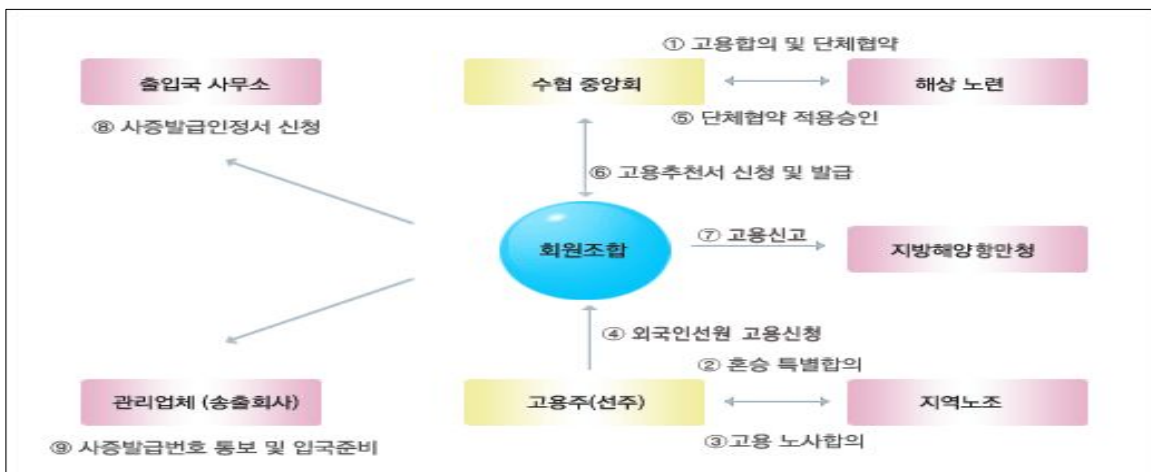
「외국인 어선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어선원 고용·관리업무 전산화를 통해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외국인 어선원의 도입기간을 단축하여 어업인의 불편해소 및 어업인의 생활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외국인 인력지원단은 약 11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송입 업무를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근거한 외국인 직무 적응교육 및 외국인 근로자의 사후관리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다.⁴⁾

나. 외국인 어선원 고용 절차

수산업체에서 필요한 외국인력을 요청하면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어업인과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입국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얻어 고용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입국과 동시에 현장적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직무적응교육 실시하고 있다.

<그림 3-2> 는 수협의 외국인 선원 고용 절차를 상세하고 있다. 총톤수 20톤 이상 어선의 경우 고용주인 선주사 측에서 외국인 어선원 고용 신청서가 접수되면 회원조합측은 지방해양항만청에 고용 신고를 하고 수협중앙회는 해상노동조합연맹(해상노련)과 단체협약의 범위 내에서 고용추천서를 발급하고 있다.



[그림 3-2] 외국인 선원 고용 절차 (총톤수 20톤 이상 어선)

4)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수협 연차 보고서」, 2010년, p.33

다. 외국인 어선원 교육업무

직무적응교육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근거한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4장 제7조에서 한국선원과 혼승하고자 하는 외국인선원은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외에 선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 안전교육, 한국어 기본회화, 한국의 출입국 관계법령 등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직무적응교육은 입국 전에 자국 교육기관에서 3일 이상 받아야 하고, 입국 후에는 국내 선원교육기관에서 2박 3일 이내의 교육을 이수(선박운항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책임 하에 선상교육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박소유자, 송입업체 및 선장은 외국인선원이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관련 법제에 의거 입국한 후에는 수협중앙회에서 주관(위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입국 후 입국 허가 종류에 따라 외국인 선원제 및 고용허가제에 의한 직무적응교육을 이수하게 되는데, 이수해야 하는 직무적응교육 일정 및 프로그램은 <표 3-5>, <표 3-6>과 같다.

<표 3-5> 외국인 선원제 교육일정 및 교육프로그램

일정	시 간	교 과 목	시간
1일차 (5시간)	15:00~16:00	건강검진	
	16:00~16:30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	
	16:30~17:20	한국어(기초회화 I)	1
	17:30~18:20	한국어(기초회화 II)	1
	18:20~19:00	석 식	
	19:00~21:00	한국문화의 이해(한국의 지리와 기후)	1
		한국문화의 이해(한국인의 전통문화)	1
	21:00~21:50	기초기능어업(어구 및 조업법 설명)	1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2일차 (11시간)	07:30~08:30	조 식	
	08:30~10:20	한국어(선상용어 및 상용구)	2
	10:30~11:20	한국문화의 이해(한국인의 생활습관)	1
	11:30~12:20	어업기초기능(어구 및 조업법 설명 II)	1
	12:20~13:30	중 식	
	13:30~14:20	산업안전보건(어업기초)	1
	14:30~15:20	한국어(기초회화 III)	1
	15:30~16:20	한국어(기초회화 IV)	1
	16:30~18:20	출입국관리법(관련법 및 이탈방지교육)	2
	18:20~19:30	석 식	
19:30~21:20	어업기초기능(어구 및 조업법 설명 III)	2	
3일차 (4시간)	07:30~08:30	조 식	
	08:30~09:20	한국문화의 이해(한국생활의 이해)	1
	09:30~10:20	어업기초기능(어구 및 조업법 설명 IV)	1
	10:30~11:20	출입국관리법(이탈방지교육 II)	1
	11:30~12:20	계약서 체결	1
	12:30~	인도인수	

※ 교육기관의 사정(일정)에 따라 교육시간 조정가능

<표 3-6> 고용허가제 교육일정 및 교육프로그램

일정	시 간	교 과 목	시간
1일차 (5시간)	14:00~14:30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	
	14:30~15:30	한국어(기초회화 I)	1
	15:30~16:30	한국어(기초회화 II)	1
	16:30~18:30	한국문화의 이해(한국의 지리와 기후)	1
		한국문화의 이해(한국인의 전통문화)	1
	18:30~19:30	석 식	
	19:30~20:30	기초기능어업(어구 및 조업법 설명)	1
2일차 (11시간)	07:30~08:30	조 식	
	08:30~10:20	한국어(선상용어 및 상용구)	2
	10:30~11:20	한국문화의 이해(직장생활, 직장예절)	1
	11:30~12:20	어업기초기능(어구 및 조업법 설명 II)	1

제3장 어선원 양성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실태

	12:20~13:30	중 식	
	13:30~14:20	산업안전보건(공통)	1
	14:30~15:20	산업안전보건(안전일반)	1
	15:30~16:20	산업안전보건(어업기초)	1
	16:30~17:20	산업안전보건(어업관련 안전내용)	1
	17:30~18:20	관계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
	18:20~19:30	석 식	
	19:30~20:20	관계법령(근로기준법)	1
	20:30~21:20	관계법령(이탈방지교육)	1
3일차 (4시간)	07:30~08:30	조 식	
	08:30~09:20	한국문화의 이해(의식주 생활)	1
	09:30~11:20	고충처리 및 성희롱 예방교육	2
	11:30~12:20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1
	12:30~	인도인수	

외국인 어선원의 직무적응 교육 장소는 수협중앙회 천안연수원과 건설기술교육원(인천)을 이용하고 있으나, 외국인 어선원이 대부분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어 외국인 어선원의 이동거리 최소화와 국내 이동 도중 예기치 못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로 인천에 소재한 건설기술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강사진은 수협중앙회 외국인인력지원단 소속 11명 중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어 등 현지 외국어에 능통한 내부 직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2. 우리나라 어업분야 교육사업 및 복지교육원 운영

가. 어업분야 ODA 자금에 의한 연안국 교육사업⁵⁾

선진국의 현대화 된 수산기술의 도입과 우수한 해기사의 양성이 시급한 시점에서, 필요한 인력 수요의 효과적인 확보와 현대화 된 어구·어법의 보급을

5) 농림수산식품부, 「연안국 어선원 양성교육 타당성 조사」, 2010. 12. 재인용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통한 어업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한국어업기술훈련소가 설립되었다. 한국어업기술훈련소는 정부의 대외기술공여 계획의 일환으로 1968년부터 매년 우리나라 원양어업과 관련이 있는 연안국의 외국인을 초청하여 선진수산기술을 전수하는 연수생 초청 교육을 실시하였다. 1991년 KOICA가 설립되기 전의 연수생초청사업은 행정부서별로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였다. KOICA는 연수 분야별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경제개발, 공공행정, 농림·수산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2010년 현재 수산분야 교육사업은 연수생 초청사업과 전문가 파견사업이 있다. 연수생 초청사업은 아프리카 수산기술자 양성 및 수산정책과정, 연안 수산양식과정, 수산물가공 및 수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과정, 알제리 수산정책 수립 역량 강화과정 등이 시행되고 있다. 전문가 파견사업은 우리나라 전문가를 개발도상국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기술지도, 연구, 강의, 자문, 조사 및 프로젝트 실시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전문지식을 전수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및 인적 자원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다.

(1) 초청 연수교육사업

관계연안국 어업담당기관의 직원 및 수산기술자를 연수생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업 사정 및 수산기술에 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계연안국에 훈련거점을 두고 현지의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어선원 및 훈련지도자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초청 연수교육사업은 정부의 대외협력사업의 일환으로 KOICA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해양·수산 관련 공무원, 관리자, 연구원 등을 초청하여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 및 우호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초청 연수 교육사업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어로기술과정, 해상교통관제과정, 해양오염방제 시뮬레이션과정 등이 있으나, 현재는 수산인력개발원과 해외어업협력센터 등의 기관에서도 참여하여 수산분야의 연안수산양식과정, 어로기술과정, 수산물가공 및 수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알제리 수산정책 수립역량 강화, 아프리카 수산기술·정책 연수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선진 수산기술을 전수할 목적으로 어류양식 및 어업자원관리에 관한 이론 강의, 수산연구기관 및 내수면 양식장 현장학습 등과 우리나라의 수산정책에 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전문가 파견사업

전문가 파견사업은 우리나라 전문가를 개발도상국에 일정기간(1개월 내지 1년간) 파견하여 기술지도, 연구, 강의, 자문, 조사 및 프로젝트 시행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전문지식을 전수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및 인적 자원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견 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와 1년 미만의 단기가 있으며, 단기 전문가는 장기 전문가의 지원이나 세미나에서의 강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림·수산 분야의 경우는 우리나라 전문가 파견사업의 32.8%를 차지하는 207명(2002년 12월 기준)이 파견되었다. 그러나 2002년도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 파견사업은 없었으며, 해양수산부 자체사업으로 EXPO 유치와 관련하여 수산양식분야 조사단 총 9명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과거의 어업협력 사업은 개발도상국 수산업의 증진과 기술지원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오늘날의 어업협력은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자원관리의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외어업의 교류협력은 수산양식·어업기술·수산기자재 전문가가 현지인에 대한 기술이전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파견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 감천항 외국인선원 복지교육원 운영

부산 감천항 외국인선원 복지교육원은 부산 감천항을 이용해 입·출항하는 외국인 원양선원이 항공편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출항시까지 2~3일간의 체류기간 중 시청각 교육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건물은 부지 550평에 연건평 210평의 3층 건물로서 1층에는 업무용 시설이, 2층에는 교육장과 식당이, 3층에는 60인이 동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숙소가 들어서 있다. 특히 2층 교육장은 외국인 선원들에게 시청각교육과 어구 조작

등을 사전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 교육원은 외국인선원의 체류기간 중 이탈 등 불법체류를 예방하고, 시설 내에서의 시청각교육과 어구 조작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으나, 정규교육 과정에 의한 외국인 선원교육 과정은 없다.

3. 외국의 연안국 어선원 양성 교육사업 현황

가. 일본의 외국인 어선인력 양성교육 현황

자국 수산업의 개발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이것을 담당할 기술인력 부족으로 계획대로 개발이 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어선 입어 등의 관계가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어업분야의 인력양성에 대한 협력을 일본에 강하게 요청하고 있으며, OFCF는 이에 응하여 연수생 초청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OFCF의 연수생 초청사업⁶⁾의 경우 관계개발도상국의 요구는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일본과의 어업관계의 유지·강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 연수사업에 의한 인력양성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속적인 연수생 초청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OFCF의 연수생 초청사업의 각 연수과정별 개요를 살펴보고, 특히 어선원 양성과 관련 있는 사업의 실적 및 평가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 어선원 양성사업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OFCF의 연수과정은 <표 3-7>과 같이 크게 3개의 양성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개의 양성과정은 다시 연수목적에 따라 8개 과정으로 구분하여 관계국으로부터의 연수요청에 대응하고 있다.

<표 3-7> OFCF 해외연수생 초청 연수과정의 구성 및 연수기간

연수과정 구성	주요 연수과정	연수기간	일반+기술연수
어선원 양성과정	승선 과정	234일	81일 + 153일

6) 농림수산식품부, 「연안국 어선원 양성교육 타당성 조사」, 2011. 12. 재인용

제3장 어선원 양성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실태

	육상 과정	-	-
	- 육상훈련그룹	77일	19일+52일
	- 선박직원훈련그룹	45일	18일+17일
수산기술자 양성과정	실습 과정	139일	53일+78일
	운영관리 과정	48일	22일+18일
수산자도자 양성과정	기술보급 과정	41일	10일+29일
	자원관리 과정	31일	12일+11일
	어업관리 과정	216일	80일+123일
	후발개도국(LDC) 과정	29일	6일+11일

OFCF 해외연수생 초청 연수생의 지원가격은 일정한 조건에 충족한 자 중에서 선발하여 교육연수를 진행한다.

연수시설은 OFCF가 별도의 자체 연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수장소는 위탁하여 일반연수는 동경도 아다치구에 있는 「재단법인 해외기술자연수협회(ATOS) 동경연수센터(TKC)」와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토바타구에 있는 「일본수산(주) 능력개발센터」에서 연수관련 단체나 수산기업의 협력을 받아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기술연수는 일본수산(주) 능력개발센터, 연수생 추천단체 산하 어선, 추천회사의 사무소·공장, 수산계 대학(가고시마대학 수산학부, 수산대학교), 수산종합연구센터(원양수산연구소, 중앙수산연구소)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나. 일본 기업에서의 외국인 어선인력 연수 프로그램

OFCF의 연수사업은 지금까지 35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독자적 연수시설이 없는 OFCF는 연수 실시 장소로서 일본어 기초와 일본의 수산개요 등을 배우는 일반연수, 재단법인 해외기술자연수협회(AOTS) 도쿄 연수센터 (TKC)에서 또한 연수의 중요한 기술을 배우는 기술연수는 추천 기업·단체의 공장, 사업소, 가입 연수센터 또는 수산계 대학, 수산연구소, 수산시험장에 등에서 각각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 연수시설 가운데 일본수산(주) 능력개발센터는 지난 25년간에 걸쳐 이용되어 온 교육시설로 어선 승무원 양성·연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총 8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개 연수과정 중에 4개 연수과정(① 승선과정, ② 육상과정, ③ 실습과정, ④ 기술 보급과정)의 기술연수시설로서 이용되고 있다.

(1) 각 단체로부터의 의뢰에 의한 연수내용

일본수산(주) 능력개발센터에서 어업단체, 민간기업, 수산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수내용은 <표 3-8>과 같다.

<표 3-8> 일본수산(주) 능력개발센터의 연수내용

연수과정	연수내용	연수기간	
아크용접	특별교육	안전교육, 용접이론, 장비취급 등	3 일
	기초강습	안전교육, 용접이론, 장비의 취급, 용접 등	3 주
	실무강습	필릿 용접, 맞대기 용접 등	3 주
가스용접		안전교육, 가스 용접 도구의 취급, 절단, 용접 등	2~5일
선반		안전교육, 선반의 구조와 취급, 계측기 취급, 바이트 연삭, 환봉심 내기, 단면, 연삭, 외경 깎기, 조각 붙이기, 테이퍼, 나사 깎기 등	2 주
선외기		선박용 엔진의 종류, 선외기 내부 구조, 선외기 설치, 제거, 트림터브의 조정, 카뷰레터, 스파크 플러그, 전기계통의 설명, 선외기 운전 등	2 주
전기		전기의 기초 지식, 테스터의 사용법, 결선도 보는 법, 릴레이 시퀀스 등	1 주
FRP 가공실시		FRP 단판 만드는 방법 설명, 젤 코트 칠하는 방법, 수지 사용 분량의 계산 강의, M, R 매트 부착 및 도장 방법 등	4 일
도장		도장 재료, 도료의 종류, 용제, 수지, 안료의 종류, 니스 도장, 목공 도장, 금속 도장, 도장 기기의 종류와 실기 등	2 주
와이어 가공		와이어의 종류, 재료 역학, 와이어 아이 스플라이스 만들기, 쇼트 스플라이스, 롱 스플라이스, 크로스 철사 가공 등	1 주
어망로프 연수		편망법, 결절망 수리, 무결절망 수리, 망 절단 계산, 망 부품 만드는 법, 모형 그물 만들기, 결삭법, 로프 가공법 등	2 주
조선 시뮬레이션 강좌		자이로컴퍼스, 자동조타 등이 내장된 기기에 따라 협수로 항법 - 우라와 수도 항로, 세토 내해 8 항로, 관문해협 항로 등 주야별 및 착안 조선 등	1 주

(2) 일본수산(주) 능력개발센터의 강사진

기능 관련 센터 강사진은 어선의 선장, 기관장 또는 갑판장, 조기장으로서 오랜 기간 승무한 경력자 중에서 선발된 사람들이다. 또한 전문분야에 관해서는 고도의 기술, 기능을 가진 전문가 집단이며, 연수생이 강사로부터 직접 꼼꼼히 가르쳐주는 실기 훈련을 받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매우 크고, 또한 생활 지도원으로서의 능력개발원 센터 소장은 연수생의 토바타(戸畑)에서의 생활면 전반을 배려하면서, 연수과정에 따라 몇 개국 연수생이 한자리에 모이는 집단 생활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연수생으로서 필요한 조건인 시간 엄수나 진정한 재미있는 수업 태도에 대해서도 지도를 하고 있다.

(3) 일본수산(주) 능력개발센터에 의한 OFCF의 연수 프로그램

일본수산(주) 능력개발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OFCF의 연수 프로그램으로는 승선과정, 육상과정, 실습과정, 기술보급과정이 있다.

다. 인도네시아 어선원 양성

인도네시아 정부에 있어서는 제6차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어업자의 자질 및 소득의 향상, 취업기회의 제공 등을 정책의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일본 원양 참치연승어업에서는 비용경감대책으로서 98%의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을 채용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인 선원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인도네시아 어선원의 확보가 일본 참치연승어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불가결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본 프로젝트는 일본 참치연승어업의 지속발전에는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고용기회 확대, 기술 전수, 그리고 조사연구 수준의 질적 향상이라고 하는 정책의도가 쌍방의 이익을 반영한 적절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훈련프로그램은 정부 관계기관 (AARD, CRIFI, RIMF), 카운터 파트 및 파견 전문가와 연계하였고, 카운터 파트 등의 일본에서 초청연수 실시에 따른 기술 전수의 촉진 등이 효과가 나타났고, 실시기관, 카운터 파트, 전문가 상호의 의사소통, 연계도 확립되어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다. 훈련프로그램은 강의형식,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실습형식, 견학을 끼워 넣은 연수가 실시되었는데, 수료생은 시간배분, 내용 등에 관하여 대체로 호의적인 평가를 하였다.

본 프로젝트의 훈련 프로그램은 9기(1기 3개월)에 걸쳐 실시되어, 471명의 훈련생을 수료시켰으며, 훈련에 불가결한 실습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훈련센터 내에 참치어선 모형시설을 활용하여, 어선원으로서 필요한 실천적인 훈련이 갑판부, 기관부마다 강의형식 및 실습형식으로 실시하였다. 동시에, 일본어선에 승무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 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훈련 참가자 대부분은 이러한 훈련내용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수료생 중 392명이 일본 어선에의 승무를 경험했거나, 현재 승무 중이고, 그 승선율은 83%라는 높은 실적을 올렸다.

제4장 어선원법 제정 등 업무 이관 방안

제1절 어선원법 제정 타당성

1. 외국인 어선원 관련 법제도 현황

가. 외국인 어선원 관련 법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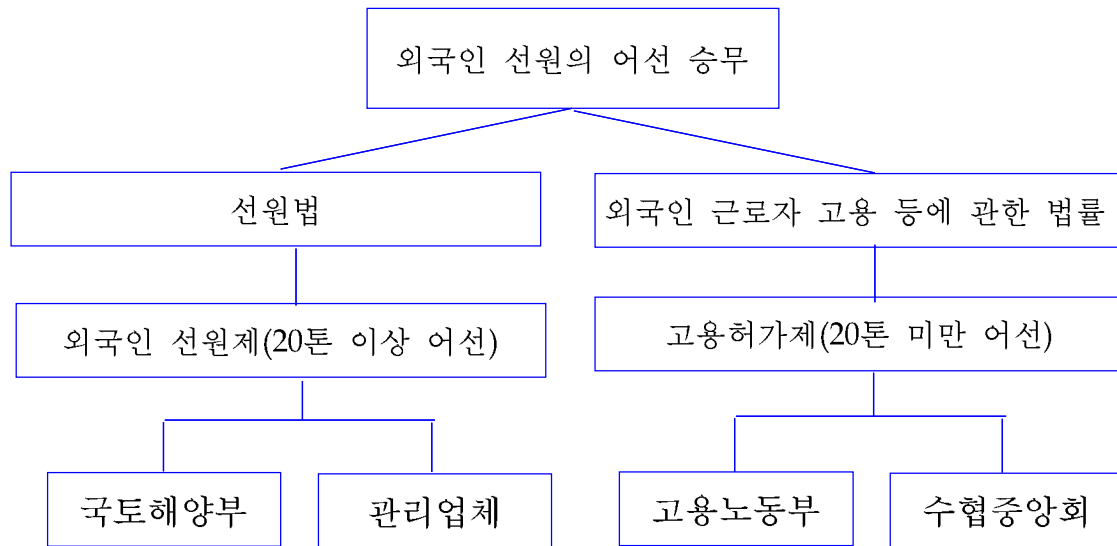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외국인 어선원 관련 법제도는 선박의 총톤수 20톤을 기준으로 「선원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구분된다. 즉 20톤 이상의 외국인 선원제와 20톤 미만의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되어 있는 특징을 가진다.

먼저 선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외국인선원제도를 살펴보면 그 대상 외국인 어선원을 20톤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의 소관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20톤 미만 어선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관리업체에 의해 위탁 운영하는 외국인선원제도와는 달리 입국 전 행정대행, 취업교육, 편의제공 등에 한해 수협중앙회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제도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겨난 제도로 산업연수생제도의 인권문제, 불법거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인원배정 및 허가를 직접 담당하는 것이다.

한편 20톤 미만의 소규모 어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선원의 고용이 더욱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제도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는 33개 대상 수협 중 겨우 10여 개의 조합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어선원으로 입국한 어선원은 2007년 422명, 2008년 1,232명으로 수협에서 이들에 대한 취업교육을 실시한 반면, 동일 기간 동안 외국인 선원제를 통해서는 2007년 1,740명, 2008년 2,233명이 입국하여, 고용허가제에 비해 두 배 이상 어선원을 수급하였다.



[그림 4-1] 외국인 선원의 고용 체계

나. 외국인 어선원 관련 법제도의 특징

외국인 어선원과 관련된 법제도는 상술한 바와 같이 크게 「선원법」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각 법에 근거한 관련제도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선원법에 의한 외국인 선원제는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외국인인력 고용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는 본래 외국인 부원에 한하여 상선 승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1992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2003년에 국제 외항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한다는 노사 합의에 따라, 시범적으로 선박 50척에 각 2명씩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하면서 정착되었다. 이러한 선원인력의 수급과 관련해서는 선원법 제104조(선원인력 수급관리)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선원의 자질향상 및 선원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에 관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선원인력의 수급이 균형을 잃어 수급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문을 거쳐 선원인력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4-1>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분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의 양성 - 선원의 외국선박에의 취업조정 또는 제한 - 선원 실습생의 승무배정 - 외국인 선원의 고용에 관한 기준* - 기타 선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이 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실제로 이 제도는 어선의 선원에 대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상선의 선원에 관한 것으로 어선으로 확대 적용에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⁷⁾을 살펴보면, 외국인 선원 고용기준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업종별로 각각의 선박소유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하되,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과 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외국과 합작투자한 외항여객선의 경우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양국 사업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선사별 고용방법과 관련하여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 단체는 선원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선원노동조합 또는 선원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작외항여객선의 경우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양국 사업자간에 합의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가 해외에서 외국의 현지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외 주재 대한민국 영사가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현지에서 고용한 외국인 선원은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까지 하선하여야 한다.

7) 이 지침은 선원법 제104조 및 동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결정, 고용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선원 수급의 안정과 관련 산업의 생산적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2003년 1월 18일(해양수산부 고시 제2003-4호)에 제정하였다. 이 고시는 2007년 8월 23일 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07-57호)되고, 2008년 5월 2일 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39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선원과 혼승하고자 하는 외국인 선원은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 안전교육, 한국어 기본 회화, 한국의 출입국 관계법령 등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 송입 업체 및 선장은 외국인 선원이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⁸⁾.

또한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소유자가 아래의 <표 4-2>의 내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정 지시, 주의 촉구, 경고 또는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표 4-2> 외국인 선원의 고용 제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경우- 선원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로 무단이탈이 빈번한 경우- 외국인 선원에 대한 선상폭행, 가혹행위 등의 인권유린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계약기간 종료, 해지 또는 파기된 선원을 즉시 귀국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선원고충상담 방해, 기타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 |
|--|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 허가제이다. 이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여기서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 적용범위를 보면, 법 제3조 단서조항에 의해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본 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본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20톤 미만의 어선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6조(내국

8) 입국 전 교육 : 자국 교육기관에서 3일 이상

입국 후 교육 : 국내 선원교육기관에서 3일 이내의 교육 이수(선박운항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책임 하에 선상교육으로 대체)

제4장 어선원법 제정 등 업무 이관 방안

인 구인노력)의 규정에 의해 내국인 구인노력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에 불구하고 인력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⁹⁾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구인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이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매번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동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는 동법 제22조(차별금지) 조항¹⁰⁾에 의해 그 지위를 보호 받을 수 있다. 즉 외국인이라는 것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표 4-3>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 휴업·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9조 제1항 또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9)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위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게 대하여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한다. 또한 동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된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선정된 외국인근로자 성명 등을 기재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단,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그 밖의 채용에 불개입을 원칙으로 한다.

10)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

2. 외국인 어선원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가. 고용관련법의 이원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20톤 미만의 선원법 미적용 선박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선원법에 의한 외국인 선원 고용과 이원화 되어 있다. 따라서 수산업 내는 물론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종사하는 선박의 규모에 따라 다른 법을 적용받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원화를 통한 업무조정이 필요하지만 외국인 선원제도로 일원화 될 경우 영세한 20톤 미만의 선주의무가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감독기관 및 법적용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 어선원의 적기 공급이 어렵고 이탈이 많음

현재 외국인 선원고용신청에서 입국까지 고용절차는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최대 100일 전 후가 소요되기도 한다. 따라서 고용주가 원하는 시기에 어선원을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선발방식이 한국어 시험 40점 이상 평균 60점으로 단순하여 노동 강도가 낮은 다른 직종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수 단위로 입국을 하기 때문에 어선원 수요에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한때,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여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사전취업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일회성으로 그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다. 사후관리 시스템 미비

외국인 어선원의 고용 및 기타 어려움에 대해 20톤 이상 어선의 경우 국토해양부에 지정된 선원관리업체에서 관리함에 따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는 사전·사후 관리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선원법 하의 어선원제도의 장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어선원을 구인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만 관리를 하지 않는다. 이는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29개 관리업체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제도와는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는 별도의 관리업체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각종 비리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외국인 어선원이 고용업체에 의해 사후관리 된다는 점에서 고용허가제는 사후관리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라. 선주 보호 장치 미비

어선어업은 조업 시 각 어선원의 역할이 확연히 구분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필요 어선원이 모두 승선해야 조업활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고용한 외국인 어선원이 이탈하거나 도주할 경우 선주의 입장에서는 조업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선주의 손실은 고스라니 선주가 책임져야 한다. 또한 고용주의 귀책사유 없는 이탈이더라도 1년간 이탈 인원에 대한 신규고용이 제한되고 있어 고용주의 보호기능이 미약한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마. 참여도 저조 및 회원조합의 업무기피

현재 고용허가제도는 33개 조합의 업무를 수협중앙회에서 대행해 주고 있으나 업무대행에 따른 경제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실제 업무대행조합은 10여 개 내외의 조합에 불과하다.

또한 회원 조합의 고용허가제에 대한 업무 참여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선 수협의 업무가 과중한데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의 특성상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에 따른 수수료가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제2절 업무 이관 방안

1. 어선원 업무 이관(고용 관련법 이원화에서 일원화)

가. 어선원 관련 제도의 일원화

현재 어선원 관련 제도는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20톤 이상은 선원법, 20톤 미만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20톤 미만의 외국인 어선원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들이 적용이 되지만 20톤 이상의 외국인 어선원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선원법 적용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어선원들 간에도 종사하는 어선의 톤수에 따라 다른 법 적용을 받고 있어 서로 간에 위화감 등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 어선원 중 선원법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어선원은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선원관리업체에서 애로사항을 상당부분 해결해 주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고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어선원들은 선주들이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선원관리업체에 의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 어선원에 비해 그 지위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적어도 외국인 어선원만이라도 20톤 이상과 20톤 미만의 적용 대상 규정을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 하여 선원관리업체가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외국인 어선원 경험자 중심 선발 제도 마련

최근의 연구(농림수산식품부, 어선원 고용실태와 제도개선방안, 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안어업 선주들은 외국인 어선원을 고용해본 경험은 많지 않았지만 외국인 어선원의 고용 또는 고용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이의 배경은 어선원의 구인난이 그만큼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11) 연안어업 선주의 80% 이상이 외국인 어선원을 고용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주의 67.9%가 어선원 고용 또는 고용확대를 희망하고 있음

러한 어선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연안어업에 대한 외국인 어선원의 인력배정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어선원의 업무는 타 업종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고, 원활한 공동작업 및 개인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어선원이 고용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험이 없는 경우는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어선원의 선발 시 처음부터 어선원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행해진다면 더욱 효과적인 제도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연계 시스템 마련

최근 연안어업에서 외국인 어선원을 고용하는 선주들은 경영악화로 인해 조업일수를 줄인다든지 또는 금어기, 어한기 등에는 어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을 연간 장기적으로 조업을 시킬 경우 선주입장에서는 적자경영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가지게 되는 한편, 장기적으로 조업을 시키지 못할 경우 외국인 고용자의 고용안정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어선원들이 업종별로 휴어 시에 타 업종으로 연계해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어선원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개선

어선원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어선원 공급 문제를 선원과 어선원이라는 양분된 시각으로 접근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관리의 일관성, 제도 적용 대상 사이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위화감 조성 등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동시에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선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선원법은 주무부서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선원법이 포함하고 있는 사항 중 일반 선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어선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원법이 일반 선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선원의 복지 등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곤란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체계를 일원화 한다든지 또는 법률의 적용 대상 확대개정 또는 주무장관의 병렬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습지보전법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동시에 주무 장관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선원법의 개정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 선원법 개정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어선원 정책을 수립, 추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 어선원이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선원법 제2조(적용범위) 제1항의 제3호를 “총 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 단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추진코자 할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개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선원법의 개정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에 대한 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선원 수급 정책이라든지 고용보험, 어선원 자녀 장학사업과 같은 주요 정책을 추진함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즉, 정책에 따라서는 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타 법령의 관련 조항에 대해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는 어선원과 관련된 주요 추진 정책을 선원법 및 기타 법령의 개정을 통한 추진 근거를 정리한 것이다.

<표 4-4> 어선원 관련 주요 정책별 추진 근거

구 분	추진 근거	비 고
어선원 수급정책	선원법 제104조(선원인력수급관리) 제1항	
어선원의 직업알선과 재교육	근로기준법에서 유사 조항이 없고 고용정책기본법 제4조(국가의 시책)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시행이 가능 고용정책 기본법 제4조(국가의 시책) 제1항 제2호에 의	직업알선 기관의 설립

제4장 어선원법 제정 등 업무 이관 방안

	거하여 시행이 가능	어선원의 재교육
어선원의 관리	선원법 제99조(선원의 직업안정 업무) 제1조 제2호에 의거하여 추진이 가능	어선원에 대한 DB화 등
어선원 전업대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농업인 등의 전업대책) 제2항에 의거하여 추진 가능	
어선원 지역복지센터 건립	선원법 122조의 3(사업)에 의거하여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음	
장학사업	상동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대해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4조(국가의 시책) 제1항 제7호 및 동 법 제28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 제1항 제2호에 의한 사업의 대상이 됨	

2. 어선원 관리 방안

가. 어선원 수급 및 교육정책

지난 20여 년간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어자원의 감소, 기후변화, 어선감척사업 등의 구조조정, 어장 축소 등인데, 이로 인해 수산업은 매우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특히 노동 강도가 센 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업의 어선원 구인이 어려운 실정이며, 어선어업의 경영 불안정은 어선원의 고용상태 불안정을 확대시키고 있다.

최근의 연구(KMI, 어선원 수급안정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 2007)에 따르면 20톤 이상의 어선원 취업자 수는 최근 15년간 연평균 5.6%씩 감소하였으며, 2015년 16만 명, 2020년에는 14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어선원의 구인난과 관련한 조사에 의하면 어선 선주들의 다수¹²⁾가 어선원이 부족하다고 답해 어선원 일자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선원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12)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원 고용실태와 제도개선방안, 2008에 의하면 20톤 미만 어선 선주들의 74.3%가 어선원이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히 20톤 미만 어선원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아래의 시업들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선원 수급정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수립할 필요가 있는 20톤 미만 어선원에 관한 정책은 연안어선·어업에 대한 직업알선 체제 구축, 연안어선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의 재교육 체제 구축, 어선원 수급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어선원 자격증 및 인력관리 통계 DB화, 전업대책마련 등이다.

상기 제시된 20톤 미만 어선원에 관한 정책과 관련한 세부 추진방안을 간단히 표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5> 20톤 미만 어선 승선 어선원에 대한 정부 정책과 추진 방안

구분	추진 방안
직업 알선 체제	- 수산사무소나 또는 특수한 법인을 설립하여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체제의 구축
어선원에 대한 재교육 체제	- 소형어선에 승무할 자의 최저 기준 설정 - 주기적인 일정 교육과정 신설
어선원 수급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 20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 별도 『어선원 수급정책 중장기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
어선원의 관리	- 어선원 정보에 대한 DB화
전업대책 마련	- 일반감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주보상에 상응한 실업급여의 지급 등 어선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톤 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에 대한 직업 알선 체제 구축은 현행 선원법상 총톤수 20톤 미만 및 연안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의 구인·구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곳은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현재 선원의 구인·구직 역할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이들의 구인·구직은 상선 및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한정되어 있어 20톤 미만 및 연안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구인·구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직업소개소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적시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시기를 놓쳐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수산사무소나 또는 특수한 법인을 설립하여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둘째, 20톤 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에 대한 재교육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선박직원법상 해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또는 사설학원에서 관련과목을 이수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는 일정기간 승무경력을 갖춘 일반 선원이 해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 주로 사설 학원을 이용하며, 합격 후에는 해기사로의 직무수행을 위한 훈련기관의 지정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선원법이나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형선박에 승무하는 자의 보수교육 내지 재교육의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형어선에 승무할 자의 최저 기준 설정과 더불어 일정한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소형어선의 안전사고를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어선원 수급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이다. 20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 별도로 『어선원 수급정책 중장기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소형어선의 인력감소 문제에 대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할 때는 연안 및 근해어업 업종별로 어업의 전망, 자원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업종별 선주 대표와 전문 연구기관 담당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어선원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연근해 소형어선에 근무하는 어선원에 대한 정보화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통계를 DB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선원 정보에 대한 DB화는 연근해 어선원 중에는 선금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업대책 마련으로, 현재 연근해어업은 감척으로 인해 어선원들은 전업 및 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적극적인 전업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감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주보상에 상응한 실업급여의 지급 등 어선원 지원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어선원 복지정책

현재까지 선원들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한국선원복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지고용센터를 통해서 전개되어 왔으며, 특히 선원 유가족 장학금 지급, 장기승선 선원에 대한 휴양시설 제공, 무료법률서비스 등을 수행하여 선원의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여왔다.

그러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대상은 선원법의 대상을 받는 20톤 이상의 어선원에 국한되어 있어 20톤 미만의 어선원은 동 센터에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20톤 미만의 어선원을 위해 한국선원 복지고용센터와 유사한 형태의 가칭 '어선원 복지센터'의 운영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복지혜택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영상태가 열악한 20톤 미만의 선주들은 외국인 어선원의 휴식공간 및 주거공간 마련에 애로를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의 연구에서 조사된 설문조사는 현재 필요한 복지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었으면 하는 사업이 어선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임을 알려주고 있다¹³⁾.

실제적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20톤 미만 어선원의 경우에는 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장학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장학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해당 어선수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근로자들이 신청해서 어선원이 그 수혜를 받기 힘들다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어선원 고용안정보험 또는 실업급여 등도 풀어야할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0톤 미만 어선원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 정책은 어선원지역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어선원 자녀 장학사업 그리고 어선원 고용안정보험 또는 실업급여 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는 각 정책별 세부 추진방안을 정리하였다.

13) 어선원 수급안정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2007년)의 설문조사 결과 어선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정책으로서 52%가 자녀에 대한 장학혜택이라고 응답

제4장 어선원법 제정 등 업무 이관 방안

<표 4-6> 20톤 미만 어선 승선 어선원에 대한 복지정책과 추진 방안

구분	세부 추진 방안
'어선원지역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발전기금의 경상사업 항목에 '어선원복지시설 지원사업(가칭)'을 추가하여 재원을 마련 - 20톤 미만 어선은 전국 연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동서남해 주요 양륙지를 중심으로 각각 3개소, 제주지역 1개소 등 중장기적으로 10여 개의 복지센터를 건립 - 수면실, 목욕탕(찜질방), PC방 등 휴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 수준의 주거공간을 마련
어선원 유가족을 위한 장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원 유가족의 경우에 한정해서 근로복지공단 장학사업에 신청하였으나 그 수혜를 입지 못한 경우 우선순위를 두고 선발하여 농수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서 장학사업을 실시 - 일반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장기장학금의 형태로 지급
어선원 고용안정보험 또는 실업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인 지원 법률이나 근거를 마련 - 체계적인 지원

이들 정책과 세부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어선원지역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내외 어선원에게 휴식공간 및 일정수준의 주거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재원의 마련은 수산발전기금의 경상사업 항목에 '어선원복지시설 지원사업(가칭)'을 추가하여 추진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톤 미만 어선은 전국 연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동서남해 주요 양륙지를 중심으로 각각 3개소, 제주지역 1개소 등 중장기적으로 10여 개의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어선원지역복지센터'에는 수면실, 목욕탕(찜질방), PC방 등 휴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 수준의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영세한 선주와 어선원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이미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어선원 유가족을 위한 장학사업이다. 이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어선원 유가족을 위한 장학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중복수혜의 문제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의 장학사업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어선원 유가족의 경우에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한정해서 근로복지공단 장학사업에 신청하였으나 그 수혜를 입지 못한 경우 우선순위를 두고 선발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 지원사업으로 장학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장학금의 종류는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에서 적용하는 일반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장기장학금의 형태를 차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선원 고용안정보험 또는 실업급여로서 현재 선원법의 적용도 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어선원은 고용안정보험이나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수산분야의 유능하고 능력 있는 수산전문인력의 유입을 장려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직업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을 선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가입을 강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지원 법률이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5장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방안

제1절 국제어업교육원 설립과 법적 근거

1. 국제어업교육원의 설립 형태

가. 공단

일반적으로 공단은 경제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전액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기업을 말하며, 공단은 정부의 전액출자에 의하여 설립되며, 전액출자라는 점에서는 공사(公社)와 같다.

그러나 공사가 경제적 급부의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따라서 공공적인 경제수요를 충족시키는 것과는 달리, 공단은 본래 국가의 행정기관이면서도 법인화된 행정기관이며, 행정의 능률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물자의 집하(集荷)·매매, 토목시설의 건설·대여 등의 기업적 기능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가와는 별도로 독립법인체를 설립하고, 경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공사

공사는 한국에는 한국전력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 등 공사형태의 공공기업체가 많다. 공사는 자본금 전액을 국가가 출자하고, 이사회 또는 경영위원회 등의 경영 관리기관을 두고 있으나 일반법인의 총회에 해당되는 기관은 없다. 재무적으로는 독립채산제이나, 예산·결산은 국가의 예산·결산에 준하며, 따라서 이 측면에서의 자주성은 낮다.

일반적으로 공사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 특별한 법령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된다.
-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다.

- 독립된 재산을 가진다.
- 독립 재산제에 의한 운영이 실시된다
- 직원의 임면(任免)·처우(處遇) 등 독립적인 인사권을 가진다.
- 경영위원회·이사회 등 독립된 경영기관이 있어 이 기관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경영기관의 임면, 중요재산의 처분 등,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은 국가가 행한다.

다. 공공기업체

공공기업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고 경영하는 공공을 위한 기업체를 말하며, 공법상(公法上) 법인 및 특수법인으로 독립되어 있다. 20세기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독립재산제를 취하는 근대적인 형태는 1826년 영국 BBC와 중앙전기국에서 비롯되었다.

오늘날 공기업을 자율적인 경제적 사업체로 독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 공사(公社)의 의미를 갖는 공공기업체 형태로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의 한국조폐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통신·대한석탄공사 등 각종 공사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이 이에 속한다. 이들 공공기업체는 넓은 의미에서 국가행정조직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의 자본권위와 사기업(私企業)의 독립성·탄력성이 동시에 요구된다.

라. 공기업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이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을 말하며, 출자와 관리·지배에 의하여 공공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특별한 조직방식에 의해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지닌 국가경영사업체를 의미한다. 자유주의 경제하에서 계획경제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경제계에 대한 국가권력의 깊은 관여·통제의 한 수단으로 등장한 새로운 행정기관의 하나이다.

그 특질은 현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보강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성이 현저한 기업에 출자하여 그 경제기능을 다른 사업과 협

조하여 운영시키며 이에 의하여 경제 질서를 행정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사기업의 경영 원칙에 의한 사적 경제조직의 요원으로 기능을 발휘한다. 공기업의 발달 원인으로서는 현대국가에서 민간자본 부족, 국방상·전략상 고려,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적 요구, 그리고 정치적·실제적 동기들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그 설치와 임무는 법률로 규정되며 그 경영은 의회 통제하에 있게 되지만, 일정한 범위 안에서 기업체의 자주성이 인정되고 사기업의 경영 원칙에 의하여 운영된다. 그러나 직원의 노동쟁의 행위는 금지되고 단결권이 나 단체교섭권도 극히 한정되어 있어 행정통제가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

한국 공기업을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조직형태에 의한 분류방법으로 나누어 보면 정부기업과 정부투자기관 2가지가 있다. 정부기업에는 철도사업·통신사업·전매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국민생명 및 우편연금 등이 있고, 정부투자기관에는 자본금 50%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투자기관, 귀속재산 50% 이상이 정부에 속하는 기업체로, 예컨대 한국은행 등이 있다.

마. 국제어업교육원의 설립 형태

교육원은 재정경제상, 경영관리 및 운용상의 이유에 따라 어선원의 양성과 국제어업교류 등의 공익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립되는 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한다. 특수법인은 정부 및 지방 공공단체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하듯이 국제어업교육원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서 해기사 양성과 국제어업교류라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 및 지방 공공단체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해야 한다.

물론 국제어업교육원은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최고경영진과 임원의 선임 및 임명, 사업계획의 보고 및 승인, 결산보고 등을 정부 내 주무부서의 특별관리하에 실행하도록 한다.

2. 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률의 검토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

1) 목적과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규칙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설립허가의 신청과 설립허가

이 규칙에 의하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 정관 1부
-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그리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 할 것,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제4조).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 설립허가의 취소와 해산신고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내용을 기재

한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사단법인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1부
-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회의 회의록 1부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 목적과 적용범위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또한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립허가 기준(제4조)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임원 등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으며,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4) 이사회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함 그리고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회가 심의 결정하는 사항은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다.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 재산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법제의 정비

선원 재교육기관으로서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정부 출현 사단법인으로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을 가지고 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 수산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동법은 제2조에서 법인격을 정하고 제3조에서는 설립등기 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연수원이 수행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직원의 임면(제8조), 운영재원(제9조), 보조금(제10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제11조) 등 15개 조문을 가지고 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정부의 대항 사업을 위하여 정부 출현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 해양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해기사 시험의 관리 등을 주된 사무로 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을 가진 법인이다.

국제어업교육원은 수산인력 특히, 어선해기사 양성과 관련한 교육·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와 국제어업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정부 및 지방 공공단체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할 수 밖에 없고, 최고경영진과 임원의 선임 및 임명, 사업계획의 보고 및 승인, 결산보고 등을 정부 내 주무부서의 특별관리 하에 실행되는 형태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어업교육원은 내국인 해기사 양성과 외국인 어선원 교육, 국제어업협력, 외국인 어선원 및 외국인 어선원 사용자 관리 등의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국내 해기사 양성교육은 선박직원법을 위시하여 STCW-F협약의 적용을 받고, 외국인

어선원 교육은 선원법, 외국인 어선원고용에 관한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등의 적용을 받으며, 국제읍서버교육 등은 여러 국제수산기구의 관련 규정들을 적용받는다. 이는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어떤 법에 근거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기 곤란하다.

그러므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과 같이 국제어업교육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라. 국제어업교육원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어업교육원(이하 "교육원"라 한다)을 설립하여 원양어업, 연근해어업 기타 수산업에 관한 기술훈련 및 이에 관한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 교육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① 교육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 (임원) ① 교육원에 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임원의 자격·선임·임기·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원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사업) 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
2. 어선에 승무하는 해기사의 양성 및 훈련
3. 수산기술 훈련에 관한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
4.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직원의 임면) 교육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제7조 (보조금) 정부는 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국유재산의 대부등) ① 정부는 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 재산을 교육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교육원이 아닌 자는 국제어업교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교육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교육원은 매년 4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그 분기 종료 후 30일내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익연도 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엄수의 의무) 교육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 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민법의 준용)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벌칙) ①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과태료) ① 제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마. 정관(예)

제1장 총 칙

제5장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방안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국제어업교육원(International Fisheries Education Institute) 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00시 0구 00동 000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국제어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내국인 및 외국인의 국내 종사 수산인력의 교육·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
2. 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3. 제2호 외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5.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방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의결권행사 제한)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해당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0조(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① 원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즉각적인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 수정,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참여) 이사 및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의사록) ① 교육원의 의사담당부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의사담당부서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은 2부를 작성하여 정본은 비치용으로 보관하고 부본은 위원장이 따로 지정하는 곳에 보관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을 적용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정관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이사회

제15조(이사회 설치와 기능) ① 교육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6.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7.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8. 정관의 변경
9. 내규의 제정과 변경
10. 임원 및 직원의 보수
11.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12. 법령, 기타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된 사항
13.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구성) ① 이사회는 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원장이 된다.

제17조(회의) ① 이사회 회의는 원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 회의의 안전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원장이나 이사는 그 안전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2항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해임 요청 등) ① 이사회는 원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원장을 해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및 직원

제19조(임원) ① 교육원에 임원으로 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③ 상임이사의 정수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한다.

④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임명) ① 원장은 제22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는 원장이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1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 ④ 제2항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원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⑥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교육원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 제23조에 따른 원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3조(원장과의 계약 등) ① 원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원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원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된 계약안에 따라 원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안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원장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상임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교육원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상임이사는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③ 원장은 교육원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원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교육원을 대표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비상임이사, 선임자,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제5장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방안

⑥ 감사는 교육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⑦ 원장은 감사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임원의 보수기준) ① 교육원 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1. 원장 : 교육원의 경영성과와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이행 수준
2. 상임이사 : 교육원의 경영성과와 제23조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3. 감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② 비상임이사의 보수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임요청 등)제1항,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제6항,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제2항·제3항, 제36조(비상임이사과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제2항 및 제48조(경영실적 평가)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7조(직원의 선임) 교육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제28조(별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교육원의 임직원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재산) ① 교육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② 기본재산은 교육원이 현재 취득하고 있거나 취득할 재산 및 권리 등으로 구성한다.

③ 보통재산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구성하며 교육원의 사업 및 운영경비에 충당한다.

1. 가입금 및 분담금

2. 후원금

3. 위탁 및 용역사업수입금

4. 기타 사업수익금

④ 제1항 내지 3항에서 규정한 재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⑤ 교육원의 재산 중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매회계년도 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본 자산으로 운용한다.

제30조(특별회계) ① 정부 및 관련 기관, 단체의 위탁사업비 또는 연구용역사업비 등 본 법인의 자체수입 이외의 수입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출연자 등이 자금의 용도, 자금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를 준수하여 집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1조(예산의 편성과 결산) ①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법인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지결산서, 대차대조표, 감사의견서, 잉여금처분 계산서 등을 갖추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시행규정) 본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3조(정관의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 자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절 국제어업교육원의 목적과 사업 및 조직

1. 설립의 목적

국제어업교육원은 내국인 및 외국인의 국내 종사 수산인력의 교육·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은 물론, 국제어업교류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의 종류

국제어업교육원은 국내어선원 수급 안정과 국제어업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
- 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제2호 외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조직

국제어업교육원은 이사회와 원장 및 교육연구부, 항해훈련부, 국제협력부, 경영지원부 등 4개의 부로 구성할 수 있다.

먼저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회가 심의 결정하는 사항은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관한 사항,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다.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의 운영을 총괄한다.

그리고 4개의 부 중에서 교육훈련부는 주요업무는 선박의 운항, 선박의 기관, 해상통신, 선박의 안전, 연구 및 정책수립 등의 해양수산 관련 전반적 연구지원 활동을 하는 부서로서 산하에 교육지원팀, 운항교육팀, 기관교육팀을 둔다.

교육지원팀은 안전 및 직무교육과정, 자격취득교육과정, 전문수탁교육과정 등의 교육과정 운영과 종합민원실 및 전자도서관을 운영 관리하는 교육행정업무 지원업무와 고객만족도 향상 및 편의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홍보, 교육안내 책자 제작/배포 및 신규과정 개설 안내, 교육교재 수급 판매 및 교육시간표 작성 관리, 교육과정 개설 운영, 사이버교육 및 전자도서관 운영, 교육기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운항교육팀은 해기사 양성과 관련한 선박의 항해·통신 및 수산(어업)분야 교육훈련을 수행한다.

기관교육팀은 선박의 기관부분 전공(기관, 열유체, 부식, 전기 등)부문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며, 교원은 선박 기관분야의 교육 개발과 훈련 및 각종 연구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행정팀원은 교육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항해훈련부는 해양수산 종사자의 현장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습선 운영 등 현장 실습을 담당하며, 양성교육팀과 선박운항팀으로 조직한다.

양성교육팀은 실습선에 승선하여 행하는 교육과 훈련 및 실습을 담당한다.

선박운항팀은 승선실습, 해양체험 교육프로그램운영, 실습선의 운항과 수리, 개조 및 선용품 수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인 사무로는 실습선 운항계획의 수립, 시행, 실습선 수리, 정비, 신조 및 개조업무, 각종 선용품 수급, 용역선원 관리, 실습선 검사 및 제증서 관리, 소관예산의 편성, 집행 등을 행한다.

국제협력부는 국제협력부와 외국인 어선원관리팀으로 구성한다.

국제협력부는 교육원이 수행할 국제업무를 담당하며, 교육과정·품질의 국제인증, 국제협약 관련 교육 연구, 외국현황 분석 등 교육과정 개발, 외국인연수(KOICA 교육포함)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리, 외국인연수(KOICA 교육포함)교육 등 소관 분야 교재 편찬, 소관 분야 해기품질관리·고객만족도 조사 및 경영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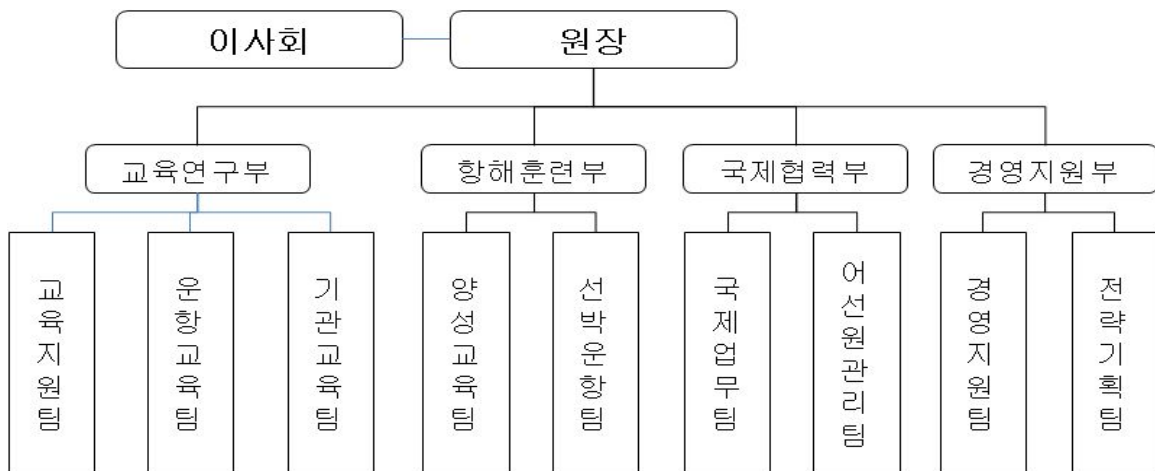
가 대응, 기타 국제협력부 내 타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수행한다.

외국인 어선원관리팀은 외국인 어선원 및 외국인어선원 사용자의 교육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경영지원부는 경영지원팀과 전략기획팀으로 구성한다.

경영지원팀은 교육원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조직·정원·예산관리,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관 발전전략 수립, 사업 예산 확보, 편성 및 관리, 대정부 및 대국회 업무, 이사회 운영, 규정 및 제도 개선, 경영평가, 성과관리 및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경영혁신 업무 등을 수행한다.

경영지원팀은 교육환경과 조직 활성화를 통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직원의 임용, 복무, 복지후생, 급여 기타 인사업무, 보안 및 직인관리, 문서의 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팀별 예산집행 관리, 직원교육 업무, 전산시설 및 시스템 관리운영, 시설관리 및 청사관리업무, 교육원 예산 총괄집행 및 관리 등을 수행한다.



[그림 5-1] 국제어업교육원 조직도

4. 소요 인원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초기의 인원은 법인 조직별로 최소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교육훈련부의 경우에는 주로 해기사 양성과 관련한 교육계획의 수립, 해기사 양성을 위한 갑판 및 기관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각 팀별로 최소한 교수요원 2인, 교육준비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지원, 각종 실습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직원을 각 팀별로 2명씩 배치한다.

항해훈련부의 경우에는 실습선에서 승선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갑판과 기관부문을 담당할 교수 각 1명과 선박운항과 선내생활 및 선내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과 기관장을 교수요원으로 하며, 750톤급 실습선의 법정 승무정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선박건조 초기에는 선박운항과 관련한 선원을 최소화하며, 총 15명 이내로 한다.

그리고, 국제업무팀, 어선원관리팀, 경영지원팀, 전략기획팀은 굳이 교수요원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원행정요원으로 하며, 최소 한 개의 팀이 될 수 있도록 3명씩 배치한다.

끝으로 국제어업교육원은 원장을 비롯하여 청소, 관리, 경비 등의 인원도 갖추어야 하므로 최소한도의 인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며, 초기에는 5인 이하로 한다.

<표 5-1> 국제어업교육원 소요 인원

구분	교육 지원팀	운항 교육팀	기관 교육팀	양성 교육팀	선박 운항팀	국제 업무팀	어선원 관리팀	경영 지원팀	전략 기획팀	기타(원장 관리원)	계
교수	2	2	2	2	2						10
행정직원	2	2	2	2	15	3	3	3	3	5	40
계	4	4	4	4	17	3	3	3	3	5	50

제3절 국제어업교육원 적정입지 및 필요시설 검토

1. 적정입지 검토

가. 국제어업교육원 입지 조건

1) 법적 요건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어선원 양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은 STCW-F 협약에서 요구하는 최소요구 해기지식을 교육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STCW 협약을 위시한 STCW-F협약에 의한 해기품질은 해기사로서의 기본지식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조우할 수 있는 상황 등을 신속하고 숙련된 기술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해기품질 평가는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등 교육 환경과 교원의 능력 및 제도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해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어업교육원은 국내어선 해기사 양성(고교생 종합승선과정과 신규 해기사 양성과정)과 국제어업교류사업(외국인 연수생교육과 외국인 선원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STCW/STCW-F협약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해기사 면허는 선박직원법에서 실내 이론교육 6개월 이상, 승선실습 1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습선 운영이 필수적이고, 실습선을 이용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어업교육원의 위치는 가능한 한 바다에 연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습선의 크기가 총톤수 750톤 정도이기 때문에 접안상의 문제와 승선의 문제가 동시에 갖추어진 곳에 연접해야 한다.

2) 물리적요건

국제어업교육원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리를 잘 모르는 외국인 어선원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무엇보다도 교통 접근성이 양호해야 하며, 해양(어항 등)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지리적 인지도와 관련시설의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교육·행정 등의 지원이 용이하여야 한다.

먼저 교통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신규 해기사 양성과정의 교육생과 고등학생이 주류인 내국인 교육생은 주로 자가 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 특히 KTX, 버스, 항공기를 많이 이용할 것이며, 외국인 교육생은 주관기관에서 버스를 많이 이용할 것이 예상되나, 내외국 교육생들이 개별적으로 국제어업교육원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KTX역 또는 버스 정류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편리할 것이다. 국제어업교육원이 외국인 취업 어선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외국인 취업 어선원이 국제어업교육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이는 한국지리에 밝지 않은 외국인이 적은 비용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해양(어항 등)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이 취업 선사 또는 승무할 선박이 많은 곳에 국제어업교육원이 위치하는 경우, 이동의 편리성은 물론, 이동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리도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이론교육과 승선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교육의 특성상 해양 등의 접근성이 없는 경우, 교육원에서 실습선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결국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해양(어항 등) 접근성이 좋을 경우,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이 국제어업교육원을 방문하거나 또는 이용함에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로, 국제어업교육원이 설치되는 장소는 지리적 인지도가 있어야 한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한국의 언어와 지리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 개인적으로 국제어업교육원을 찾아올 때, 지리적 인지도가 없는 위치에 국제어업교육원이 있는 경우, 국제어업교육원을 찾아오기가 힘들 것이다.

넷째로, 관련시설의 인프라가 양호해야 한다. 해기사 양성과정은 다양한 교육시설이 필요하나,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초기에 이들 시설을 모두 갖추기는 매우 힘들 것이기 때문에, 관련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시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국제어업교육원 주변에 해기사 양성과 관련한 시설이 많을수록 국제어업교육원 운영이 용이할 것이다. 또한 기관 해기사 양성과정은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나 선박기계를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나, 필요 시설이 없는 경우에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해 질 수 있음. 결국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나 선박기계를 알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선박, 공장, 연구시설 등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어업교육원은 이들 시설이 많은 곳이어야 한다.

다섯째로, 교육·행정 등의 지원 용이성이 있어야 한다. 해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다양해야 하고, 이를 교수할 인력 또한 많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어업교육원에서 필요로 하는 교수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산계 대학 교수 등을 활용하여야 하나, 수산계 대학과 너무 먼 거리에 위치할 경우에는 교수요원 확보가 곤란할 수 있다. 국제어업교육원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출입국과 관련한 기관, 외국인 어선원 관리 주무 부서, 해기사면

허 관리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나, 이들 기관과 먼 거리에 국제어업교육원이 위치하는 경우, 행정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나. 후보지 실태조사

1) 부산시

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내

1. 소유자	국(농림수산물부)
2. 소재지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620-2번지일원(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내)
3. 면적(m ²)	64,000
4. 지목	대
5. 공시지가(원/m ²)	192,000
6. 매입예정가격	2,880백만원
7. 매입가격산출근거	15,000m ² × 192,000원 = 2,880,000,000원

○ 지리적 위치

- 추천장소가 위치한 암남동은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서구에 속하며 부산의 기존도심과 서부지역 및 사상부도심을 연결하는 부산광역시 남서측에 입지하고 도심반경 1.0~5.5km에 위치하며, 감천항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 조성의 영역내에 속해 있음

○ 이용상황

- 동 부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으로 축산물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2010년 농림수산물부와 부산광역시간의 이전협약으로 이전절차 이행 중에 있음.

○ 주위환경

- 동 지역 주변은 해양 선진국 실현을 위한 거점 기지로 21C 신해양시대에 동북아 최대의 수산물류 무역 중심기능 선점 확보를 위하여 감천항 “국제 수산물류·무역기지”를 건설중임
- 또한 원양선의 주요 이용거점항인 원양어업전용부두와 근접 2km에 근해어선의 주요 거점항인 남항이 위치하고 있음

○추천배경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 국가계획인 남해안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조성 3단계 사업으로 활용코자 마스트플랜 용역 계획 중
- 주변은 원양 및 근해어선의 주요 거점항이며 관련시설이 완벽히 구축되어 있어 교육생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과 감천항을 이용한 현장실습 및 실습선 정박이 용이하고 부지 소유자가 국(농식품부)으로 부지확보 및 건립에 따른 문제가 없는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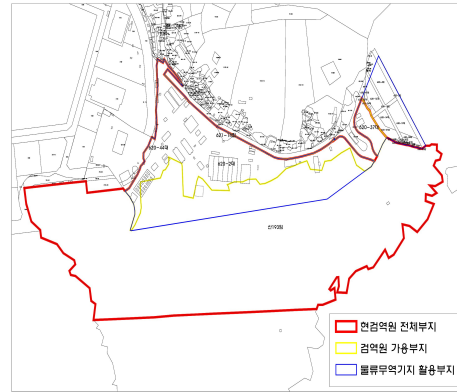
○장점

- 동 부지는 국유지(농림수산식품부)로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어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고 감천항까지 도로로 이동 가능하여 실습선 승선 등에 용이

○단점

- 부지 활용에 대한 선 순위 조정 필요, 검역원 이전 이후 건립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의 부지활용 현황도



[그림 5-2] 부산시가 추천한 후보지(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경

나)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부지

조사항목	조사내용
1. 소유자	국(교육과학기술부)(부경대학교)
2.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295번지(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내)
3. 면적(m ²)	67,320
4. 지목	대
5. 공시지가(원/m ²)	360,000
6. 매입예정가격	5,400백만원
7. 매입가격산출근거	15,000m ² × 360,000원 = 5,400,000,000원

제5장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방안

- 지리적 위치
 - 남쪽과 동쪽은 대한해협에 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남도 양산시와 접해 있으며, 부산광역시의 도심으로 부터 동북측 으로 약 25km 외곽에 위치하고 있음
- 이용상황
 - 동 부지와 관련한 부경대학교의 발전계획에 의하면 수산해양환경 연구분야 특성화를 위한 중심기지로써 본 부지 사용을 계획함
- 주위환경
 - 부산광역시의 동부권에 위치하고 있는 동지역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주변에 해양산업의 복합적 특화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대변항 다기능어항을 조성중임
- 추천배경
 - 동 부지내에 2005APEC 누리마루 하우스로 제공된 해운대 동백섬 소재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가 이전 건립되어 있어 연구소와 연계한 교수인력, 장비 활용 등으로 교육효과 배가, 인근에 위치한 국가어항인 대변항을 이용한 복합어로실습선의 접안이 용이 및 실습활용 최적
- 장점
 - 시설물 건립에 필요한 제반 법적절차(도시계획시설 결정 등)가 수립되어 있음
- 단점
 - 대학교의 부지 활용계획 및 내용 전면 수정



[그림 5-3] 부산시가 추천한 후보지(수산과학연구소) 전경

2) 전라남도

가) 고흥 녹동 신항 배후지

조사항목	녹동신항 배후부지
1. 소유자 (추천기관)	농림수산식품부 (고흥군)
2. 소재지	고흥군 도양읍 봉암 3909
3. 면적(m ²)	157,223
4. 지 목	잡종지
5. 공시지가(원/m ²)	11,600원
6. 매입예정가격(백만원)	국유지
7. 매입가격산출근거	

○ 지리적 위치

- 읍소재지이며 인근에 국가어항인 녹동항이 있고 3선석부두(여객선, 화물, 모래부두)의 항만시설 지역으로 선박 접안이 용이 할뿐 아니라 여객선이 제주도 와 거문도등을 운항하여 해상교통이 편리하며 인근에 여수와 무안 공항이 있음

○ 이용상황

- 녹동신항 연안항의 항만 편의시설부지로 연안항 2단계 공사중에 있고 2011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현재 편의시설 이용계획 없음

○ 주위환경

- 읍소재지로 숙박이 용이하 며 어로 실습을 위한 거문도와 청산도 및 제주도 해역이 인근이며 소록도 우주발사기지등이 있어 관광적 요소도 다수 산재

○ 추천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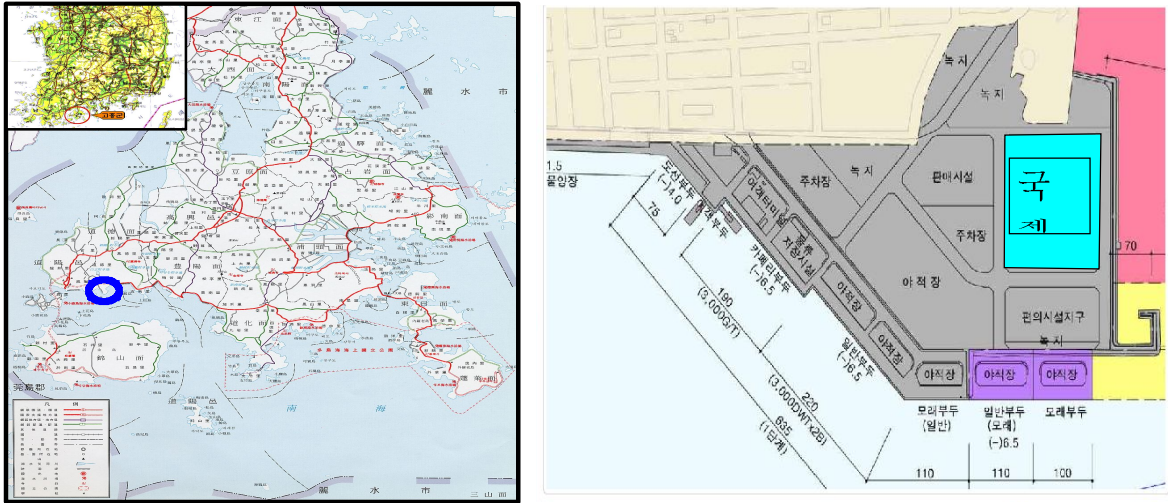
- 지역균형 발전과 완공된 항만부지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

○ 장점

- 남해 및 서해의 중심지역이며 국제어업교육원 부지 확보 및 어로 실습을 위한 어장여건 용이

○ 단점

- 서울, 인천, 부산등 대도시와 원거리로 외국인 이용 불편



[그림 5-4] 전남도가 추천한 후보지(녹동 신항 배후지) 전경

나) 목포시 북항 수산시설배후부지

조사항목	북항 수산시설배후부지
1. 소유자 (추천기관)	국토해양부 (목포시)
2. 소재지	목포시 북항 수산시설배후부지내 유보지
3. 면적(m ²)	18,000
4. 지 목	미등재(2010년 매립완료)
5. 공시지가(원/m ²)	
6. 매입예정가격(백만원)	무상(공공목적사용)
7. 매입가격산출근거	

- 지리적 위치
 - 서해안고속도로 끝단
- 이용상황
 - 준설토 매립지(2010 완료)
- 주위환경
 - 서해청 훈련시설과 인접
- 추천배경
 - 수산시설단지조성 추진중으로 교육시설 적지
- 장점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 국유지 무상사용, 정박용이
- 단점
- 없음

다) 신안군 청사

조사항목	신안군 청사
1. 소유자 (추천기관)	신안군 (목포시)
2. 소재지	목포시 북교동 178-1 외 2
3. 면적(m ²)	4,072.5
4. 지 목	대지
5. 공시지가(원/m ²)	757,056원(건물포함)
6. 매입예정가격(백만원)	3,700백만원(건물포함)
7. 매입가격산출근거	공시지가의 120%

- 지리적 위치
- 목포 원도심 위치
- 이용상황
- 현재, 신안군청사로 이용
- 주위환경
- 목포내항 및 북항과 1.5km
- 추천배경
- 신안군청 이전(2011.4월)시 유휴 건물로 재활용 가능
- 장점
- 건물신축보다 예산절감
- 단점
- 없음

라) 여수시 국동 다기능 어항

조사항목	국동 다기능어항
1. 소유자 (추천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여수시)

제5장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방안

2. 소재지	여수시 국동 91-1 외 5
3. 면적(m ²)	16,886
4. 지 목	대지
5. 공시지가(원/m ²)	115,000원
6. 매입예정가격(백만원)	무상(공공목적사용)
7. 매입가격산출근거	

○ 지리적 위치

- 여수시내 위치(국가어항)
- 해양진출 거점인 한반도 최남단의 남해안 중심부에 위치
-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교통수단의 다양성으로 접근 용이

○ 이용상황

- 국동다기능어항은 국가어항으로 동중국해 등 조업장소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여수시를 포함 부산, 마산, 남해 등지의 어선들이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2010년도 4만여톤 1,800억원 위판
- 시설대상지는 어항단지 내 노후된 육상기능 시설물(선원 숙소)을 철거하여 공지상태이며 현재 어항개발 제작물 장소로 활용되고 있음

○ 주위환경

- 여수수협, 제3·4구 잠수기수협, 전남정치망수협 등 수산단체 및 수산기능 시설인 활·선어 위판장, 급유급수 시설, 제빙·냉동 냉장시설 등이 배치되어 어선어업의 집약지역으로 다기능어항을 조성중에 있음

○ 추천배경

- 수산업(어업) 전문 교육기관인 여천실고와 전남대학교, 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남서해연구소 등이 있어 상시 교육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기선권현망, 정치망, 근해안강망 등에 종사하는 외국 어선원이 1,000여명으로 국내 적응훈련 등 체계적인 어선원 교육 필요

○ 장점

-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지역으로 지리적 인지도가 높아 내외국인 어로 기술 교육생 의 유치가 용이
- 어선어업 관련 대학(전남대) 및 연구기관 등이 있어 국제어업교육원 설치 시 어선원 양성교육이 용이
- 남해안 중심부에 위치하고 조업장소로 부터 접근성 용이하며 다양한 연근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해어업이 이루어지는 어선어업 거점단지임

○ 단점

- 없음



[그림 5-5] 전남도가 추천한 후보지(여수국동 다가능어항) 전경

3) 전라북도

조사항목	군산지방해양항만청 부지
1. 소유자 (추천기관)	국토해양부 (군산시)
2.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121번지
3. 면적(m ²)	18,079m ²
4. 지 목	잡종지
5. 공시지가(원/m ²)	90,900원
6. 매입예정가격(백만원)	무상(공공목적사용)
7. 매입가격산출근거	미정

○ 지리적 위치

- 우리나라 신규 성장발전 축으로 형성되고 있는 서해안 중부권의 전라북도 서북단 서해안에 연접된 지역에 위치
- 국내적으로 직선거리 서울 200km, 대전 90km, 부산 300km로 주요 대도

제5장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방안

시와 3시간 이내에 위치하고, 주요교통 수단으로 군산공항과 군산항 보유, 호남선과 전라선이 연결된 고속철도망, 서해안·호남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광역교통 접근성 우수

- 국외적으로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여 국외항로가 확보되어 있으며, 환황해권 중심에 위치하여 중국, 일본, 유라시아, 태평양으로 진출이 용이

○ 이용상황

- 새만금관광안내소(2층, 연면적 374㎡) 및 주차장(343대) 이용

○ 주위환경

- 북쪽으로 군산항, 남쪽으로 새만금신항만이 개발·운영되고 있으며,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개발중인 새만금과 연결하여 위치하고 있음

○ 추천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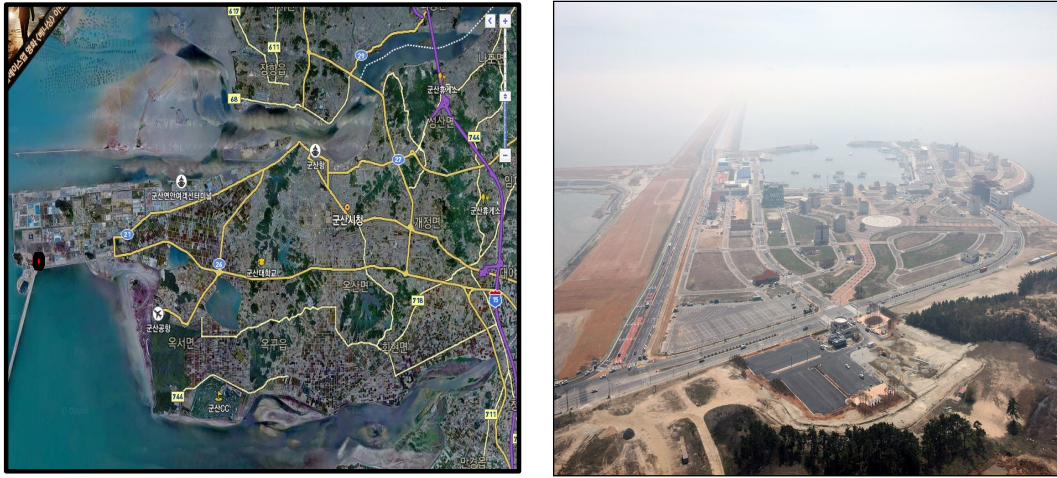
- 군산시는 개항 112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항구도시로 어업생산이 군산시 경제를 선도할 정도의 주력 산업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교육·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서해안 중심도시로써 연근해 및 원양해역의 해양생산기술의 발전에 선도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항해사 및 해양생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취지에 적합

○ 장점

- 대상 부지는 국토부(군산지방해양항만청) 소유 토지중 군산시가 사용 승인 받은 부지로 국제어업교육원 설립에 따른 용지매입비(284억원) 절감 가능
- 군산항 및 새만금신항만과 연결하여 위치하고 있어 국제어업교육원 복합어로실습선의 계류지 활용 및 현장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접근성 우수
- 군산시 소재 국립 군산대학교내 해양생산학과가 설치되어 있어 국제어업교육원과 어선원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연계등 교육원 설립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장점이 있음

○ 단점

- 없음



[그림 5-6] 전북도가 추천한 후보지 전경

4) 제주도

가) 구좌읍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 소유자	국(기획재정부)
2.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51-2
3. 면 적(m ²)	7,889m ² (2,386평)
4. 지 목	임야
5. 공시지가(원/m ²)	22,700원/m ²
6. 매인예정가격(백만원)	710백만원
7. 매입가격산출근거	90,000원/m ² × 7,889m ² = 710,010,000원

○ 지리적 위치

- 제주국제공항에서 동쪽으로 약 40분 거리에 있으며, 성산포항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음

○ 이용상황

현재 임야로써 미이용 상태의 토지임

○ 주위환경

- 상기 부지는 성산포항에서 제주시방면의 해안도로변에 위치에 있으며,
- 경관이 수려하고 항포구와 인접하여 교육생 현장학습 등이 매우 용이함

제5장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방안

※ 인근에 성산고등학교(해양산업과)가 있음

○ 추천배경

- 제주국제공항에서 40분거리로 교통이 편리함
- 성산포항이 연접해 있어 국제어업교육원의 교육생 훈련 등이 용이한 지역임

○ 장 점

- 교통이 편리하여 접근성이 뛰어나고, 복합
- 어로실습선 등 운영·관리 및 교육이 편리함

○ 단 점

- 국제어업교육원 적정부지로 15,000㎡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 국유지는 7,889㎡로 사유지 등 추가확보가 요구되는 장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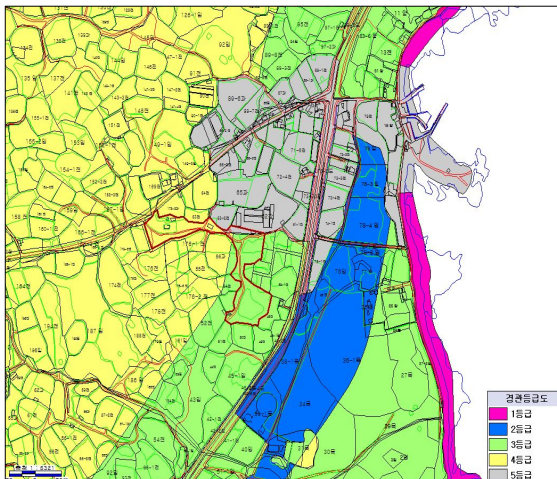
[그림 5-7] 제주도가 추천한 후보지(구좌읍) 전경

나) 제주 성산읍

조 사 항 목	조 사 내 용
1. 소유자	국(기획재정부)
2.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흥리57-1
3. 면 적(㎡)	23,775㎡ (7,191평)
4. 지 목	임야
5. 공시지가(원/㎡)	8,700원/㎡
6. 매입예정가격(백만원)	413
7. 매입가격산출근거	8,700원/㎡ × 23,775㎡ × 2배 = 413백만원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 지리적 위치
 -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약 50분
 - 연안항인 성산포항에서는 약2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지방도인 1132호선(일주도로)에 접해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함
- 이용상황
 - 현재 임야상태로 관리되고 있음
- 주위환경
 - 상기 부지 인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있어 상호 업무협약이 가능함
- 추천배경
 - 제주 일주도로변에 접해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성산포항은 제주동부지역의 어업 중심지로서 국제어업교육원의 업무연계와 추진이 매우 용이한 지역임
- 장 점
 - 교통이 편리하고, 성산포항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복합어로실습선 운영·관리 및 실습이 용이한 지역임
- 단 점
 - 없음



[그림 5-8] 제주도가 추천한 후보지(성산읍) 전경

다. 평가기준

- 국제어업교육원의 적지 선정은 국유지 무상 사용, 지역발전 가능성, 해양(어항 등) 접근성, 민원문제, 건립비용, 부지여건, 교육생 접근 편의성, 교육지원 용이성, 인근기관과의 협조, 교통 접근성 등 10개 항목을 평가 요소로 함
- 국제어업교육원의 유치를 희망하는 지장자치단체가 제출한 서류에 근거한다.
- 각 후보지에 대하여 판단요소별 상대비교 형식을 취하며, 요소별로 1등부터 1점차의 점수를 부여하거나 또는 평가점수를 매우 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 미흡 1점의 5점 척도로 하여 상대적 위치 점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한다.

라. 평가절차

(1) 평가위원 구성

- 농림수산식품부 : 1인
- 연구팀 : 1인
- 관련 단체 : 2인
- 전문가 : 3인

(2) 평가기준의 타당성과 유효성 협의

- 연구진이 제시한 평가 항목과 각 항목별 점수화의 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 항목별 점수의 배점에 대한 기준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별로 점수화
- 각 항목에 대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환산하여 평가위원수로 평균

(3) 적지 결정

- 각 후보지별로 점수를 환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을 적지로 선정

<표 5-2> 판단요소별 건립후보지 평가 결과

구분		부산		전남			전북	제주	
		검역원	부경대	고흥	북교동	북항	국동	군산시	구좌읍
1	국유지 무상 사용								
2	지역발전 가능성								
3	해양(어항 등) 접근성								
4	민원문제								
5	건립비용								
6	부지여건								
7	교육생 접근 편이성								
8	교육지원 용이성								
9	인근기관과의 협조								
10	교통 접근성								
점수합계									
건의 우선순위									

- <표 5-2>에서 각 후보지에 대하여 판단요소별 비교를 위하여 요소별 평가점수는 매우 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 미흡 1점의 5점 척도로 하여 상대적 위치 점수를 평가함

2. 필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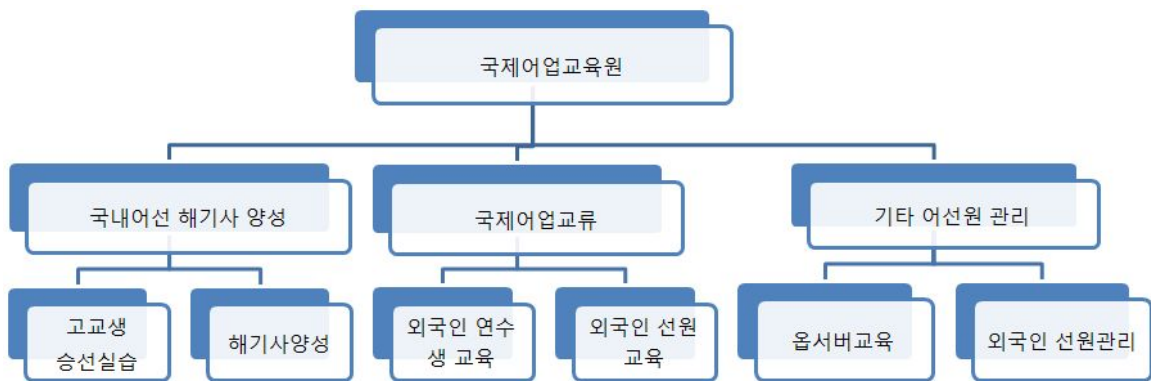
가. 국제어업교육원의 필요 시설

- 국제어업교육원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크게 4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제어업교육원의 업무 영역에 따라 건물 및 내부시설은 크게 선박 시뮬레이터실 및 관련 시설, 갑판 및 기관 실습실, 강의실, 교수 및 교관실, 행정사무실, 휴게실 등이 필요하며, 건물의 기본 요소인 화장실, 계단 및

제5장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방안

복도가 필요함

- 국내어선 해기사 양성과정은 적어도 6월의 이론교육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들 교육생의 숙박시설인 기숙사가 필요하며, 국제어업교류 중 외국인 연수생교육과 외국인 선원교육 또한 숙박시설이 준비되어야 함
- 그리고 해기사 양성과정은 1년의 승선실습 중 적어도 6월 이상은 교육기관에서 승선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에 필요한 실습선이 요구되며, 고교생 종합실습 역시 실습장비를 갖춘 실습선이 요구됨



[그림 5-9] 국제어업교육원의 업무 영역

나. 국제어업교육원의 시설규모

- 대지면적: 15,000m²(4,540평)
- 연면적: 5,000m²(1,510평평)
 - 교육장 건축 바닥 면적: 1,663m²(504평)
 - 실습동 바닥면적 : 677m²(200평)
 - 기숙사 면적: 2,660m²(806평)

전체 면적	서비스면적	기숙사 방 공간	방크기	방 규모	
				1인실	2인실
2,660m ²	746m ²	1,914m ²	19.14m ²	10	90

* 산출근거 : 해기사 양성 70명, 외국인 교육생 50명, 일반 교육생 70명 총 190명

- 주차 면적(계획 주차대수 60대) : 720m²(218평)
- 조경면적 : 8,636m²(2,617평)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 진입로 등 기타 면적 : 643m²(195평)

<표 5-3> 국제어업교육원의 규모

부지	건평	인원	국내어선 해기사양성		국제어업교류	
			고교생 종합승선	해기사 양성	외국인 연수생	외국인 선원교육
15,000m ² (4,540평)	5,000m ² (1,510평)	50명	140명	140명	100명	3,300명

다. 복합어로실습선

○ 어선원 승선실습(고교생 종합승선실습, 일반인 해기사양성, 외국인선원 승선실습)

톤수	기관마력	속력	항행구역	선원교원	실습생	길이	선형
750톤	3,800	15노트	원양	30	70	70m	복합

라. 해기사 양성관련 교육시설

- 1) 종합실습관
- 2) 소화훈련장
- 3) 해상안전훈련장
- 4) 내연단련훈련장
- 5) 항해관

마. 해기사 양성관련 기타 시설

- 1) 갑판
- 2) 기관

제6장 국제어업교육원 운영 방안

제1절 기본방향 및 목표

1. 운영의 기본원칙과 방향

가. 기본원칙

1) 어선원 수급차원에서 교육원 운영

우리나라 수산업의 어선원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외국인 어선원 활용이 수급방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지침에 따라 부족한 어선원을 외국에서 충당하는 방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선원 부족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충분한 인력이 있고, 또 실업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어선원수급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 해소할 수 없는 상대적 부족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어선원 부족현상은 인구나 교육 혹은 훈련에 관련된 원인이기보다는 경제적 혹은 사회적 요인에 기인된 것이므로 중장기적 대책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 그래서 외국인어선원 활용은 단기적인 어선원 수급대책에 불과하다

이같이 외국인 어선원 활용이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면, 외국인어선원 활용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며, 특히 외국인어선원 활용은 수급부족 해소 효과와 저임금 효과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원운영의 기본원칙은 반드시 외국인 어선원 활용이 어선원수급난 해소를 극대화하고 저임금 효과는 최소화해야 한다. 외국인 어선원을 활용함으로써 생기는 과도한 비용상의 우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저임금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지나친 경영 의존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발생할 비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자칫 외국인 어선원 활용이 저임금 효과에 치우치게 되면 장기적인 어업경영의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으며, 국내외 어선원의 실업문제뿐만 아니라 무단이탈 등과 같은 제도적 문제를 야기하는 불합리한 상황도 함께

발생한다.

외국인 어선원 활용이 저임금에 치우치면 일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대체로 어업구조조정 등과 같은 과잉어업세력을 제거해야 하는 현실의 어업문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저임금 외국인 어선원은 어업의 구조조정에서 생산성이 낮은 어업자의 퇴출을 막는 불합리한 효과를 지니고 또 어업의 생산성 제고노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없는 한계어업은 어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퇴출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저임금 어선원에 의존하여 어업을 연명해가는 불합리한 어업을 양산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교육원은 어선원 수급의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2) 어선원 사후관리체계의 운영

외국인 어선원 활용의 심각한 문제중 하나가 이탈문제이다. 정확한 통계치는 아니지만 20-30% 외국인 어선원이 이탈하여 제조업등에 미등록근로자로 불법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등록근로자는 일종의 범죄자의 요건이 되는 것이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의 여러 가지로 곤란한 문제에 직면할 소지가 많다.

외국인 어선원의 이탈은 당사자 뿐만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나 단속이 심하지 않고 취업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인 어선원 활용이 국내 어선원 수급문제의 해결에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어선원 이탈을 최소화하는 사후관리체계의 운영이 필요하다.

외국인 어선원의 사후관리체계는 기초적인 교육훈련과 관리 그리고 출국에 이르기까지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운영에는 반드시 법적인 제도를 정립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고용선주, 어선원, 그리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3) 외국 어선원 고용 선주와 어업인의 기본교육

연근해 어업이 외국인 어선원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기피직종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외국인 어선원 고용선주나 어업인들의 이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가끔 외국인 어선원 문제가 바로 고용 선주나 어업인 자체

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 어선원을 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인적관리가 필요하며, 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외국인 어선원 교육과 훈련도 중요하나 고용 선주와 어업인에 대한 기본교육도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언어소통, 국가체제, 또는 이념차이,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인식의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 선원들의 낮은 소양과 자질, 임금격차, 그리고 높은 노동강도 등과 같은 문제가 어업에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어업 현실에서 외국인 어선원들은 특수한 선상생활에 적응력을 갖추지 못하고 조업수행능력이 낮아서 바람직한 외국인 어선원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외국인 어선원 고용 선주나 어업인들에게 외국인 어선원과 혼승에 따른 습관, 문화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혼승대비 교육을 실시한다.

4) 외국인 어선원 확보 위한 해외양성교육원 운영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장기적 어선원 수급의 안정화와 양질의 어선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지 어선원 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부분 외국인 어선원 송출회사나 어선원관리사업체가 난립되어 있고, 대부분 영세한 경영체로 인한 과도한 경쟁과 임금차의 수익구조 등을 고려하면 양질의 외국인 어선원을 얻기란 쉽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 어선원은 중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위주의 연고를 형성하고 있다. 동일한 비용하에서 질이 좋은 외국인 어선원을 확보하고, 고용선주나 국내 어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어선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지역에 현지 어선원양성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5) 외국인 어선원 복지지원체계 운영

인적자원관리의 관점에서 외국인 어선원의 잠재력과 내적 동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고용 선주의 입장에서 조업 생산성 확보뿐만 아니라 개인과 조직의 효과성을 최적화하는 데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어선원 활용을 장기적 관점에서 접해야 한다. 단기적 비용보다는 장기적인 외국인 어선원에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대한 안정된 생활여건의 복지 지원을 통하여 질 높은 노동력 확보와 활용 혜택을 높여야 한다.

외국인 어선원 수급문제는 복합적인 내국인 어선원 대비 상대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서 유연한 행정적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정서적인 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 외국인 어선원들은 일단 입국만 하면 장기체류하려고 하며, 고용 선주의 입장에서 조업 숙련도나 일의 영속성을 고려하여 장기체류를 묵인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다. 이같은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복지지원체계의 운영이 요구된다.



[그림 6-1] 국제어업교육원 사업운영 기본원칙

6) 국내외 어업 어선원 교육훈련의 유의사항

어선원 양성과정은 수요자(선주)의 요구에 따른 연수로 한국의 어선원으로서의 자질 및 어업활동에 종사하기 위한 기초능력 등을 습득하게 하는 직접적인 외국인 어선원 양성사업으로서 우리나라 국내외 어업에 대한 효과는 매우 크다.

일본의 경우 어업협정 체결국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OFCF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어업상대국 및 연수를 요청하는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국가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우리나라 참치어선이 입어하는 국가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어선원 양성과정(육상과정)은 어선 부원 양성과정과 선박직원 양성과정의 2 과정으로 나누어 실시되어야 한다.

어선 부원 양성과정은 신규로 어선의 부원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과 현재 한국어선에 승무 중인 외국인 선원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중견선원으로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특히 중견선원 양성과정은 중견선원을 양성하여 기존의 외국인 선원의 이탈과 중견선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과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어선의 선박직원 양성과정은 일정한 부원 승무경력을 갖춘 부원 선원으로서 우리나라 원양선사가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초청 연수교육과 소정의 면허시험을 통하여 6급 또는 5급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어선의 초급사관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은 기존의 국내 인력 양성과의 관계 및 지속적인 인력자원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외연수생 초청사업에 의한 어선원 양성은 장기간에 걸쳐 어선원 양성을 위한 연수교육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해외어업협력센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과 같은 교육기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해외어장에서의 오랜 현장 경험을 가진 해기사 출신 강사진을 확보함으로써 외국인의 성향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기본 방향

1) 기본 방향

국제어업교육원 운영의 목표는 어선원 수급 안정화 및 국제어업 교류협력의 선진화에 둔다. 이를 위해 어선원 양성 교육훈련 및 연안 개도국 어업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리적인 사업을 체계적 이행이 중요하다. 다양한 사업이 균형있게 개발 이행되어야 하며, 특히 어선원 수급의 국내외 안정된 상호 보완적인 수준 조절이 필요하며, 교육 및 훈련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후 관리 및 지원사업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제어업교육원의 사업운영의 3대 기본방향은 첫째, 어선원, 해기사 및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의 내실화이다. 둘째, 연안개도국과의 어업교류 및 연구의 활성화이다. 셋째, 외국인 어선원의 사후관리와 복지지원의 체계화이다.



[그림 6-2] 국제어업교육원 사업운영 3대 기본방향

2) 사업구성

국제어업교육원이 어선원 양성 및 교육훈련 그리고 국제어업협력 및 지원전담기관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업 운영 및 수행기능과 구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어선원 및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어업교육원 사업의 다양화와 수급문제의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균형된 사업 구성이 필요하며, 현실 문제 해결에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국내 연근해 어선원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어선원 양성교육은 일차적으로 수급문제이나 어선원의 생산적 활용이 가능한 교육 훈련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제어업교육원 사업구성의 기본방향은 어선원 수급의 안정화와 국제어업협력 선진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실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그리고 관리지원의 체계화에 균형된 사업을 구성한다. 어선원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양적 공급이 우선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리고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연안 개도국 중심적이나 기술 및 정책공급 시스템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어선원 사후관리 및 복지지원의 체계화는 어선원 수급의 실효적 관점연안 사회적 비용최소화와 함께 생산적인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어선원의 질적 양적 안정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국내외 해기사 양성은 어선원 수급에 균형되게 적절한 양적 질적 통제를 강

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 외국인 어선원 양적 질적 수급에 균형되게 해기사 양성 수준 조절이 항상 있어야 한다.

2. 추진전략과 목표

가.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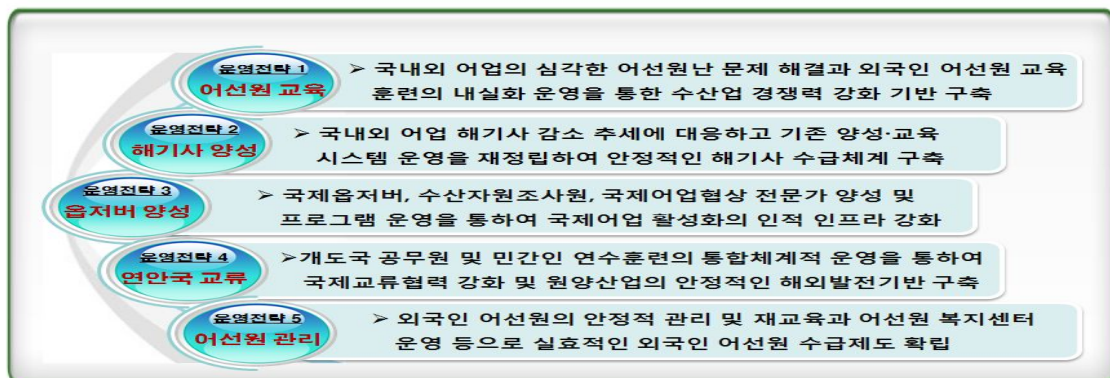
1) 기본전략

농림수산식품부의 연안국과의 수산분야 국제협력사업의 기본목표는 KOICA가 추구하는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의 목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산업의 국제화와 해외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장기 비전과 기본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추진전략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수산기구와의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 연안국의 수산인력 초청연수, 수산기자재 공여 등을 중심으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수산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수산분야 국제협력사업은 2007년도에 약 10억 원 정도로 그 규모가 아주 미미하였다.

향후 농림수산식품부의 국제수산협력 정책은 국제수산사회에 대한 기여와 더불어 해외 연안국 수산업 및 우리나라 원양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과 추진전략 및 목표, 그리고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6-3] 국제어업교육원 사업운영 추진전략

나. 추진 목표

1) 추진목표

어선원 및 전문인력 수급관리와 국제어업 교류협력연수 사업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추진목표를 설정한다. 첫째, 우리나라 국내외 어업의 어선원 확보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둘째, 외국인 어선원 양성체제의 구축을 통한 연안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셋째, 해외 수산자원 확보와 원양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어업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한다.

국내외 어업의 어선원 수급체계의 안정화와 연안국 어선원의 양성과 원양어선원의 승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외 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중장기 프로그램 중심의 전략사업 발굴·추진한다. 그리고 대상국가 및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 효과를 제고한다.

국내외 어업의 어선원 수급양상의 변화와 어선원 양성을 통한 연안국과의 협력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사업규모와 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평가 및 홍보를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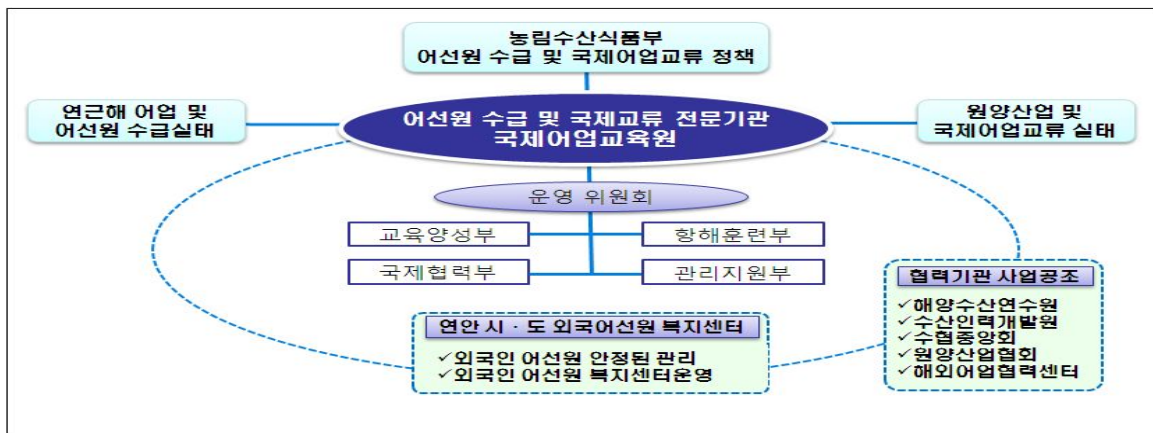


[그림 6-4] 국제어업교육원 사업운영 추진목표

제2절 추진체계 및 운영방법

1. 기본 추진체계

국제어업교육원의 사업운영 기본추진체계는 <그림 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선원수급 및 국제어업교류 전문기관으로의 사업운영 추진체계이다.



[그림 6-5] 국제어업교육원 사업운영 추진체계

2. 운영방법

가. 내부통합 통합 조직체 운영

국제어업교육원의 내부통합 운영체계는 기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어선원 교육훈련과 국제어업교류협력 및 연수, 어선원 관리 및 복지지원 사업을 모두 교육원의 독립조직체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림 <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국내와 해기사 양성 사업, 수협중앙회의 외국인 어선원 교육훈련사업, 국립수산과학원의 국제어업협력센터와 수산자원조사원 양성사업, (사)해외어업협력센터, 수산인력개발원의 국제어업협력 연수사업, 연안 지자체의 어선원 관리 및 복지지원사업을 교육원의 내부통합 조직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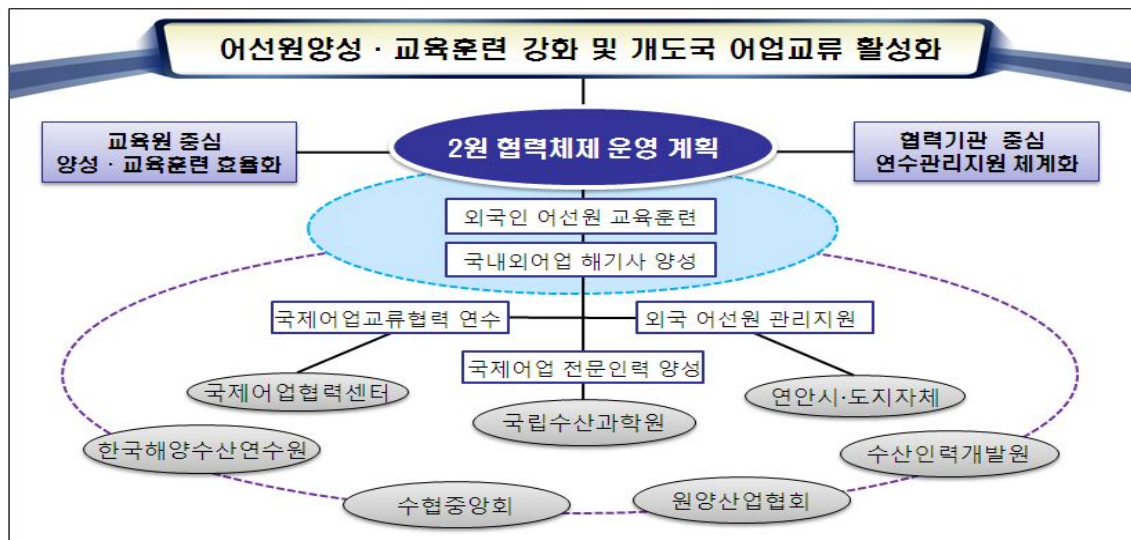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그림 6-6] 국제어업교육원 전문기관의 독립조직 운영체계

나. 내부통합 중심 외부 협력체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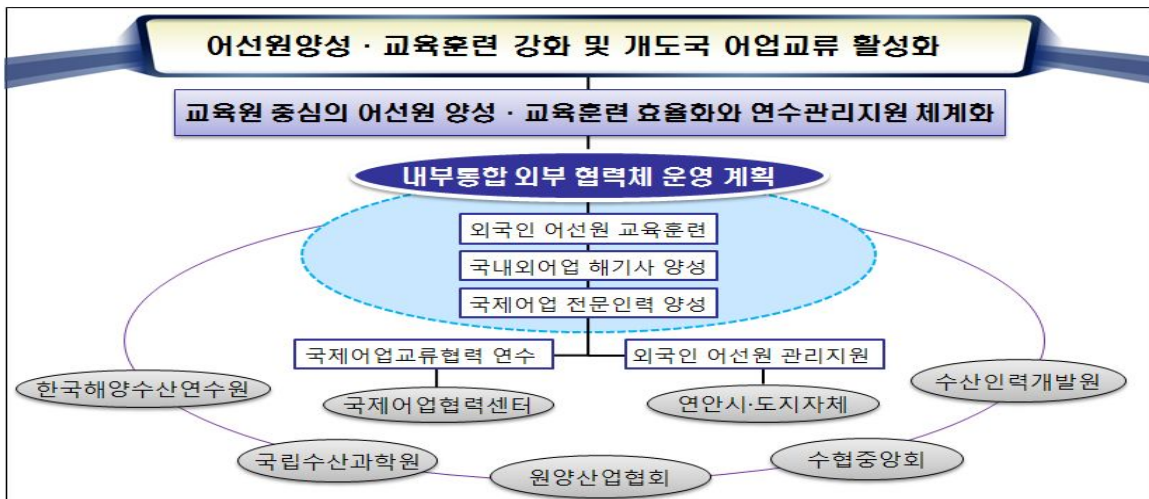
외국인 어선원(부원 및 해기사 포함) 양성교육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운영방안이다. 주관기관인 국제어업교육원은 외국인 어선원 희망자 선정, 초청, 체류 및 취업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맡고, 협력기관은 주관기관의 위탁에 의해 어선원 양성교육 담당기관 시행기관은 부경대학교와 특수법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7] 국제어업교육원의 내부통합 외부 협력기관 운영체계

다. 국제어업교육원과 협력기관 공조적 운영체계

국제어업교육원은 외국인 어선원 교육훈련과 국내외 해기사 양성분야를 담당하고, 나머지 국제어업교류협력은 국제어업교육원, 국제어업 전문인력양성은 국립수산과학원, 외국인 어선원관리 및 지원은 연안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2원 공조적 협력체계의 운영계획이다. <그림 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어업교육원 중심 양성 및 교육훈련을 여타 협력기관에서는 어업협력 및 연수 그리고 어선원 관리 및 복지지원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그림 6-8] 국제어업교육원과 협력기관의 공조적 운영체계

제3절 중점 추진사업

1. 외국인력 어선원 교육사업

가. 교육사업 배경 및 필요성

(1) 어선원 수급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

어업발전 3대 생산요소인 어장, 어선, 어선원 중 어선원 수급문제의 심각성에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국내 연근해 어선 및 양식어업은 물론 원양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선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며,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취업 알선, 고용주의 실무교육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2) 어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전문 직업 교육 제도화

어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외국인 어선원 작업능력 한계 노출과 안전사고, 비효율적인 조업 등에 대응한 외국인 어선원 직무교육의 확대, 고용주에 대한 실무 교육 등의 미비점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3) 체계적 사후 현장 중심의 외국인 어선원 고용관리

외국인 어선원 노동, 급여조건 개선과 복지지원 등을 통해 작업 현장에서의 이탈을 최소화는 방안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사후 현장 중심의 외국인 어선원 고용관리가 필요하다.

나. 교육사업 목표 및 주요 업무

(1) 교육사업 목표

연근해어업은 물론 원양어업의 어선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관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한다.

- 전담기관 중심으로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수급체계의 안정화 도모
- 외국인 어선원 재교육, 고용 선주의 실무교육과 함께 사후 현장 관리 도모

(2) 교육사업 주요 업무 및 실행 방안

- 외국인력 직무교육 실시 및 취업 알선

외국인 어선원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교육훈련 2박 3일 20시간에서 어업기술 시청각 교육 및 선박 승선교육 19시간을 추가하여 4박 5일 35시간으로 확대, 시행을 제안하며, 이수해야 하는 직무적용(외국인 선원제 및 고용허가제) 교육과정 운영계획안은 <표 6-1>과 같다.

<표 6-1> 외국인 부원선원 직무교육과정(안)

교과목	교육시간		
	이론	실습	총시간
입소식 및 오리엔테이션	0.5	0	0.5
건강검진	0	0	0
한국문화의 이해	3	0	3
한국어 기초회화	4	0	4
어업기초 기능(어구 및 조업법)	2	6	8
어업기초 용어 설명	2	0	2
산업안전보건	1	0	1
관련 법규	1	0	1
이탈방지 교육	1	0	1
어획물처리 실습	0	3	3
승선 적응 훈련	0	10	10
취업 알선 및 계약 체결	1	0	1
수료식	0.5	0	0.5
합 계	16	19	35

※ 교육시간 조정 가능함

- 외국인력 불법이탈 예방 등 관리 강화
 - 외국인력의 입국 입국 강화
 - 외국인력에 대한 한국어 교육시간 확대로 조기 조업적응 유도
 - 외국인력 애로상담교육원 운영
 - 외국인력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로 불법이탈 사전 예방
 - 외국인력 재교육 실시
 - 대상자 : 국내 입국 후 1년 경과된 외국인력 대상 현장 재교육
 - 연 3회 실시

- 외국인력 복지 증진방안 모색
 - 고용주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통하여 외국인력 고용의 편익 도모
 - 외국인력에 대한 통역 지원, 고용업체와의 분쟁 조정 등 외국인력 애로사항 조기해소를 통한 외국인력 권익 및 인권침해 방지
 - 고용업체와 외국인력 간 의사소통 관련 통역 지원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 외국인력 근무 여건(숙소, 구타, 임금체불 등) 개선
- 외국인력 해외(고국) 송금 지원
- 외국인력 및 고용업체간 분쟁 조정
- 외국인력 애로사항 전화상담 콜교육원 운영
- 외국인력 재해 발생시 보상처리 지원 등
- 우수 외국인력 한국문화체험 지속 실시
 - 2009년 12월 중국 선원(20명),
 - 2010년 12월 인도네시아 선원(21명), 2011년 5월 중국선원(23명)
- 외국인력 사망 위로금 지급(1인당 50만원)

□ 고용선주의 실무교육 실시

고용선주와 외국인 어선원 간의 종교,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외국인 고용 증진을 목적으로 외국인 어선원 고용을 희망하는 고용주에게 4시간 범위의 실무교육을 제안한다.

- 교육실시 : 외국인 어선원의 직무 적응교육 마지막 날
- 교육대상 :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희망하는 고용주 또는 위임받은 관련 담당자
- 교육과정 (4.0시간)

일정	시 간	교 과 목	시간
1일 (4.0시간)	13:00 ~14:00	동남아(외국인력) 국가의 생활 및 문화 인식(1) - 국가별 근로자 특성(성격), 전통의식, 음식 등	1.0
	14:00 ~15:00	동남아(외국인력) 국가의 생활 및 문화 인식(2) - 국가별 생활문화 및 풍습에 따른 유의사항 등	1.0
	15:00 ~16:00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주의사항 - 임금 지불, 숙소 제공, 언어폭력 예방 등	1.0
	16:00 ~17:00	관계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1.0

□ 외국인력 고용 사후관리 및 주기적인 현장 점검 실시

- 송출국가, 선원관리업체, 고용업체 점검 강화
 - 송출국가의 외국인력 선발, 교육 및 모집과정 점검(연 4회)
 - 선원관리업체(연 2회) 및 고용업체(연 6회) 실태 점검

○ 외국인력 관리업체 점검 항목

번호	점검 항목	적정여부	비 고
1	선박관리업 등록 적정여부		
2	영업보증(보험) 적정여부		
3	상시직원(통역직원) 유무		
4	사무실(집기비품) 시설		
5	업무용 차량		
6	사후관리 실적 유지		이탈률, 이탈자 소재파악, 출국여부확인
7	실태 점검 및 애로상담		임금체불 파악 및 처리 등
8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추진 방식

- 한국선업인력관리공단의 취업교육 전담기관으로 지정
 - 인천 건설기술교육원(임차) 또는 수협중앙회 천안연수원을 임시 활용
- 수협중앙회의 취업교육기관 업무 이관을 통하여 외국인 어선원 취업교육 전담기관으로 사업 추진

라. 사업 내용

- 외국인 어선원 연간 3,300명 교육훈련
 - 연근해 어선원 2,300명, 원양어업 1,000명
- 외국인 어선원 교육 내실화, 교육훈련 2박 3일 20시간에서 4박 5일 35시간으로 확대
 - 한국문화이해, 고용허가제 등 관계법령 교육 16시간
 - 업종별 기초, 기능전문 어업기술 시청각 교육 4시간, 승선교육 15시간 총 19시간

2. 내국인 해기사 양성교육 사업

가. 해기사 교육의 개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를 선발하여 어선 초급해기사로 진출시킴에 따라 우수인력의 해기사 진출 및 경력선원들의 간부 선원화를 통해 우수한 어선

해기사를 배출함으로써 원양 및 연근해 어업계에 심화되고 있는 해기사 인력난 해소는 물론 선원직업 확대에 그 목적을 둔다

나. 어선 해기사 양성 과정

(1) 5급 원양어선(오션폴리텍 과정) 양성교육(수산_어업)

① 주요 교육과목

- GMDSS, ROC 교육, SMCP, 기초안전신규, 당직근무, 레이더시뮬레이션,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선내의료, 선박복원성, 선박의 구조 및 설비, 선박동력장치, 선박조정, 어업 및 어구실습, 어획물 처리, 원양선 직무교육, 전파 및 레이더 항법, 지문항법, 항로표지, 항로계기, 해사법규, 해사일반영어, 해사교통법, 해양기상

② 교육기간 : 120시간 / 육상교육(4개월), 승선실습(1개월)

③ 교육주기 : 연 1회(5월) 또는 필요시

(2) 5급 원양어선(오션폴리텍 과정) 양성교육(수산_기관)

① 주요 교육과목

- 기계공장법/제도, ROC 교육, 당직근무 및 직무일반, 기초안전신규, 내연기관,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장치,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연료유 및 윤활유, 외연기관, 용접 및 기계공작 실습, 유체기기 및 환경오염방지기기, 전기공학 및 전기기기,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조선학, 원양선 직무교육, 추진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해사관련법규, 해양오염방지규정, 기관영어

② 교육시간 : 120시간

③ 교육주기 : 연 1회(5월) 또는 필요시

(3) 6급 원양어선 양성교육(수산_어업)

① 주요 교육과목 : 5급 원양어선 양성교육(수산_어업) 과정과 유사함

② 교육시간 : 12주 / 160시간

- ③ 교육주기 : 연 1회 또는 필요시

(4) 6급 원양어선 양성교육(수산_기관)

- ① 주요 교육과목 : 5급 원양어선 양성교육과정(수산_기관)과 유사함
- ② 교육시간 : 12주 / 160시간
- ③ 교육주기 : 연 1회 또는 필요시

(5) 교류교육(어선)

상선 항해사면허 소지자가 어선 항해사 면허시험(교류시험)에 합격하여 어선 항해사면허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동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① 주요 교육과목
 - GMDSS 운용, 국제해사협약, 선박조선, 어구실습, 어법, 어장학, 어획물처리, 해사영어, 해양사고예방교육
- ② 교육시간 : 5일 / 30시간
- ③ 교육주기 : 필요시

(6) 면허취득 3급 과정(수산_어업)

- ① 주요 교육과목
 - GMDSS 운용, 국제해사협약, 선박정비, 선박조선, 선원관계법, 전파항해, 지문항해, 천문항해, 표준해사통신영어, 해상교통법, 해사영어, 해양기상, 해양사고예방교육
- ② 교육시간 : 5일 / 30시간
- ③ 교육주기 : 분기별 또는 필요시

(7) 면허취득 3급 과정(수산_기관)

- ① 주요 교육과목
 - 계측실무, 기관실무, 기관영어, 보일러, 선박보조기계, 시퀀스제어, 전기, 전자, 조선, 추진, 해사법규, 해상안전, 해양사고예방교육

② 교육시간 : 5일 / 30시간

③ 교육주기 : 필요시

(8) 면허취득 4, 5급 과정(수산-어업, 기관)

① 주요 교육과목 : 면허취득 3급 과목과 유사함

② 교육시간 : 3일 / 18시간

③ 교육주기 : 필요시

(9) 면허취득 6급 면제(수산-어업, 기관)

① 주요 교육과목 : 면허취득과정 교과목(어업, 기관)과 유사함

② 교육시간 : 2 주 / 60시간 (승선경력 요건 충족한 경우 3일 / 18시간)

③ 교육주기 : 필요시

다. 직무교육 및 요청교육

선박운항에 지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고급 간부선원들의 직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과정으로 원양어선의 선장, 기관장, 1등항해사, 1등기관사, 통신장을 대상으로 하는 원양선 직무교육 등이 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의 어업환경 및 어선장비의 자동화 추세에 부합되는 전문기술을 실무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어선의 안전운항 및 생산성 향상, 각종 연안국 규제사항, 수산정책에 대한 학습을 통해 국가간의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항해사 자격을 취득하고 최초로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박운항의 필수적 장비인 레이더의 효과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레이더의 원리와 구성, 플로팅, 레이더 항해 등의 과목으로 실무능력을 배양시키고 있다.

최근에 다수의 어선에 탑재되어 있는 자동충돌예방 장치의 효과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ARPA 레이더 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선장, 항해사를 대상으로 이 장치의 원리와 기능, 작동, 오차 등의 내용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원양선 직무교육(어업)

① 주요 교육과목

- 국제해사협약, 선박조선, 수산업현황, 어업정보화, 어획물처리, 인화관리, 전파항해, 해사영업, 해양기상, 해양사고예방교육

② 교육시간 : 3일 / 18시간

③ 교육주기 : 필요시

(2) 원양선 직무교육(기관)

① 주요 교육과목

- 보조기계관리, 유류 실무관리, 전기 전자, 제어, 시퀀스 실무, 주기관, 직무영어, 해사법규, 해양사고예방교육

② 교육시간 : 5일 / 30시간

③ 교육주기 : 필요시

(3) 레이더 교육(시뮬레이션)

원양 선박의 안전과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구조종실인 선교(Bridge)에 근무하는 선장과 선교팀(Bridge Team)의 선박조종수역(협수로 통항수역 및 항만접근수역)에서 필요한 고도의 실무 선박조종기술을 향상시켜 선박안전운항과 항만안전에 크게 이바지함을 목표로 삼고 있는 교육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이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또는 자동충돌예방교육을 위한 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졸업자 포함)는 동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① 주요 교육과목

- 레이더 원리 및 작동, 레이더 항해, 시계 제한 및 폭주구역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숙지, 충돌예방규칙 적용대양 시뮬레이션, 통항분리대 및 근처 시뮬레이션, 플로팅, 해양사고예방교육

② 교육시간 : 5일 / 35시간

③ 교육주기 : 수시

(4) 레이더 교육(자동충돌예방)

선박운항에 필요한 ARPA(Automatic RADAR Plotting Aids)에 관한 지식과 실습장비를 이용하여 ARPA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 및 ARPA로부터 얻은 정보를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학습목표로 삼고 있는 교육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이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또는 자동충돌예방교육을 위한 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졸업자 포함)는 동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① 주요 교육과목

- ARPA 기본 이론 및 성능기준, ARPA 작동 숙지 및 유지 관리, ARPA 장치, 구성, 추적능력 및 한계, 충돌예방규칙적용 다수척 시뮬레이션, 통항분리대 시뮬레이션, 해양사고예방교육

② 교육시간 : 3일 / 20시간

③ 교육주기 : 수시

라. 안전 및 법정교육

선원법 제10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선박직원(30톤 미만은 제외) 및 원양어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에게 선박의 구조 및 설비, 구명설비, 구명통신, 생존기술, 소화이론 등을 강의함으로써, 선박의 조난시 생존과 통상 항해시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1) 기초 안전교육

① 주요 교육과목

- 개인생존장비, 비상무선설비, 비상절차의 준수, 생존기술, 생존정교 구조정, 생존, 퇴선 및 비상상황, 선내 인간관계, 선내 임무와 지시 이해, 응급처치 실습, 응급처치의 개론, 안전작업 실무, 화재의 위험과 비상상황대응, 해양오염방지, 화재의 소화 및 훈련 I, 화재

의 소화 및 훈련 II, 해양사고 예방교육

- ② 교육시간 : 4일 / 24시간
- ③ 교육주기 : 수시

(2) 기초 안전교육(어선부원)

① 주요 교육과목

- 보목법과 환자 운반법, 삼각건 및 붕대법, 선내 위생, 심폐 소생술, 응급처치 및 환자관리법, 응급처치 개론, 응급처치 종합실습 및 평가, 인체 구조와 기능, 해양사고 예방교육

- ② 교육시간 : 3 일 / 21시간
- ③ 교육주기 : 수시

(3) 기초(상급) 소화 교육(신규, 재교육)

① 주요 교육과목

- 선박소화설비의 종류와 운용, 선박의 화재와 폭발사고 분석, 선박 화재 통제와 소화절차, 소화 실습 I, 소화 실습 II, 소화작업의 위험성, 화상 및 질식자의 응급처치, 화재이론, 화재방지 및 소화 방법, 종합소화훈련, 해양사고 예방교육

- ② 교육시간 : 3일 / 21시간
- ③ 교육주기 : 수시

(4) 기초(상급) 응급처치 교육과정

① 주요 교육과목

- 기초응급처치, 비상절차의 준수, 생존, 퇴선 및 비상상황, 생존기술, 생존정과 구조정, 선내 안전조업, 선내 인간관계, 선내 임무와 지시 이해, 소화 및 방화, 안전작업 실무, 인간관계, 해양오염실무, 화재의 소화 및 훈련 I

- ② 교육시간 : 30시간
- ③ 교육주기 : 연 1회

마. 승선 실습교육

승선 실습교육에는 어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어업과)과 어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기관과)을 운용한다.

3. 연안국 어업협력 · 연수사업

가. 연안국 어업협력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1) ODA 자금에 의한 국제협력

ODA(정부개발원조)는 지원형태에 따라 양자간 협력 또는 다자간 협력으로 분류되고, 양자간 협력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직접 원조를 공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자간 협력은 국제기구나 국제개발은행의 출연금 또는 분담금, 양허성 차관 제공 등을 뜻하고, 양자간 협력에는 증여와 정부차관(EDCF)이 있다. 증여는 다시 기술협력과 무상자금 협력으로 나뉘는데, 기술협력은 개발도상국가의 기술 자립을 위한 인력양성과 기술이전원조를 말한다. 그리고 무상자금 협력은 개발도상국에 변제의무가 없는 개발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표 6-2> ODA의 형태별 분류

협력형태		실시기관	주무부처
양자 협력	무상원조	물자/현금 공여 프로젝트형 사업 기술협력(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기술협력 프로젝트, 개발조사, 청년해외협력단 파견, 국제 긴급지원단 파견)	KOICA 외교통상부
	유상원조	개발협력차관(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다자 협력	국제기구 분담금	UN과 비UN 국제기구(OECD, 지역수산기구 등)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국제기구	국제개발금융기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제6장 국제어업교육원 운영 방안

출자금			
-----	--	--	--

ODA 자금 공여 대상국을 보면, 국제기구 분담금이나 출연금인 다자간 ODA를 제외할 경우에 양자간 ODA의 60% 이상이 아시아에 편중되어 있다. 특히, 양자간 중에서도 유상, 무상 모두 아시아에 대한 공여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원 분야별로는 교통통신과 같은 경제 인프라 및 공공행정 지원 등과 같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분에 대한 지원이 그 뒤를 이었으며, 농수산, 산업 및 건설 부분과 같은 생산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는 크지 않았다.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KOICA(한국국제협력단)를 통하여 총 1조 4,551억원의 ODA 자금이 지원되었는데, 분야별로는 어업생산(가공 제외) 75.3억원, 농업(가공, 농촌개발 제외) 503억원, 임업(가공 제외) 136억원, 농촌개발 224억원, 에너지 319억원, 일반환경 173억원, 공업(농수산 가공 제외) 289억원, 광물 173억원이 지원되었다.

<표 6-3> KOICA를 통한 ODA 지원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지원액	구분	지원액
에너지	31,911	임업(가공 제외)	13,643
환경연구, 생물 다양성	17,328	농업(가공 제외)	50,360
광물(철금속, 석유 탐사 등)	2,059	경제개발계획	22,833
농림수산 가공	4,724	의료 서비스	56,335
산업·공업(농수산가공 제외)	28,960	재건 구호	53,158
농촌개발	22,425	직업훈련	84,553
어업(가공 제외)	7,533		

2010년 현재 수산분야 교육사업은 연수생 초청사업과 전문가 파견사업이 있다. 연수생초청사업은 아프리카 수산기술자 양성 및 수산정책과정, 연안 수산양식과정 수산물가공 및 수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과정, 알제리 수산정책 수립 역량 강화과정 등이 시행되고 있다. 전문가 파견사업은 우리나라 전문가를 개발도상국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기술지도, 연구, 강의, 자문, 조사 및 프로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젝트 실시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전문지식을 전수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및 인적 자원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다.

① 초청 연수교육 사업

관계연안국 어업담당기관의 직원 및 수산기술자를 연수생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업 사정 및 수산기술에 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계연안국에 훈련거점을 두고 현지의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어선원 및 훈련지도자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초청 연수교육사업은 정부의 대외협력사업의 일환으로 KOICA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해양·수산 관련 공무원, 관리자, 연구원 등을 초청하여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 및 우호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초청 연수교육사업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어로기술과정, 해상교통관제과정, 해양오염방제 시뮬레이션과정 등이 있으나, 현재는 수산인력개발원과 국제어업교류원 등의 기관에서도 참여하여 수산분야의 연안수산양식과정, 어로기술과정, 수산물가공 및 수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알제리 수산정책 수립역량 강화, 아프리카 수산기술·정책 연수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선진 수산기술을 전수할 목적으로 어류양식 및 어업자원관리에 관한 이론 강의, 수산연구기관 및 내수면 양식장 현장학습 등과 우리나라의 수산정책에 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② 전문가 파견사업

전문가 파견사업은 우리나라 전문가를 개발도상국에 일정기간(1개월 내지 1년간) 파견하여 기술지도, 연구, 강의, 자문, 조사 및 프로젝트 시행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전문지식을 전수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및 인적 자원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견 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와 1년 미만의 단기가 있으며, 단기 전문가는 장기 전문가의 지원이나 세미나에서의 강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림·수산 분야의 경우는 우리나라 전문가 파견사업의 32.8%를 차지하는

207명(2002년 12월 기준)이 파견되었다. 그러나 2002년도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 파견사업은 없었으며, 해양수산부 자체사업으로 여수 EXPO 유치와 관련하여 수산양식 분야 조사단 총 9명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과거의 어업협력 사업은 개발도상국 수산업의 증진과 기술지원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오늘날의 어업협력은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자원관리의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외어업의 교류협력은 수산양식·어업기술·수산기자재 전문가가 현지인에 대한 기술이전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파견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국제어업 전문인력 육성사업

가. 국내외 어업 읍저버 육성 지원

1) 국제읍저버 양성 현황

지역수산관리기구별로 국제읍저버의 의무승선비율이 합의되어 있으며, 그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다랑어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읍저버의 의무승선비율은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선망, 연승 조업시 각각 20%, ICCAT(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는 각각 5%와 10%로 정해져 있다. IATTC(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는 어창용적이 400톤 이상의 선망어선에서는 100%, IOTC(인도양다랑어위원회)는 운반선 전채시 100% 의무승선을 하게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총 30명의 국제읍저버가 양성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읍저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용인원은 6명에 불과하다. 2009년 WCPFC에 실제 조업한 한국 선망어선이 28척, 연승어선이 111척이므로(WCPFC, 2010), WCPFC 협약수역내에서 조업을 할 경우 읍저버의 의무승선 비율이 20%이므로 선망 5척, 연승 22척에 의무승선을 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조업선 1척에 1명씩 읍저버가 승선할 경우 WCPFC에서 한해 총 27명의 국제읍저버가 필요하며, ICCAT 협약수역내에서 2008년 등록된 한국 어선은 24척이었으며, 의무승선비율이 5%이기 때문에 1명의 읍저버가 필요하다.

그리고 CCSBT에 등록되어 있는 어선은 모두 20척이며 의무승선비율이 10%이기 때문에 한 명의 옵서버가 조업선 한 척씩 승선한다고 할 경우 연간 2명의 옵서버가 필요하다. 현재 IATTC 협약수역내에서 조업하는 한국 선망어선이 없으므로 옵서버 의무승선 대상이 아니다.

IOTC는 운반선 전재시 100% 의무승선을 규정하고 있으나, 운반선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국 어선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따라서 다랑어 관련 지역 수산관리기구에서 요구하는 의무승선 옵서버 수는 WCPFC 27명, ICCAT 1명, CCSBT 2명으로 연간 총 30명의 국제옵서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비다랑어 원양어업을 제외한 것으로,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등의 타 지역수산관리기구 수역과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없는 남서대서양 수역 등을 포함하면 훨씬 늘어나게 된다.

2) 국제옵서버 양성 필요성

최근, 국제옵서버들의 의무승선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생물학적 자료 수집뿐만 아니라 어획쿼터 할당량 소진과약, MCS(감시감독)와 같은 이행조치에 대한 감시·감독의 업무도 병행함에 따라 국제옵서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연간 총 30명의 국제옵서버가 필요한 상황에서 가용인원은 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옵서버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은 업무량 과다와 인력부족 등의 제약으로 신규 옵서버의 확보, 매년 변경되는 옵서버의 기능과 감시·감독 시스템의 업데이트, 옵서버의 연속적인 직무교육 등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 국제옵서버 육성 방안

국내 전문가를 활용한 국제 옵서버 교육 매뉴얼 등의 주기적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주기적인 국제 옵서버 확보를 위한 교육, 훈련 등을 통해서 국제 옵서버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교육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산관련 대학의 교육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신규 옵서버의 교육과 자격증의 수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여 국제 옵서버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로, 농림수산식품부와 부경대학교간의

MOU 체결 등이 가능할 것이다.

국제 읍서버는 평균 2개월 이상 승선을 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고위험 직종이다. 그러나 승선시 보험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건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 읍서버가 계약직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이 높기는 하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읍서버 자격을 취득한 후 전업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읍서버의 신분을 보장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읍서버를 전일제 연구보조원으로 상시 고용하여 5개 다랑어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자원평가를 위한 어획자료의 정리, 생물학적 자료의 기초분석 등을 담당하게 한다.

나. 국제어업 교섭 전문인력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에는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친 뒤에 합의점에 도달하였을 때에 비로소 관련의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합의에 실패하거나 또는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국의 일치된 의견을 유도하기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과학 및 기술위원회 등에서 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제를 채택한다.

이와 같이 국제회의는 특정 의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동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한 사람은 동 의제에 대한 논의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상세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의제에 대한 배경과 역사, 현시점에서의 중요성 등을 깊이 파악할 수가 있다. 따라서 영어와 해양법 및 수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해당 회의가 논의되어온 이러한 과정을 알지 못하거나 의제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또한 국제수산기구에서 다루는 주요의제들은 수산자원의 생태 및 자원량 평가, 어획능력 설정, 보존조치의 준수여부 확인 및 기타 여러 환경보전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수산자원의 생태연구 및 자원량 평가는

우리나라의 활동이 미약한 분야로, 할당량 할당과 관련하여 산출된 한계 어획량이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아닌지도 검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관련전문가를 선정하여 국제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각종 평가(수산자원관리의 핵심인 자원량 추정과 한계어획량 산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국가차원에서 불합리한 손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지역수산관리기구를 포함한 국제수산기구에서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어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해양수산 관련 전문지식과 해당 국제기구에 대한 전문성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의 국제어업 관련 업무를 전문화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최근 국제사회의 어업자원에 대한 국가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국제어업관리 질서의 등장과 더불어 향후 어업자원에 대한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각국의 적극적인 정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각국의 이러한 관심은 각종 국제수산기구에 많은 전문가나 과학자를 파견하여 국제동향을 분석하고 해당해역에서 신규 및 시험조업을 확충하는 등 과학조사를 통하여 국가적 이익을 선점하는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민간차원의 전문가를 육성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여 관련 정보의 교환과 정기적인 세미나의 개최 등 전문지식이나 정보 습득의 체제를 확립해 둘 필요가 있다.

5. 국제어업협상 · 정보관리 · 지원연구부 운영

가. 국제어업협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연구부 설치

1) 국제어업협상 대응의 문제점

최근, 국제어업에서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어업 및 자원관리에 관한 특징은 연안국들의 200해리 EEZ(배타적경제수역)선포, 공해상 불법어업 규제강화, 고도

회유성 어족자원보호에 관한 국가간 협력체제 강화, FAO의 책임있는 수산규범 및 국가별 행동계획 등 어업자원 관리체제의 강화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주요 원양어업 국가들은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안정적인 어업기회 및 어획쿼터 확보를 위한 해외어업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같이 원양어업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환경이 어업자원의 관리체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전환된 시점에서 향후 다랑어 등 고도회유성 어종에 대한 국제규제 강화, 국별 어획쿼터 할당기준 및 어업기회 부여 방법의 변화, 어획쿼터 관련 과학자료 수집 및 제출 수준 문제, 연안도서국 등 자원보유국들의 주권행사 강화, 그리고 조업국들의 자원확보 경쟁이 보다 가열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국내 수산물 공급에 있어 원양어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도, 원양에서의 어업기회 및 어획쿼터 확보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어장에 대한 과학적인 자원조사와 병행하여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사업수행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수산 관련 협상 대응의 문제점은 첫째, 과학 인프라 부재로 과학자료 제출 지연 및 자료수준의 문제이다. 국제수산 협상은 수산자원의 평가가 기본임에도 우리나라는 평가를 위한 어획자료(수역별, 선박별, 어종별, 크기별), 부수어획 자료(상어, 거북, 바다새 등), 영향평가자료 등 제출 수준이 매우 낮아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통계자료의 부정확성 및 자원관리 조치 불이행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원양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자료 수집 수준 및 과학연구 발표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원양어업 자료 수집에서 일본, 대만, 미국 등은 어획량, 노력량, 중량, 체장, 나이 등 다양한 자료를 시기에 맞춰 제출하고 자료 분석을 통한 과학연구 논문 발표도 활발하나, 우리나라는 최근 국별보고서 이외의 보고서나 논문 등의 발표가 전무한 상태이다.

셋째, 원양 수산자원 관련 과학 논문 또는 보고서 제출이 저조하다.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ICCAT(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 등의 기구 작업반회의 및 과학위원회에서 일본, 미국,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은 어업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한 연구 발표가 활발하나, 주요 조업국인 우리나라는 최근 연구 발표가 전무한 실정이며, 옵서버 승선율과 옵서버 보고서 제출도 미흡한 상태이다.

다섯째, 협상인력, 협상능력, 국제인맥 관리상의 문제이다. 현재 국제수산회의에 참여할 정부대표나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국제수산회의에 참석하는 정부대표는 순환보직 시스템에 따라 매년 교체되는 등 잦은 교체로 협상경력을 쌓을 수가 없어 협상능력을 향상시키기도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협상담당자의 잦은 교체는 협상관련 국제인맥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제 수산협상에서 우리의 교섭력을 저하시키는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지역수산관리구의 자원 보존관리조치는 날로 복잡화 및 강화되고 있으나, 관련 국내 대책의 수립과 이행을 맡을 원양분야 인력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양어업 관련 국제수산협상을 위한 종합적인 전담 및 지원부서가 없다. 단지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원양정책과 등의 정책부서와 수산과학원 자원연구 담당 과학인력이 이를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향후 국제어업교육원에서 국제수산협상 전담부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할 가칭 국제어업지원연구부를 설치하여 각종 국제수산기구를 대상으로 실익중심의 수산협상을 지속적이고 체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국제어업지원연구부 설치과 운영

우리나라의 국제 수산분야별 협상 및 과학활동 수준을 제고하고 국제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 강화에 대응, 지속가능한 어업과 어획쿼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가칭 국제어업지원연구부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제어업지원연구부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보존관리조치 이행, 과학활동 제고, 과학자료 수집 개선, 국제동향 파악, 그리고 국제협상의 효율적 대응 등을 위한 체제로 구축되어야 한다.

국제어업지원연구부는 원양어업 관련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감시·감독, 통제 의무 이행과 과학자료의 수집과 제출, 그리고 자원평가 등에 참여한다. 아울러 동 센터는 국제수산관리학회를 창설하여 지역수산관리기구 관련 자원 및 어업 관리에 대한 체제적이고 지속적인 학제적 연구를 주관하게 된다. 동 연구부는 국제수산협상력 강화를 위한 수산업 관련 각종 국제기구의 회의 및 의제자료와 협상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이러한 국제수산정보의 중요성은 국제협상력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어업자원에 대한 국가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즉 새로운 국제어업관리질서의 등장과 더불어 향후 공해 어업자원에 대한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각국의 적극적인 정책에 효과적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각국의 이러한 관심은 각종 국제수산기구에 많은 전문가나 과학자를 파견하여 국제동향을 분석하고 해당내역에서 신규 및 시험조업을 확충하는 등 과학조사를 통하여 어업 이익을 선점하는 등의 양상은 나타내고 있다.

국제수산기구에서 다루는 주요 의제들은 수산자원의 생태 및 자원량 평가, 어획능력 설정, 보존조치의 준수여부 확인 및 기타 여러 환경보전문제에 대별할 수 있다. 특히, 수산자원의 생태연구 및 자원량 평가는 우리나라의 활동이 미약한 분야로 결과적으로 쿼터 산출과 관련하여 산출된 한계어획량이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아닌지도 검증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련 전문가를 선정하여 최소한 수산자원관리의 핵심인 자원량 추정과 한계어획량 산출에 참여하고, 적절한 잉여생산량을 확보하여 불합리한 손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태평양, 인도양 및 대서양 등 세계 전해역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원양어업의 조업현장의 애로사항 해결과 WTO/DDA, FTA 및 각종 국제수산기구 등에서 벌어지는 수산업 관련된 국제업무의 처리 및 국제어업분쟁사건, 어선 피랍사건 등 어업현안 문제를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국제수산정보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수산협상 전담부서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보체제를 갖춘 국제어업지원연구부에 대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국제어업교육원에 설치, 운영하거나, 기존 (사)국제어업교육원을 확대 개편하여 별도 국제기구협상팀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국제어업지원연구부는 해외어업 관련 종합정보체제하에 학·연·산·관의 협동적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존 해외어업협력사업은 물론 국제수산분야 협상력 제고와 장기적인 원양산업발전의 종합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6. 외국인 어선원 관리 및 복지사업

가. 외국인 어선원 사후 관리 필요성

외국인 어선원의 구인형태를 법적 근거로 나누어 보면, 현재 20톤 이상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20톤 미만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20톤 미만의 외국인 어선원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들이 적용이 되지만, 20톤 이상의 외국인 어선원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선원법 적용을 받는다.

외국인 어선원 중 선원법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어선원은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선원관리업체에서 애로사항을 상당부분 해결해 주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어선원은 선주들이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해서만은 20톤 이상과 20톤 미만의 적용 대상 규정을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 하여 선원관리업체가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외국인 어선원 복지지원 사업

선원들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를 통해서 전개되어 왔으며, 특히 선원 유가족 장학금 지급, 장기승선 선원에 대한 휴양시설 제공, 무료법률서비스 등을 수행하여 선원의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여왔다.

그러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대상은 선원법의 대상을 받는 20톤 이상의 어선원에 국한되어 있어 20톤 미만의 어선원은 동 센터에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20톤 미만의 어선원을 위해 한국선원 복지고용센터와 유사한 형태의 가칭 '어선원 복지센터'의 운영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복지혜택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영상태가 열악한 20톤 미만의 선주들은 외국인 어선원의 휴식공간 및 주거공간 마련에 애로를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적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20톤 미만 어선원의 경우에는 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장학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장학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해당 어선수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근로자들이 신청해서 어선원이 그 수혜를 받기 힘들다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0톤 미만 어선원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 정책은 어선원지역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어선원 자녀 장학사업 그리고 어선원 고용안정보험 또는 실업급여 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 정책과 세부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어선원지역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내외 어선원에게 휴식공간 및 일정수준의 주거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선원 유가족을 위한 장학사업이나 현재 선원법의 적용도 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어선원은 고용안정보험이나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한 어선원 고용안정보험 또는 실업급여 제도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어업인 후계자, 신지식인 등 수산전문인력 교육

가. 교육의 근거와 필요성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현상으로 1차 산업이 쇠퇴하면서 농촌인구와 마찬가지로 국내 어촌인구 또한 급속하게 감소하여 왔으며, 청장년층의 어업기피 및 도시진출 현상 등 급격한 어촌이탈이 심화되면서 어촌의 인력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수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의 확보와 정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기초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어업 종사에 대한 의욕 고취, 수산업과 관련한 전문지식 습득 및 사업 추진능력 배양을 통해 청장년층을 국내 수산업계의 리더로 양성해야 할 필요에 의해 마련되었다. 어촌의 청장년들에게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고 교육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자립기반 능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어촌에 정착시키고 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 어업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농어업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문어업인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업인후계자육성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으로서의 수산사무소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전까지의 어업인 교육은 어업인후계자교육, 신지식인교육, 경영기술연찬교육, 어업인 정보화교육, 자율어업관리교육, 수산물 위생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왔다.

나. 수산분야 첨단 과학기술 교육 및 현장 중심 교육 실시

기존의 수산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교육은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교육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분야를 개괄적으로 습득하거나 또는 경험하는 정도에 거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그리고 수산인력개발원의 어업인재교육프로그램, 수산사무소가 운영하는 어업인 재교육 프로그램 등의 어업인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나, 이는 단편적이고 특정분야에 치우치고 있으며, 수산분야의 기술이나 지식이 단순하고 경험칙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요하는 것이 많음에도 교육기간은 대부분 단기간으로서 기술전수교육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산업은 최근 1차 산업에서 복합 산업으로 이전되고 관련 직종이 새로이 생성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인력을 양성이 되어야 한다. 수산분야의 선진화는 수산분야 과학기술과 경험이 결합되고, 이를 사회화시킴으로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수산업은 전통적인 1차 산업으로서 어업과 양식업으로 분류하여 왔으나, 최근 산업사회의 발전과 직업의 다양화로 인하여 수산분야도 향후 각광받는 직종이 다양하다. 최근 들어 IT와 융합한 수산분야의 산업이 급신장하고, 수산업과 IT산업의 결합은 일반 사회인의 직업선호도 등에서 당연히 정보산업으로 구분할 것이다. 거기에는 국가적 산업의 발전은 첨단 산업과 연계하기 때문에 해당산업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수산업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산업의 발전이 곤란하다.

따라서 국제어업교육원이 직무능력, 노동시장의 상황과 수요에 적합하도록 직업능력수준(Skill Level), 직업능력형태(Skill Type)에 따라 산업, 직업이동성, 노동시장 구조 등에 맞는 수산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어업교육원이 실시

하는 수산교육은 교육 내용의 다양화 및 내실화, 이론 교육보다는 실험·실습 교육 중시, 현장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 실시

수산업은 첨단산업과 기간산업과 같이 특별한 성장동력은 없다고 할지라도 식량산업으로서 또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서 평가받기 시작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농업과 수산업에의 종사를 장려하고 귀농, 귀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과 귀농, 귀어자들에게 주어지는 지원 등은 수산업에의 전망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수산분야의 사회교육은 대부분 현재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며, 수산공무원이나 어촌지도공무원, 귀어희망자, 수산유통종사자, 교사, 학생, 수산단체 직원, 수산물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거의 전무하다. 물론 수산업이라는 산업의 인력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산업이 갖는 일반인의 기피산업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귀농과 귀어자는 물론, 현재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1차 산업의 마인드를 3차 산업으로, 또한 동일한 수산물을 고부가가치 수산물로 전환시키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어업교육원은 이와 같은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4절 예산추계 및 확보방안

1. 비용추계 요약

가. 재정수반요인

우리나라 원양어업을 포함한 연근해 어선원 및 외국인 어선원교육, 동남아, 아프리카, 남태평양 개도국 등에 대한 수산정책과정 연수와 어업기술교육 등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의 교류를 위한 국제어업교육원 설립에 필요한 용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와 교육비, 그리고 복합어로실습선대체, 기숙사건립, 실습기자재 구입 등 소요비용이 발생한다.

나. 비용추계의 전제

추계기간은 2012년 1차년도 부터 2016년까지 5년으로 한다.

다. 비용추계의 결과

국제어업교육원 설립에 필요한 총 비용은 <표 6-9>에서 보듯이 2012년도 약 16억원을 포함하여 3년간 총 71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어선원 승선실습에 필요한 복합어로실습선대체에 필요한 경비도 2012년 설계비 13억원을 포함하여 3년간 총 250억원 필요하다(운영비 별도).

기숙사의 경우에는 총 공사비가 35억원이고, 실습동은 5억원, 실습기자재 예산은 3억원이 필요하다.

각 지출 항목에 따른 운영비는 2015년부터 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4> 연도별 소요 비용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연 도	2012	2013	2014	합계	연도별운영비	
						2015	2016
지출	○ 국고	3	34	34	71	62	62
	국제어업교육원(5,000m ²)	3	34	34	71	62	62
지출	○ 국고	-	2	33	35	5	5
	기숙사(2,660m ² , 806평)	-	2	33	35	5	5
지출	○ 국고	-	1	4	5	3	3
	실습동(660m ² , 200평)	-	1	4	5	3	3
지출	○ 국고	-	-	3	3	1	1
	실습기자재	-	-	3	3	1	1
지출	○ 국고	13	118	119	250	14	14
	복합어로실습선(750톤)	13	118	119	250	14	14

제6장 국제어업교육원 운영 방안

계	16	155	193	364	85	85
---	----	-----	-----	-----	----	----

* 총사업비 364억원(국제어업교육원+기숙사+실습동+실습기자재 : 114억원 + 복합어로실습선건조 250억원)

* 국제어업교육원 용지매입비는 국유지 무상사용에 따라 284억원 절감

1) 용지 매입비 22,700백만원 : 15,000m²(4,540평) x 1,514천원/m²(평당 5백만원)

2) 부 대 비 용 5,670백만원 : 용지매입비 x 25% 적용(인허가, 법률수속비 등)

2.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단계별 시설 확보 방안

국제어업교육원은 2012년 설계를 시작으로 착공 및 완공 등 3년간의 기간이 필요하다. 용지매입비는 국유지무상사용에 따라 284억을 절감하고, 국제어업교육원 본관건물 설계는 2012년에 3억원으로 계상하며, 국제어업교육원 본관건물 건축은 13년에 착공하여 14년에 완공하여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복합어로실습선 건조는 2012년 설계(설계기간 약 12월)를 시작으로 2014년에 진수하는 것으로 한다. 실습선 설계는 2012년에 13억을 투입하고, 2013년에 118억을 투입하여 착공(건조 공기 약 18개월)하며, 2014년에 119억을 투입, 완공하여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항한다. 그리고 실습선의 운항경비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소속 실습선의 운항 경비 수준으로 계상한다.

<표 6-5> 단계별 실시 운영방안

구 분	연 도	준비단계	건축단계		운영단계	
		2012	2013	2014	2015	2016년 이후
국제어업교육원설립		설계	착공(50%)	완공(50%)	운영	운영
기숙사 건립			설계	건축	운영	운영
실습동 건립			설계	건축	운영	운영
실습기자재 확보				구입	운영	운영
복합어로실습선대체		설계	착공(50%)	완공(50%)	운항	운항

나. 인력 확보방안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초기에는 국제어업교육원의 운영과 실습선 운항에 따른 최소 인원을 확보하며, 점진적으로 국제어업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한다.

또한 국제어업교육원 운영 초기인 2015년에 국제어업교육원 완공과 실습선 건조와 동시에 인력을 확보하며, 최대한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표 6-6> 단계별 인원확보 계획(안)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교육원	일반직원	-	-	-	25	25
	교수·강사	-	-	-	10(5)	10(5)
	소계(인)	-	-	-	35(5)	35(5)
선박	선박직원	-	-	-	15(10)	15(10)
	소계(인)	-	-	-	15(10)	15(10)
총 계(인)					50	50
추가 필요 인원		-	-	-	35	35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있는 기존 교수·강사 5명 활용(이체)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있는 기존 노후선박 선원 10명 활용(이체)

3. 연차별 소요예산(총괄)

가. 소요예산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설립 및 건조				운영	
	2012년	2013년	2014년	계	2015년	2016년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314	3,408	3,408	7,130	6,247	6,247
기숙사		162	3,382	3,544	500	500
실습 동		40	439	479	300	300

제6장 국제어업교육원 운영 방안

실습기자재			300	300	100	100
복합어로실습선 대체	1,330	11,835	11,835	25,000	1,367	1,367
계	1,644	15,445	19,364	36,453	8,514	8,514

나. 업무별 세부 산출내역

□ 업무별 세부 산출내역

○ 2012년 업무별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용지매입비	용지매입 부대비용	설계	계	비율(%)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	-	314	314	19.1
복합어로실습선 대체	-	-	1,330	1,330	80.9
계				1,644	100%

○ 2013~14년 연간 업무별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13				'14					계	비율(%)
	설계	착공 소요	감리비	시설 부대비	설계	완공 소요	감리비	시설 부대비	조경 공사		
국제어업교육원	-	2500	52	106	-	2500	52	106	1500	5316	196
가숙사	162				-	3224	52	106		3544	102
실습동	40				-	400	13	26		479	14
복합어로실습선	-	11,500	155	180	-	11,500	155	180	-	23670	680
계										33009	100%

- 1) 시설비(신축공사) : 50,000백만원
 - 순공사계(100%) : 재료비(50%) + 노무비(40%) + 경비(10%)
 - 일반관리비 : 2010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5% 적용
 - 경 비 : 2010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12% 적용

- 2) 설계비(신축공사) : 314백만원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 건축부분(제2종 보통, 중급도서) 설계비요율 : 4.28%(50억원 공사)

* 설계비 = 건축부분(기본/실시설계비) + 예비타당성조사 + 기타

3) 감리비(신축공사) : 104백만원

- 건축부분(제2종 보통) 감리비요율 : 1.07%(50억원 공사)

* 감리비 = 건축부분(감리비) + 추가공수 등

4) 시설부대비(신축공사) : 213백만원

- 건설부분 시설부대비 요율 : 0.27%(50억원 공사)

* 시설부대비 = 건설부분(시설부대비) + 예비비 + 기타 행사비 등

5) 조경공사 : 1,500백만원

- 조경 : 조경목, 조경석, 잔디, 보드블록, 울타리 등

- 10,000m²(3,030평) x 0.5백만원(평당)

* 1~5 : 2011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

6) 복합어로실습선 대체 23,670백만원

- 건조비 23,000백만원(2개년)

- 감리비 310백만원(2개년)

- 시설부대비 360백만원(2개년)

○ 2015년 이후 연간 업무별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건비	경상비	교육비	선박 유류비	선박 유지비	건물 유지비	계	비율 (%)
국제어업교육원 운영	3,104	559	3,104			332	7,099	83.9
복합어로실습선 운영				583	784		1,367	16.1
계							8,466	100

제6장 국제어업교육원 운영 방안

- 1) 인건비 : 3,104,000,000원
 - 임 원 : 2명 = 196,000,000원(이사장, 전무)
 - 교수 및 강사 : 7,400만원 × 10명 = 740,000,000원(전문위원)
 - 일반직원 : 6,100만원 × 23명 = 1,403,000,000원(책임연구원)
 - 선박직원 : 5,100만원 × 15명 = 765,000,000원(책임기술원)
 - 합계(평균) : 3,104,000,000원 ÷ 50명 = 6,208만원
 - * 임원 보수(이사장 109,000,000원 + 전무이사 87,000,000원) : 196,000,000원
 - * 인건비는 '09년 9월 법인화된 농업기술실용화 재단 수준
- 2) 경상비 : 558,720,000원(인건비 3,104,000,000원 × 18%)
- 3) 교육비 : 3,103,740,000원(해양수산연수원 교육단가 수준적용, 선박 유류비 제외)
 - 외국인 어선원 교육비 420,000원 × 3,300명 = 1,386,000,000원
 - * 육상교육 8,400원 × 20시간 + 선상교육 8,400원 × 2배 × 15시간
 - * 교육인원 20톤이상 2,000명 + 20톤미만 300명 + 원양 1,000명
 - 개도국연수생 교육비 800,000원 × 6월 × 100명 = 480,000,000원
 - 수산계고등학교 종합승선실습 5,171,000원 × 140명 = 723,940,000원
 - 어선 해기사양성과정 3,670,000원 × 140명 = 513,800,000원
- 4) 선박운항비(유류비) : 583,087,500원
 - 주기관(항해, MGO)
 - 0.125 ℓ × 3,800마력 × 7시간 × 60일 × 3회 × 1,420원 × 50% = 424,935,000원
 - 발전기(항해, MGO)
 - 0.125 ℓ × 900마력 × 7시간 × 60일 × 3회 × 1,420원 × 50% = 100,642,500원
 - 발전기(정박, MGO)
 - 0.125 ℓ × 150마력 × 24시간 × 60일 × 3회 × 1,420원 × 50% = 57,510,000원
- 5) 선박유지관리비 : 784,000,000원
 - 수리비(조선소 상가비, 선저청소) 200,000,000원 ÷ 2년 = 100,000,000원
 - 유지비(선구비, 선용품비, 기관 및 장비수리비) 419,000,000원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 선체 750톤 × 100,000원 = 75,000,000원
- 기관 4,850마력 × 40,000원 = 194,000,000원
- 어구(원양선망 10억원 × 1/2크기) 500,000,000원 × 30%(수리) = 150,000,000원
- 일반수용비 등(선내소독, 침구세탁, 선원안전·직무교육 등) 15,000,000원
- 선박보험료(선박보험요율적용) : 250,000,000원

6) 시설유지비(건물) 8,320㎡(건물 5,000㎡, 기숙사 2,660㎡, 실습동 660㎡)
× 40,000원 = 332,800,000원

※ 운영경비합계

①인건비	②경상비	③교육비	④선박유류비	⑤선박유지비	⑥건물유지비	계
3,104,000,000	558,720,000	3,103,740,000	583,087,500	784,000,000	332,800,000	8,466,347,500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종합승선, 잠수기술, 현장실습, 국제교류학습 등 12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계	종합승선	잠수기술	현장실습	국제교류학습	
					교사	학생
금 액	1,200	600	144	300	40	116
인 원	288	80	80	50	20	58
1인당		7.5	1.8	6	2	2

4. 참고자료

가.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 어선원양성·훈련 및 개도국과의 어업교류활성화

제6장 국제어업교육원 운영 방안

부지	건평	인원	국내어선 해기사양성		국제어업교류	
			고교생 종합승선	해기사 양 성	외국인 연수생	외국인 선원교육
15,000m ² (4,540평)	5,000m ² (1,510평)	40명	140명	140명	100명	3,300명

○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 용지비	28,370	용지매입비(15,000m²) 및 부대비용
- 용지매입비	22,700	15,000m ² (4,540평) x 5백만원(평당)
- 용지매입 부대비용	5,670	용지매입비 x 25%(세금, 인허가 등)
○ 신축공사	7,130	건물5,000m²(1,510평) 설계비, 시설비 등
- 기본/실시설계비	314	4.28% 설계요율 적용, 예비타당성조사 등
- 시설비	5,000	건물 5,000m ² (1,510평) x 3.3백만원(평당)
- 감리비	104	1.07% 감리 요율 적용, 추가 공수 등
- 시설부대비	212	0.27% 시설부대비 요율 적용, 기타 등
- 조경공사 등	1,500	10,000m ² (3,030평) x 0.5백만원(평당)
합 계	35,500	용지(15,000m²) + 신축공사(5,000m²)

나. 기숙사 및 실습동

○ 기숙사 설립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 신축공사	3,544	건물2,660㎡(806평) 설계비, 시설비 등
- 기본/실시설계비	162	4.28% 설계요율 적용, 예비타당성조사 등
- 시설비	3,224	건물 2660㎡(806평) x 4.0백만원(평당)
- 감리비	52	1.07% 감리 요율 적용, 추가 공수 등
- 시설부대비	106	0.27% 시설부대비 요율 적용, 기타 등

○ 실습동 설립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 신축공사	479	건물660㎡(200평) 설계비, 시설비 등
- 기본/실시설계비	40	4.28% 설계요율 적용, 예비타당성조사 등
- 시설비	400	건물 660㎡(200평) x 2백만원(평당)
- 감리비	13	1.07% 감리 요율 적용, 추가 공수 등
- 시설부대비	26	0.27% 시설부대비 요율 적용, 기타 등

다. 실습기자재

갑판부	주요장비	종류	기관부	주요장비	종류
○ 항해실습실	전자해도 (ECDIS)	16종	○ 선박전자전사	디지털멀티미터	30종
○ 어업실습실	어군탐지기 어구모형	35종	○ 선박조기계	냉동장치	5종
			○ 기계설계공작	고속절단기	12종
○ 선박운용학	VHF송수신기 유압조타	15종	○ 선박주기관	다젤기관	31종

라. 국제어업교육원 시설규모

제6장 국제어업교육원 운영 방안

대 지 면 적 15,000m ² (4,540평)	
<input type="checkbox"/> 건물바다 연면적 5,000m ² (1,515평평) ○ 교육장 바닥면적 : 1,663m ² (504평) ○ 실습동 바닥면적 : 677m ² (205평) ○ 기숙사 바닥면적 : 2,660m ² (806평) - 190명(종합승선70명, 원양70명, 외국50명) * 1인실 10개, 2인실 × 90개 = 180개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면적 10,000m ² (3,030평) ○ 주차면적 : 720m ² (218평), (주차 60대) ○ 조경면적 : 8,636m ² (2,617평) ○ 진입로 등 기타 면적 : 644m ² (195평)

마. 복합어로실습선 대체

- 어선원 승선실습(교교생 종합승선실습, 일반인 해기사양성, 외국인선원승선)

톤수	기관 마력	속력 (노트)	항행 구역	선원 교원	실습 생	길이	선형
750	3,800	15	원양	30명	70명	70m	복합

- 복합어로실습선 건조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합계	설계비	건조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5,000	1,330	23,000	310	360

< 참고 문 헌 >

- 국토해양부, 『2010년도 해기품질 외부평가보고서(수산부문)』, 2011. 3.
 —————, 『해기품질 외부평가 관련규정』, 2010. 10.
 —————, 『2007년 어선원노동협약의 국내수용에 관한 연구보고서』, 2010. 3.
 —————, 『2009년도 해기품질 외부평가보고서』, 2010. 8.
 —————, 『상선해기사 양성을 위한 해양산업기능대학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8. 12.
- 국토해양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원통계연보』, 각 년도
- 농림수산식품부, 『연안국 양성교육지원 타당성 조사』 (PNA국가를 중심으로), 2010. 12.
 —————, 『어선원 고용실태와 제도개선방안』, 2008. 12.
- 해양수산부, 『해기사면허체계 및 선원교육훈련 개편 연구보고서』, 2007. 12.
 —————, 『어선원 수급안정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 2007. 11.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산업인력 수급방안 연구』, 1997. 12.
- 해양수산부·국립수산진흥원 “원양어업 자원조사 과학읍서버 지침서”, 1997.3
- 해외어업협력재단(일본), 「해외어업협력」, 제 27호, 28호
- 해양수산부, 「신해양질서에 대응한 원양어업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2003. 9.